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2022



공정거래위원회
기 업 결 합 과

기업결합신고 가이드북

2022

공정거래위원회
기 업 결 합 과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새롭게 형성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 집행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크고 작은 기업결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기업결합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심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 추진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심사 및 신고제도에 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가이드북에 수록된 관련 제도, 신고와 심사 관련 질의응답 및 사례 등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일반적이고 특정 사례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실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에서는 그 해석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관

1.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의의	3
2. 기업결합규제제도의 내용	7
3. 기업결합심사제도	26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42
<첨부 1> 기업결합 관련 통계	45
<첨부 2> 기업결합제도 변천내용	50
<첨부 3> 주요국의 기업결합 제도	54

II. 기업결합 질의응답

1. 기업결합의 신고제도 개관	59
가. 기업결합의 개념	59
나. 신고대상 주체	61
다. 신고요건: 신고대상 주체의 규모 산정	69
라. 신고시기	78
마. 신고서 작성 관련	85
바. 임의적 사전심사	87
사. 신고 후 이행행위 금지	89
아. 신고대상의 예외	91
2. 기업결합 신고제도: 유형별 검토	94
가. 주식취득	94
나. 합병	104
다. 영업양수	108

라. 회사설립	115
마. PEF설립	126
바. 임원겸임	132
3. 기업결합 심사	140
가. 지배관계	140
나. 경쟁제한성 판단	141
다. 시정조치	144
4. 기업결합 관련 제재수단	149

III. 주요 시정조치 사례

1. 대한항공의 아니아나항공 주식취득	153
2.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방송통신사업자 주식취득	159
3. 딜리버리히어로에이스 등 4개 배달앱 사업자 주식취득	163
4. 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솔루션 주식취득	168
5. 다나허 코퍼레이션의 GE 영업양수	172
6. LG유플러스의 CJ헬로 및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주식취득	177
7. 퀄컴의 NXP 영업양수	182
8. 런데 및 프랙스에어의 합병	189
9. 씨제이헬로의 하나방송 주식취득	195
10. 머스크의 함부르크 슈드 주식취득	198
11. 다우 및 듀폰의 합병	201
12. 베링거 인겔하임의 사노피 영업양수	203
13. SK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주식취득	206
14.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의 노키아 코포레이션 주식취득 및 영업양수 ..	214
15.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아이엔씨(AMAT)와 도쿄 일렉트론 엘티디(TEL)간 합병 ·	218
16. 바이엘코리아의 한국엠에스디 영업양수	222
17. 현대제철 등의 동부특수강 주식취득	225
18. 에실로 아메라의 대명광학 주식취득	229

19. 롯데쇼핑의 CS유통 주식취득	233
20. BHP 빌리턴과 리오틴토의 합작회사 설립	236
21.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글로벌의 면세점 사업 인수	239
22. 이베이 케이티에이(UK)의 (주)인터파크의 G마켓 주식취득	242
23. 삼성테스코의 이랜드리테일 주식취득	246
24.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 케미컬즈 주식취득	250
25.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	255
26. 삼익악기 등의 영창악기제조 주식취득	258
27. LG화학 등 및 호남석유화학의 현대석유화학 주식취득	260
28.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	264

IV. 기업결합 규제제도 관련 법령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 조문	271
2. 기업결합 심사기준	287
3. 기업결합 신고요령	306
4.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342
5.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350
6.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357

I.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관

기업결합이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공통의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결합은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의 주요 수단으로서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에는 연간 700여 건이 넘는 기업결합이 신고 되었으며, 2021년에는 1천 건을 돌파해다.

기업결합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꽃이라 할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때로는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등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일부 기업결합은 특정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하거나 경쟁 사업자 간 담합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약 70여 개)들은 대표적 경쟁정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신고 및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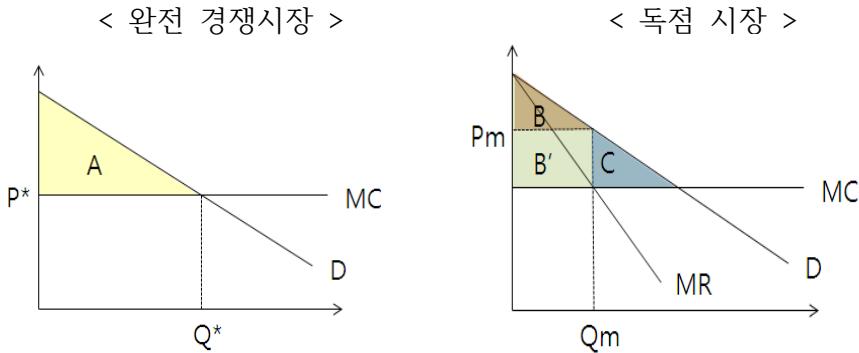
※ 의사가 질병에 따라 다른 처방을 하는 것처럼 시정조치도 경쟁제한 폐해의 양태 및 정도에 따라 맞춤식(tailored)으로 하는 것이 중요

(출처 : Merger Remedies in American and European Union Competition Law,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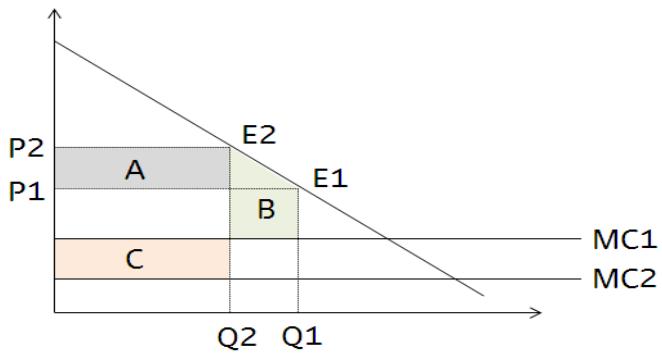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해서 주식처분, 자산 매각과 같은 구조적 조치를 하거나, 경쟁제한적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행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심사가 시작된 1982년 이후 2022년 8월에 이르기 까지 88건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

- ◎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완전경쟁시장은 독점시장에 비해 사회적 후생이 크다고 알려져 있음
 - 이는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독점시장보다 가격은 낮게, 총 공급량은 많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
 - (완전 경쟁시장) 가격 P^* , 총공급량 Q^*
 - (독점 시장) 가격 P_m , 총공급량 Q_m
 - 사회적 후생의 크기도 완전 경쟁시장이 A로, 독점 시장(B+B')에 비해 더 크고, 독점시장에서는 C만큼의 후생이 사중손실(deadweight loss)로 발생



- ◎ 기업결합(M&A)의 경우 결합에 따라 시장 내 참여자 수가 감소하면서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는 동시에, 한계비용 감소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발생 가능하여 이를 적절히 판단할 필요
 - 예컨대, 기업결합으로 가격 인상($P_1 \rightarrow P_2$) 효과와 한계비용 감소($MC_1 \rightarrow MC_2$)가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하면,
 - 사회적 후생은 사중손실(B)만큼 감소하는 한편, 한계비용 감소로 인한 생산자 후생 증가분(C)만큼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후생 증감 여부가 불명확



-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하여 기업결합의 단점은 극소화하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것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의 목적이

[관련 법령]

가. 기업결합 신고규정

-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결합유형,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기준(규모기준 / 규모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거래금액 기준 등) 임의적 위임근거 규정, 신고기한, 사전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이행행위 금지, 사전심사요청, 신고의무면제대상
-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의 규모기준, 제출 서류 보정 등
- 시행령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 영 제18조의 규모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결합 거래금액 기준 및 결합 당사 기업의 국내 활동 정도의 구체적 기준
- 시행령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기한 등) :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일 등
- 관련고시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나. 기업결합의 심사규정

-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기업결합의 유형, 예외인정요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 관련고시 : ‘기업결합 심사기준’

다. 시정조치, 과태료 등 관련규정

- 법 제14조(시정조치), 제16조(이행강제금), 제130조(과태료)
- 관련 고시 :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기업결합 관련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2

기업결합규제 제도의 내용

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기업결합으로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는 안 된다.

이 때 “특수관계인”이란 기업결합을 하려고 하는 자와 다음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법 시행령 제14조)

- ①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② 동일인 관련자. 다만, 법 시행령 제5조(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
- ③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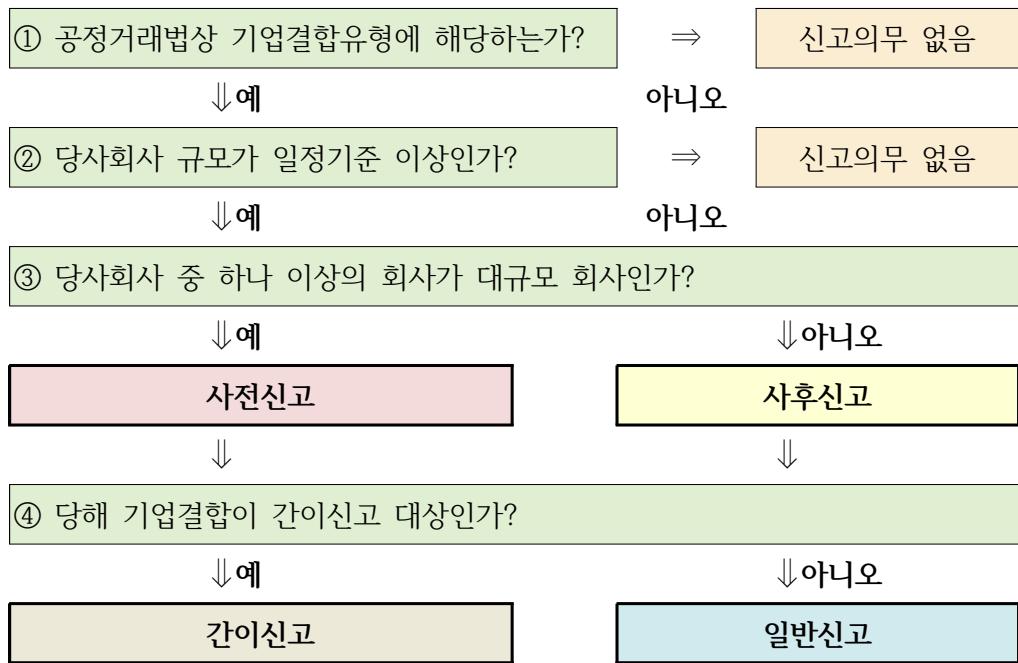
다만,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거나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신고제도]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에 관한 원칙 규정은 제9조이다. 동조에서는 누구든지 기업결합의 방법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사업자가 그 규모를 불문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이를 인지하여 금지할 수 있다. 그런데 시중에서 일어나는 기업결합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심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여 공정위가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신고제도의 의의이다.

나. 기업결합 신고제도

<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도>



* 당사회사 규모가 일정기준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업결합 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고, ▲상대회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예 :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용역 판매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전·일반 신고”를 하여야 함

(1) 신고대상 기업결합 유형

□ 주식취득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지분을 포함 (법 제2조[정의] 제7호 참조)
- 상법 제370조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며, 따라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 없음
 - 다만,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이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이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1조 제5항)



- 예: 상장회사인 甲사의 주식을 A사 5%, B사 10%, C사 7%, D사 16%를 각각 취득한 경우 A, B, C가 계열회사라면 총 22%로 A, B, C가 최다출자자가 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A, B, C, D사 모두에게 발생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 추가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
 - 따라서 최초의 20% 주식취득으로 이미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 그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미발생
- 다만,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시 중간취득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6개월 내에 재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할 필요)

□ 임원겸임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 대규모회사(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계가 2조 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자신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에게 신고의무가 발생
-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 임원겸임은 일방 당사자가 대규모회사임에도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신고의무 발생)
-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 신고 불요

□ 합병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4호)

- 다른 회사와 신설·흡수·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신고회사로서 신고의무를 가짐
- 합병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존속 예정인 회사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흡수합병의 경우) 결합 당사회사가 연명으로 신고(신설합병의 경우)

□ 영업양수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12조 제1항 제4호)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임차
- 경영의 수임
-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조직, 인력, 계약관계 등 포함)을 의미

* 판매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

- ① “주요 부분” 이란 양수 또는 임차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②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 ①과 ② 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1항 제5호)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인수 비율을 불문하고 신고해야 함

-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당사 회사 규모 요건(3,000억 원, 300억 원) 충족시 나머지 회사의 동 요건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
-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 자체가 신고요건인 당사회사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 특수관계인만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기업결합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없음
- 다만,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가 포함된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은 여전히 신고대상에 해당



- 예: 甲사가 100% 출자하여 乙사 설립하거나,
계열회사 관계인 A, B, C사가 각각 30%, 40%, 30% 출자하여 X사 설립한
경우는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음!!

-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 간 출자
하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1조 제5항)



- 예: 甲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A사가 15%, B사가 25%, C사가 15%, D
사가 45%를 각각 취득한 경우 A, B, C가 계열회사라면 총 55%로 최다
출자자이고,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A, B, C사에게 동시에 발생

- 기업결합 신고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
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 회사설립 참여 회사인 A, B, C사가 각각 40%, 40%, 20% 지분 취득시
A, B사에게 모두 신고의무 존재

☞ 계열회사 관계인 A, B, C사가 각각 5%, 7%, 9% 주식취득하여 신고의무
발생시 A, B, C 사 각각에게 신고의무 존재

- 다만 공정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1조 제11항 단서)

(2) 신고대상 회사 규모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을 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컨대, A가 B의 주식 20%를 취득하고, A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3,000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A가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합산액이 3,000억 원 이상이라면 A사는 신고회사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존 계열관계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갑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C사의 주식 51%를 D사가 취득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소속 기업집단이 변동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관계가 사라지는 기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은 C사의 자산총액, 매출액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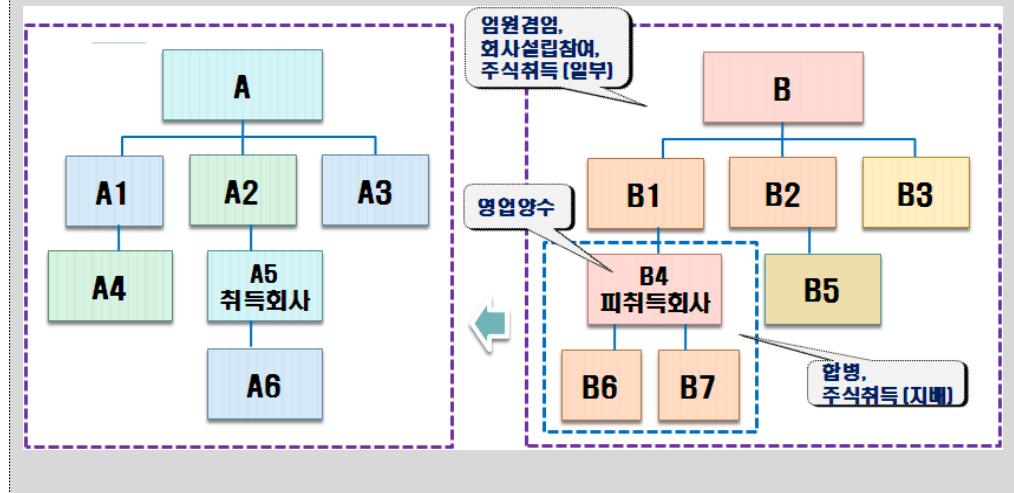
반면,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참고】 계열회사 판단시 유의사항

: A5가 B4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B4의 자산총액 산정

- 주식취득
 - 일부 주식취득으로 기존 계열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 B~B7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산
 - 주식취득으로 기존 계열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A기업집단으로 편입)
→ B4, B6, B7의 자산총액을 합산

- 임원겸임 → B~B7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산
(단, 대표이사 겸임 등 임원겸임에 의해 주식비율과 관계없이 B4의 B기업 집단과의 계열관계가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
- 영업양수 → B4의 자산총액
- 합병 → B4, B6, B7의 자산총액을 합산
- 회사설립 → B~B7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산



또한, 이 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증가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시행령 제15조제1항)



- 예: A사는 2018.3.20. B사의 주식 20%를 취득하였음.
A사의 2017년 자산총액이 2,800억 원이고 2018.1월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총액이 300억 원 증가하였다고 할 때, 당해 기업결합의 신고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산총액은 3,100억 원임!!

[외국 기업이 포함된 기업결합(시행령 §18-③ 해석)]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이 된다”

- 당시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 원, 3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외국 회사가 포함된 기업결합의 경우 국내매출액 요건이 추가로 필요
 - 외국회사란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 외국회사와 외국회사 간 기업결합, 국내회사의 외국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인 경우 그 외국회사들의 국내매출액이 각각 300억 원 이상일 것
 - ☞ 외국회사가 국내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는 국내매출액 요건 필요 없이 3,000억 원, 300억 원 요건만 충족하면 됨
 - 국내매출액이란 해당 외국회사가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합산한 액수(계열회사간 거래내역은 제외하며, 당시회사가 대한민국에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매출이 발생함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거래내역은 포함)를 말함
 - ☞ 당해 외국회사는 국내매출액이 없더라도 외국회사의 계열회사가 국내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함
 - ☞ 다만, 상대회사가 계열회사인 합병에 있어서는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상대회사와 상대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만 합산하도록 함
- 외국회사의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판단을 기준으로 하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 다만, 외국회사가 참여한 회사설립에 있어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발생에 있어 국내매출액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3)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공정거래법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서 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초래하는 한편, 신고 건수가 과중해져 정작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기업결합 심사에 행정역량 집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소규모 기업이 당사회사인 기업결합일지라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이 인수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향후 해당 신생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을 제거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이다. 2014년 舊 Facebook(現 Meta)은 잠재적 경쟁자인 Whatsapp을 24조원에 인수하였는데, 당시 피인수기업인 Whatsapp의 기업규모가 당시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미달하여 해당 기업결합이 메신저 시장 등에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가능성을 심사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규모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에 더해 거래금액에 기반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새로 도입되어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300억 원에 미달하는 기업이 결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① 해당 결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래금액이 6천억 원 이상이고, ② 결합되는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라면 해당 결합은 신고대상이 된다. (①, ②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거래금액은 ① 주식취득 · 소유의 경우 취득 · 소유한 주식의 가액(신규 취득금액 + 기존 소유주식 장부가액)에 인수채무를 더한 금액, ② 합병의 경우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에 인수채무와 합병교부금을 더한

금액, ③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대금에 인수채무를 더한 금액, ④회사 설립 참여의 경우에는 합작계약 상 최대출자자의 출자금액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상당한 기준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는 ①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한 적이 있거나(웹툰, 게임 등의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혹은 순방문자가 월간 100만 명을 넘는 경우를 의미), ②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하면서 연구시설, 연구인력,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를 합산]이 300억 원이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또는 ②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당한 기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봄)

거래금액이 6,000억 원이 넘고 상당한 기준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해야 한다.

(4) 기업결합 신고의 예외

법 제12조 제3항은 일정한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법상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20%(상장법인은 15%)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상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20%(상장법인은 15%)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또는 이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20%(상장기업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이들 회사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 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는 당해 주식소유 승인심사시 공정위와 경쟁제한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제18조 : 금융위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시 공정위와 경쟁제한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합병 등에 대해 인가여부를 심사 시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
- ☞ 이들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발생 이전에 금융위 등으로부터 업무협의요청을 받아 심사하게 된 건에 관하여서는 재차 기업결합 신고를 할 필요 없음(법 제11조 제4항)

(5) 기업결합 신고시기

기업결합 신고는 기업결합을 완료한 후 신고하는 사후신고가 원칙이다. 사후신고는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일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① 주식 취득 : ▲주식 양수의 경우는 주권교부일 또는 주식대금 지급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 유상취득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주식회사 외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감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가 확정되는 날

- ② 임원 겸임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 선임이 의결되는 날
- ③ 합병 : 합병 등기일
- ④ 영업양수 : 영업양수 대금 지급완료일(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는 계열체결일로부터 90일)
- ⑤ 회사신설 참여 : 배정된 주식의 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한편, 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 이상이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는 당해 결합 등이 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회사가 당사자인 기업결합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업결합 거래 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고 기업결합 상대회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결합되는 경우, 그 결합은 사전신고 대상이다.

사전신고 의무는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의 경우에 발생한다(임원겸임은 사후신고). 사전신고는 ▲주식취득·소유 계약일 또는 관련 이사회 결정일, ▲합병 계약일, ▲영업양수 계약일, ▲회사신설 관련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구분	당사회사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 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일 등 이후 기업결합일 이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주식대금납입기일 까지
사후 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업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양수대금 지불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회사신설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대금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사원)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후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기업결합 완료행위(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주식인수행위)가 금지되며, 이러한 이행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대규모회사가 관련된 기업결합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가능성성이 있어 기업결합을 완료하기 전에 미리 심사하는 것인데, 신고하자마자 기업결합을 완료해버리면 완료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2012년 6월 22일부터 공정위는 사전신고, 사후신고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90일을 연장하여 120일까지 심사 가능)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업결합 신고 후 이행행위가 금지되는 기한이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회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대해 일부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신주취득 등이 사후신고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법 시행령 및 「기업결합 신고요령」은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장내 경쟁매매,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공개매수, 유증(遺贈), 무의결권주의 의결권 회복, 담보물권 실행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제도 FAQ]

-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제도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 등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제도 활용의 실익은?

01. 빠르다

임의적 사전심사 완료 후 **본신고**가 이루어지면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02. 믿을 수 있다

사전심사 당시와 중요사실에 변동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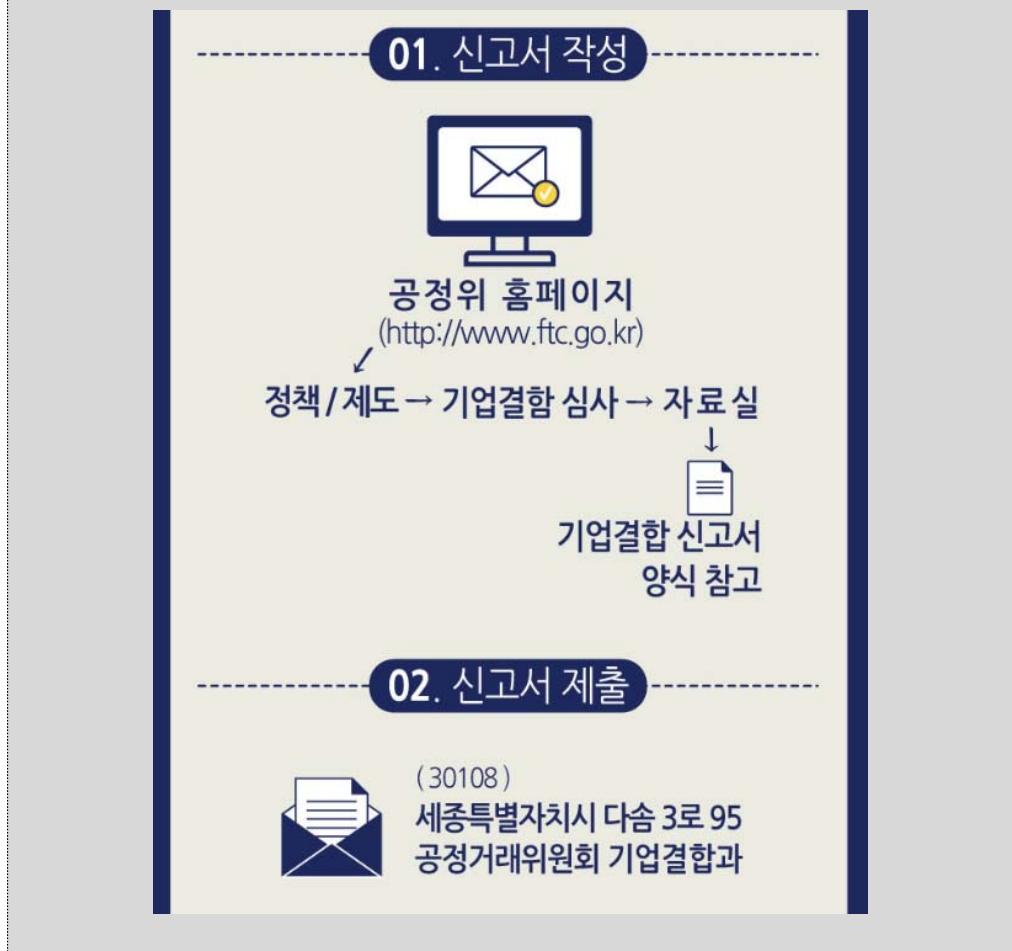


03. 편하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방법은? (기업결합 신고방법과 동일)



(6) 간이신고제도

공정위는 일정한 경우는 간이신고양식에 따라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고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요령(공정위 고시 2021-14호)」 II. 참조)

간이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당사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경영 지배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 상대회사 임원 총 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 겸임은 제외)
- 사모투자전문회사 · 선박투자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간이신고대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요령(공정위 고시 2021-14호)」 III.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 유형별 신고서에 [별표 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신고내용은 동일하나, 첨부서류를 간소화)

(7) 신고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전신고 대상자가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결합 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사업자는 1억 원, 임원 또는 종업원은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과태료 산정의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신고 의무위반의 경우에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후신고 의무위반의 경우에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과태료 기본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의 도과기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가중 · 감경사유를 반영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면 최종 과태료가 결정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신고방법

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를 수신처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시점에는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급적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고, 추후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 방문 등을 통해 기업결합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간이신고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 mna.ftc.go.kr 또는 공정위 누리집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접속

3

기업결합 심사제도

가. 기업결합 심사 흐름도

<1단계> 간이심사 대상 여부 판단

- 당사회사가 서로 특수관계인(경영 지배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인가?
- 결합 이후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미형성되는가?
-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거나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에 해당하는가?
-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이 명백한가?

⇒
예

경쟁제한
우려 없음

↓ 아니오

<2단계> 관련시장의 획정

- 상품시장 / 지리적 시장

↓

<3단계>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 안전지대에 해당하는가? (HHI 기준 충족)
-수평: $HHI < 1200$, $1200 \leq HHI < 2500$ ($\triangle < 250$), $HHI \geq 2500$ ($\triangle < 150$)
(단, 법 제7조제4항 추정요건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수직/혼합 : $HHI < 2500$ 이면서 점유율 25% 미만 또는 각각 4위 이하 사업자

⇒
예

경쟁제한
우려 없음

↓ 아니오

<4단계> 경쟁제한성 평가

- 수평결합 : 단독효과, 협조효과, 구매력 증대효과
- 수직결합 : 시장봉쇄효과, 협조효과
- 혼합결합 : 잠재적 경쟁 저해,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

⇒
아니오

경쟁제한
우려 없음

↓ 예

<5단계>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 해외경쟁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는가?
- 신규진입이 단기간에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가?
- 유사품이나 인접시장이 존재하는가?
-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가?

⇒
예

경쟁제한
우려 없음

↓ 아니오

<6단계> 효율성 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 효율성 증대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큰가?
- 기업결합이 아니고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인가?

⇒
예

예외 인정

↓ 아니오

시정조치

나.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 2021-25호)』은 일정한 기업결합의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이심사 대상인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간이신고 대상과 간이심사 대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간이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당사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경영 지배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 대규모회사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거나 관련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
-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 임이 명백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통지 받은 기업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한 경우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 외국 회사 주식취득, 합병, 임원겸임, 영업양수에 참여하는 경우

다만, 이 때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결합유형	지배관계 판단기준
주식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지배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지배관계 형성!! -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이 때, 실질적 지배력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자금·제휴관계 등의 유무 • 공동 지배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지배관계는 없으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이 때, 실질적 지배력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3) 예산, 사업계획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임원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을 고려하여 상대회사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1/3이상인 경우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회사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회사에의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다. 관련시장(Relevant Market) 확정

관련시장이란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관련시장을 「특정상품(지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당해 상품(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지역) 전체」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시에는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확정하는데, 관련 상품시장이란 소비자가 상품의 특성·가격·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집합을 의미한다.

<상품시장 확정 관련사례>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 건('06. 1) : 맥주·소주 시장

- 미국, 영국 등의 외국사례, 상품특성 및 계량분석(CLA : 임계매출감소분석) 등을 고려하여 맥주와 소주를 별개의 시장으로 확정

또한, 관련 지리적 시장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중 경쟁조건이 동질적이어서 인접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지리시장 확정 관련사례>

무학소주의 대선주조 주식취득 건('03. 1) : 소주 시장

- 전국시장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와 법원은 시장진입상황, 소비자의 지역별 선호, 매출형태 등을 고려하여 경남 및 부산 소주시장으로 확정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요 및 공급의 대체탄력성을 비롯하여 임계 매출분석, 기업결합 시뮬레이션, Elzinga-Hogarty 테스트 등 다양한 경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시장을 확정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 등 혁신 경쟁이 필수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른바 ‘혁신기반 산업’에서는 제조·판매시장에서의 경쟁과 구별되는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M&A를 통한 혁신경쟁기업 제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연구·개발 활동과 제조·판매 활동 등이 경쟁으로 인식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결합 상대회사의 제조·판매 활동 또는 연구·개발 활동과 근접하여 상호대체 가능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인 혁신 시장을 별도의 연구·개발 시장으로 획정하거나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경쟁제한성 판단

(1)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

공정거래법 제9조 제3항은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기업결합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가 되는 경우
-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2위인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25%이상인 경우



- 예: A사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음. A사의 시장점유율은 34%, B사의 시장점유율은 18%로 결합 이후 1위 사업자가 되고 결합 이후 2위 사업자인 C사의 시장점유율이 36%라고 할 때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가?

→ 경쟁제한성 추정!!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2%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16%)가 시장점유율 합계(52%)의 1/4인 13%를 초과)

- ② 대규모회사가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분야에서 기업결합을 하고 당해 기업결합으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

반면, 시장집중도가 시장점유율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수준 이하로서 안전지대(Safe Harbor)에 속하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① 수평형 기업결합

- HHI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 HHI가 1200 이상,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

*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의 합



- 예: 관련 시장에 A, B, C, D, E 5개사가 존재하며 각각의 시장점유율이 35%, 30%, 22%, 11%, 2%일 때, HHI는?

$$\rightarrow HHI = 35^2 + 30^2 + 22^2 + 11^2 + 2^2 = 2,734$$

②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

-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한편, 혁신시장은 제조·판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파악이 곤란하다.

따라서 시장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한 대안적 기준으로서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의 특허 출원 또는 출원된 특허가 피인용되는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기업결합의 유형

유형	의의
수평형 기업결합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ex. 제조업체-유통업체, 원재료공급업체-수요업체간 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수평형/수직형 외의 기업결합(생산품목 간에 연관관계가 없는 회사간의 결합)

시장집중도 평가 시에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 변화추이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시장점유율 상위인 사업자의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2) 수평형 기업결합 : 단독효과, 협조효과, 구매력 증대효과 및 혁신 저해효과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기업결합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기업결합 유형에 따라 경쟁이 제한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평형 기업결합의 경쟁제한가능성을 심사할 때는 먼저 기업결합 이후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통제 · 경쟁배제능력 등을 보유 ·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보다 시장점유율 또는 생산능력이 현저하게 크거나, 구매자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경쟁제한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제품차별화가 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여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단독행위 관련사례>

바이엘코리아의 한국엠에스디 영업양수건('15.5) : 경구용 피임제 시장

-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2%에 달하여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능력과 유인을 갖게 되는 반면, 의약품 수입 시 식약처의 허가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진입 가능성도 작다고 보아 시정조치

또한, 수평형 기업결합은 당해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특성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사업자간에 가격 · 수량 · 거래조건 등에 관한 명시적 · 묵시적 협조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해지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명시적 · 묵시적 협조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해지는지는 상품의 동질성, 정보공유의 용이성, 상대회사의 독행기업(Maverick) 여부, 공동행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때,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시, 이탈자에 대한 제재가능성이 높을수록 공동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조효과는 실제 사업자 간 명시적 공동행위 뿐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협조행위 관련사례>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주식취득건('15.6) : 탄합봉강, 빌렛, 연주빌렛시장

- 관련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고, 생산능력이 월등한 당사 회사 및 경쟁사업자의 공동행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아울러 수평형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경우 결합 이후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되어 구매물량 축소 등 경쟁제한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기반 산업은 M&A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경우 관련 분야의 혁신경쟁 저해로 이어져 신제품 출시 저해, 제품 업그레이드 지연 등 다양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 사업자인지 여부,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결합 후 혁신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혁신저해효과 관련사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아이엔씨(AMAT)와 도쿄 일렉트론 엘티디(TEL) 합병 건('15.4)

: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

- 증착, 식각, 세정 등 14개 반도체 제조장비시장에서 혁신 역량이 독보적인 3개 기업 중 상위 1, 2위 기업이 결합함으로써 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혁신에 투자 할 유인을 크게 감소시키고, 미래 혁신적 반도체 시장 도입을 지연시키는 등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으며, 당사회사는 합병계획을 자진하여 철회

(3) 수직형 기업결합 : 시장봉쇄효과, 협조효과

수직형 기업결합은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이다.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다음의 2가지 방향으로 경쟁제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결합 당사회사가 기업결합 후 경쟁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판매를 거부하거나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다른 거래 단계(구매선·판매선)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하는 효과를 시장봉쇄효과라고 한다.

시장봉쇄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업결합의 목적, 원재료 구매회사 또는 공급회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 및 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시장봉쇄효과 관련사례>

- ① LAM리서치의 KLA텐코 합병건('16.10) : 반도체 계측장비와 공정장비업체 간
- 계측·검사장비와 공정장비간 결합이 발생하여, 공정장비업체인 LAM 리
시치의 경쟁사들이 봉쇄될 우려가 높다고 보아 시정조치
- ② 현대제철 등의 동부특수강 주식취득건('15.3) : 완성차업체와 철강업체 간
- 원료(Wire Rod)에서 최종수요(완성차)까지 수직계열화되어, 강선 및 마
봉강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
- ③ 에이에스엠엘의 사이머 주식취득건('13.6) : 반도체원재료 생산자·구매자
간
-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DUV광원 및 리소그래피시스템시장에서의 수직
결합으로 광원 구매선 및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

다음으로 피취득회사가 하방시장의 유력한 구매자이거나 결합 이후 정보공유가 용이해지는 경우 등에는 결합 후 경쟁사업자 간에 협조가 능성이 증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상방시장(upstream market)에서 사업자들이 담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약 하방시장(downstream market)에 매우 많은 양을 구매하는 유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구매자와 거래하기 위해 상방시장의 사업자들은 담합을 위반하고 그 구매자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할 유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방시장에서의 담합은 이루 어지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상방시장의 한 회사가 하방시장의 유력한 구매자를 인수하는 경우 담합을 억제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므로 상방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은 결합 이전에 비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4) 혼합형 기업결합 : 잠재적 경쟁 및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

혼합형 기업결합의 경우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실현, 위험 분산 등의 이점이 존재하여 시장 내 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수평형 기업결합에 비해 효율성 증가효과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합형 기업결합도 관련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결합 이후 당사회사의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거나,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시장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먼저 잠재적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판단 한다. 잠재적 경쟁이 결합에 의해 사라지는 경우 독과점 기업은 잠재적 경쟁을 의식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므로 결 과적으로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신규진입에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당사회사중 하나가 기업결합이 없었더라면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 하였을 잠재적 경쟁자였거나, 당사회사중 하나로 인해 타사업자 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의 존재 여부

또한, 결합 이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수 있는지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가격·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시장 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신규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혼합형 기업결합 관련사례>

- ①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건('08. 3) : 이동통신시장과 유선통신시장
 - 유무선 결합상품시장에서 동 혼합형 기업결합이 SKT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가 우려되어 시정조치
- ②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건('06. 1) : 맥주·소주 시장
 - 양사를 잠재적 경쟁자로 본 기업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주류도매상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진입장벽을 증대할 우려가 있어 조치
 - * 임계매출감소분석(CLA)을 최초로 사용한 사례 : 가상적 독점기업이 SSNIP 를 시도할 경우 그에 따른 실제 매출감소율과 임계매출감소율(이윤감소를 야기하지 않는 매출감소율 중 최대치를 의미)을 비교하여 이윤이 증가하는 최소의 상품범위 또는 지리적 시장을 찾는 방법

(5)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정보자산은 주요 원재료이거나 주요 상품이므로, 정보자산을 독점·봉쇄하는 경쟁제한적 M&A는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이외에도 M&A로 인하여 대체하기 곤란한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지 여부, 정보자산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 관련 사례>

딜리버리히어로 SE의 우아한형제들 주식취득건('20.12.) : 배달앱 시장

- 당사회사들이 배달 음식 주문과 관련한 압도적 정보자산을 바탕으로,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등 고효율 마케팅을 할 경우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 확인

앞서 서술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이를 완화시키는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경쟁제한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에는 해외경쟁의 도입, 신규진입, 유사품 및 인접시장,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가 있다.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수입의 용이성, 수입비중 추이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이 큰 경우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 해외경쟁의 수준은 상품의 국제가격, 시장개방정도, 국제적인 유력 경쟁자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해외경쟁 도입수준을 고려한 관련사례>

①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건('04. 9) : 피아노 시장

- 일본·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압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제품은 고가품, 중국제품은 저가품으로서 수입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배척

② 삼성전자와 도시바사간의 조인트벤처회사 설립건('04. 5) : 광디스크 시장

- 수입비중이 40%에 달하는 등 수입이 용이하고, 해외에 강력한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는 등 글로벌 경쟁압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허용

(2) 신규진입 가능성

가까운 시일(통상 1~2년) 내에 당해 시장으로의 신규진입이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규진입이 충분한지 여부는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 가능한 정도의 규모와 범위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차별화된 상품시장인 경우 당사회사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신규진입이 용이한지 여부는 법적·제도적 진입장벽, 진입에 필요한 자금규모, 지재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컨대, 참여의사를 공표했거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 없이도 당해 시장에 참여가능한 회사가 있는 경우 등은 신규진입이 용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규진입을 고려한 관련사례>

CJ 등의 플레너스 주식취득건('04. 7) : 영화상영 시장

-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시장집중도 요건에 해당하지만, 타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신규진입계획을 갖고 있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동 기업결합건을 승인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한 상품이 있는 경우 생산기술의 발달 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별 시장이 분리되어있더라도 시장 간 지리적 근접도, 수송 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후 공급처 전환, 신규 공급처 발굴 등의 방법으로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억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바. 예외인정 판단기준 : 효율성증대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더라도 효율성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다는 것을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이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이 유발되어 결과적으로 가격인하, 서비스 개선과 같은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효율성 증대는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과(merger-specific efficiency)로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또한,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피취득회사가 회생불가회사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관련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부실기업이라면 허용여부에 관계 없이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더라도 경쟁구조가 더 나빠진다고 볼 이유가 없어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취득회사를 인수할 다른 기업이 없어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회생불가회사로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
- 기업결합이 아니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계속 활용되기 어려울 것
-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회생불가회사 항변 관련사례>

①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건('04. 9) : 피아노 시장

- 영창악기의 유동성 위기는 구조조정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고, 제3자의 인수의사가 있어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라 보기 힘들어 삼익악기의 주장을 배척

② 동양제철화학의 고합 영업양수건('03. 1) : 무스프탈산·가소제 시장

- 고합은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었고, 무스프탈산·가소제가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생산시설 매각이 어려웠으며,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아 예외를 인정

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당해 행위의 중지(불허), 주식의 처분, 임원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경쟁제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때, 시정조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의 유형은 조치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유형	내용
구조적 조치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지조치)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키는 조치• (자산매각조치)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
행태적 조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영업방식·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구조적 조치를 행태적 조치에 우선하여 부과하고,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적 조치를 우선하는 까닭은 지속적 감시비용을 수반하는 행태적 조치와 달리, 구조적 조치는 시장구조 자체를 경쟁적으로 유지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의 복구·유지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분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2000년도 이후 약 0.53%(총 신고건수: 14,787건, 시정조치 건수: 79건)의 기업결합 건이 공정위에 의해 시정조치를 부과 받았다.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신고 건수	703	644	602	589	749	658	744	857	550	413	499
시정조치 건수	4	1	2	7	6	1	6	3	4	3	3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신고 건수	543	651	585	571	669	646	668	702	766	865	1,113
시정조치 건수	2	2	5	2	8	4	4	3	4	3	2

나. 이행강제금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에 대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에 대해, 영업 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에 대해 매 1일당 3/10,0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2/10,000에서 2/20,000의 부과비율을 기업결합금액의 단계별 수준에 따라 곱한 금액에 불이행기간을 곱하여 결정된다.

<이행강제금 부과사례>

① 현대HCN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주식취득건('13.03) 시정조치 관련

- 공정위의 수신료 인상금지명령을 '13.4.1. ~ '16.7.31.까지의 기간 동안(1,218일) 이행하지 않아 불이행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13억 4,24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② 코오롱의 고합 영업양수건('02.12) 시정조치 관련

- 시정조치 이행기간인 '03. 4.30까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5. 1부터 매 1일당 6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코오롱은 27일 간의 불이행에 대해 총 1억 6,68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

다. 벌칙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첨부 1>

기업결합 관련 통계

1. 기업결합 심사건수 추이

연도	'81-'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심사건수 (건)	5,506	644	602	589	749	658	744	857	550	413	499
연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심사건수 (건)	543	651	585	571	669	646	668	702	766	865	1,113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접수·심사한 기업결합 건 집계 자료로,
해당연도에 시장에서 발생한 모든 기업결합 건을 의미하지 않음

** 신고기준 상향 : 신고회사 자산·매출액 1,000억→2,000억('08.7),
상대회사 자산·매출액 30억→200억('07.11),
결합당사회사 자산·매출액 2000억, 200억→3000억, 300억('17.10)

2. 기업결합 위반유형별 시정실적

연도 구분	'81-'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13	1	2	7	6	1	6	3	4	3	3
예외인정	11	-	-	2	-	-	-	-	-	-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567	43	44	36	29	16	53	50	27	20	19
연도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2	2	5	2	8	4	4	3	5	3	1
예외인정	-	-	-	-	-	-	-	-	1	-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18	34	16	38	16	19	28	28	8	10	30

3-1. 외국기업 포함 기업결합(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및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

구 분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인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전체 기업결합
2003	건수(비중)	103(17.5)	13(2.2)*
	금액(조원)	3.5	19.1
2004	건수(비중)	125(16.7)	58(7.7)
	금액(조원)	6.3	168.3
2005	건수(비중)	84(12.8)	72(10.9)
	금액(조원)	5.5	163.8
2006	건수(비중)	79(10.6)	113(15.2)
	금액(조원)	2.1	231.6
2007	건수(비중)	73(8.5)	115(13.4)
	금액(조원)	1.6	263.1
2008	건수(비중)	47(8.5)	48(8.7)
	금액(조원)	1.4	121.2
2009	건수(비중)	23(5.6)	30(7.3)
	금액(조원)	4	121.6
2010	건수(비중)	25(5.0)	53(10.6)
	금액(조원)	2.9	184.1
2011	건수(비중)	36(6.6)	76(14.0)
	금액(조원)	2.7	107.2
2012	건수(비중)	28(4.3)	80(12.3)
	금액(조원)	1.7	128.9
2013	건수(비중)	41(7.0)	93(15.9)
	금액(조원)	201	144.5
2014	건수(비중)	44(7.7)	76(13.3)
	금액(조원)	13.0	159.1
2015	건수(비중)	32(4.8)	103(15.4)
	금액(조원)	5.1	320.5
2016	건수(비중)	47(7.3)	109(16.9)
	금액(조원)	3.2	564.1
2017	건수(비중)	41(6.1)	113(16.9)
	금액(조원)	9.6	446
2018	건수(비중)	37(5.3)	95(13.5)
	금액(조원)	5.0	438
2019	건수(비중)	41(5.4)	127(16.6)
	금액(조원)	9.7	408.7
2020	건수(비중)	28(3.2)	105(12.1)
	금액(조원)	9.0	165.1
2021	건수(비중)	49(4.4)	110(9.9)
	금액(조원)	6.5	278.0

* 2003.7월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 신고제도 도입

3-2. 외국기업 포함 기업결합(국내기업을 결합한 외국기업의 국적별 통계)

구 분	EU	미국	일본	기타	외국전체
2003 (비중)	38 (36.9)	33 (32.0)	19 (18.4)	13 (12.6)	103 (100.0)
2004 (비중)	35 (28.0)	47 (37.6)	30 (24.0)	13 (10.4)	125 (100.0)
2005 (비중)	33 (39.3)	22 (26.2)	20 (23.8)	9 (10.7)	84 (100.0)
2006 (비중)	29 (36.7)	24 (30.3)	14 (17.7)	12 (15.3)	79 (100.0)
2007 (비중)	28 (38.4)	18 (24.7)	11 (15.1)	16 (21.9)	73 (100.0)
2008 (비중)	19 (40.4)	8 (16.7)	8 (16.7)	12 (25.0)	47 (100.0)
2009 (비중)	8 (34.8)	6 (26.1)	5 (21.7)	4 (17.4)	23 (100.0)
2010 (비중)	6 (24.0)	8 (32.0)	7 (28.0)	4 (16.0)	25 (100.0)
2011 (비중)	12 (33.3)	6 (16.7)	10 (27.8)	8 (22.2)	36 (100.0)
2012 (비중)	10 (35.7)	0 (0.0)	11 (39.3)	7 (25.0)	28 (100.0)
2013 (비중)	9 (26.8)	7 (17.1)	14 (34.1)	11 (26.8)	41 (100.0)
2014 (비중)	12 (27.3)	8 (18.2)	8 (18.2)	16 (36.3)	44 (100.0)
2015 (비중)	7 (21.9)	6 (18.7)	5 (15.6)	14 (43.8)	32 (100.0)
2016 (비중)	14 (29.8)	8 (21.3)	6 (12.8)	19 (36.1)	47 (100.0)
2017 (비중)	13 (31.7)	12 (29.3)	5 (12.2)	11 (26.8)	41 (100.0)
2018 (비중)	9 (24.4)	4 (10.8)	5 (13.5)	19 (51.3)	37 (100.0)
2019 (비중)	11 (26.8)	8 (19.5)	0 (0.0)	22 (53.7)	41 (100.0)
2020 (비중)	7 (25.0)	3 (10.7)	1 (3.6)	17 (60.7)	28 (100.0)
2021 (비중)	12 (24.5)	8 (16.3)	7 (14.3)	23 (82.1)	49 (100.0)

4-1. 연도별 기업결합 통계(유형별)

유형별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수평결합	92	151	151	198	192	195	237	148	145	172	
수직결합	65	65	79	64	73	41	55	57	48	82	
혼합결합	487	386	359	487	393	508	565	345	220	245	
총 건수	641	602	589	748	658	744	857	550	413	499	
유형별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수평결합	197	219	196	206	188	214	186	213	258	243	377
수직결합	67	91	56	60	85	78	99	103	64	53	64
혼합결합	279	341	333	305	396	354	383	386	444	569	672
총 건수	543	651	585	571	669	646	668	702	766	865	1,113

4-2. 연도별 기업결합 통계(수단별)

수단별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주식취득	234	215	215	263	295	355	401	216	119	186	
임원겸임	177	143	167	236	138	141	145	80	46	62	
합병	73	65	67	103	110	114	136	93	120	115	
영업양수	62	78	53	64	73	74	107	73	62	52	
합작회사 신설	48	101	87	83	42	60	68	88	66	84	
총 건수*	641	602	589	748	658	744	857	550	413	499	
수단별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주식취득	208	189	218	226	258	242	263	226	251	274	332
임원겸임	68	62	61	51	74	47	62	70	68	100	152
합병	107	178	157	143	160	145	132	164	152	144	219
영업양수	48	86	54	57	83	82	82	78	81	96	95
합작회사 신설	112	136	95	94	94	130	129	164	214	251	315

4-3. 연도별 기업결합 통계(업종별)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석유, 화학, 의약	비금속 광물	식료	기타	소계	금융	건설	도소매, 유통	정보통신, 방송	음식, 숙박	운수	기타	소계		
'01	71	42	45	3	11	17	189	113	22	62	162	5	24	67	455	644	
'02	67	44	39	17	17	29	213	95	25	49	108	9	36	67	389	602	
'05	77	94	52	10	22	42	297	97	28	37	95	6	28	70	361	658	
'06	91	66	71	11	23	46	307	76	93	52	106	4	29	77	437	744	
'07	106	100	51	24	26	49	356	131	103	52	75	3	47	90	501	857	
'08	59	44	47	13	13	25	201	103	56	41	52	4	33	60	349	550	
'09	51	36	27	8	12	19	153	63	61	31	56	8	17	24	260	413	
'10	59	67	51	12	8	14	211	74	55	38	47	3	14	57	288	499	
'11	78	87	60	7	25	22	279	87	32	24	44	4	20	53	264	543	
'12	93	95	40	19	16	28	291	99	20	73	38	15	16	99	360	651	
'13	98	47	72	12	24	27	280	75	37	41	34	10	23	85	305	585	
'14	64	43	48	15	10	42	222	96	21	53	47	10	21	101	349	571	
'15	68	95	73	7	33	60	336	94	26	33	57	21	29	73	333	669	
'16	85	50	45	12	20	59	271	120	27	35	53	16	35	89	375	646	
'17	88	48	58	11	18	21	244	105	25	67	54	13	34	126	424	668	
'18	105	52	55	14	17	12	255	125	35	52	65	14	31	125	447	702	
'19	95	61	66	8	17	12	259	186	39	48	45	8	26	155	507	766	
'20	80	54	60	20	19	27	260	189	39	68	73	10	49	177	605	865	
'21	92	90	95	17	18	34	346	241	54	84	105	14	50	219	767	1,113	

<첨부 2>

기업결합제도 변천내용

구 분	제도내용 및 개선내용
제정법 (81.4.1 시행)	<p>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회사이외의 자를 포함한다)는 직접 또는 그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도는 소유(이하 "주식의 취득"이라 한다) 2.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의 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의 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의 설립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범위에는 제2조 제1항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p> <p>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산업합리화 도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업결합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p> <p>④ 회사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8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 2. 회사외의 자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2 이상의 회사의 주식을 각기 100분의 10 이상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 3.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의 겸임을 한 경우 4. 회사가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p>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임원의 겸임을 한 때에는 그 주식의 소유일 또는 임원의 겸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구 분	제도내용 및 개선내용
제정법 (81.4.1 시행)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차 개정 (87.4.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취득 신고기준 변경 : 10%→20% ○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주식 20%이상 취득시 신고 ○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시 신고일 변경:10일이내→30일이내
제3차 개정 (93.4.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신고대상추가 : 원재료의존관계 회사 주식취득 포함 ○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 변경(시행령, 93.2.20):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총자산 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 ○ 신고기관 변경 : 경제기획원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제5차 개정 (97.4.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연장기간 변경 : 30일 → 60일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도 심사대상에 포함 ○ 특수관계인 범위 추가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대규모회사의 중소기업시장 진입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마련 ○ 상장법인의 경우 신고대상 주식취득비율을 15%로 하향조정 ○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 변경(시행령, 97.3.31):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제7차 개정 (99.4.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의 축소로 다음사항은 기업결합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기업집단 또는 단독회사에 의한 회사설립 - 대규모회사가 아닌자의 임원겸임 -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 기존의 예외인정 요건을 폐지하고 다음 사항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 상당기간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기업결합 신고기간 이전에도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임의적 사전심사제도 도입
제9차 개정 (01.4.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기업결합하는 경우 신고의무 면제 ○ 신기술사업금융사 및 투자조합이 신기술금융업자와 기업결합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함

구 분	제도내용 및 개선내용
제10차 개정 (02.4.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와(기업인 수증권투자회사: 계열회사 편입을 목적으로하는 투자회사 제외) 기업결합하는 경우 신고의무 면제함
제12차 개정 (05.4.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취득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재신고제를 도입하여 경쟁제한 성 심사의 미비점을 보완 ○ 대규모회사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취득 및 추가취득에 따라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 ○ 심사연장가능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관련시장 확정, 경쟁 제한성 분석 등 기업결합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가능 ○ 계열회사간 임원겸임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은 규모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 ○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산정기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 <p><시행령(05.4.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신고요건의 상대회사 기준금액(30억원) 명시 ○ 사전신고 기산점인 법 제12조6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구체적으로 규정
제15차 개정 (07.11.4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요 또는 불공정한 방법'의 기업결합 금지규정 삭제 ○ 신규회사 설립 시의 기업결합 신고요건을 종전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인수에서 주식비율에 관계없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변경 ○ 기업결합 신고 적용제외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및 그에 대한 투자목적 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주식취득은 기업결합신고 예외인정 ○ 다음의 경우에 대해 기업결합 신고절차 특례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역무를 수행하는 제공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합병 및 분할하는 경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를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양 기관(주무관청, 공정위) 중 신고서류를 접수받은 기관은 타 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구 분	제도내용 및 개선내용
	<p><시행령(07.11.4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종전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고, 외국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그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요건으로 규정 <p><시행령(08.7.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종전 1천억원 이상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제17차 개정 (09.3.25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 사전신고기한을 종전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기업결합일' 전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변경 <p><시행령(09.5.13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가중·감경기준 신설
제18차 개정 (11.12.2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의결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회복시키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고 심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 도입 <p><시행령(12.1.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내매수 및 실권주 취득 등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을 모두 사전신고로 전환
제19차 개정 (12.6.22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 심사기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120일로 연장 가능 ○ 기업결합 이행행위 금지기간을 '신고 후 30일'에서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로 수정 ○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750~2,000만 원에서 1,500~4,000만 원으로 2배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신고의무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300만 원에서 400~1,200만 원으로 그 수준을 현실화
시행령 개정 (17.10.19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종전 일방 2천억 원, 타방 200억 원 이상에서 일방 3천억 원 타방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요건을 2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시행령 개정 (19.3.12.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이행 강제금 부과 전 통지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시,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이행 강제금 부과 전 통지 제도 도입
제30차 개정 (21.12.30.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취득회사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 원 이상이면서 피취득 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하는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형별 규정 삭제

<첨부 3>

주요국 기업결합 신고제도

구 분	미 국	E U
관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R법 (클레이튼법 제7조a, 15U.S.C.18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합병규칙 (EC Merger Regulation, COUNCIL REGULATION (EC) No 139/2004)
신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금액 101백만달러 이하 : 신고의무 없음 ○ 거래금액 101백만 달러 초과, 403.9 백만달러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2백만달러 초과 + 타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2백만달러 초과 시 신고의무 - (외국회사 간 결합) 결합당사회사 합산 미국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22.2백만달러 이상 + 피취득자산의 미국내 매출액 101백만달러 초과 시 신고의무 - (외국자산 취득) 직전 사업년도 피취득자산의 미국내 매출액 101백만달러 초과 시 신고의무 ○ 거래금액 403.9백만달러 초과 : 결합당사회사 규모 무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외국회사간 결합이나 외국자산 취득의 경우 피취득자산 미국 내 매출액 101백만달러 초과 시 신고의무 <p>*위 기준은 2022년 2월 발표사항으로. 미국의 신고기준은 직전년도 기준 금액에 GNP성장률을 곱하여 매년 자동조정되어 2월경 FTC와 DOJ가 당해연도 신고기준을 공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회사 합산규모)당사회사의 전 세계 합산 매출액이 50억 유로 초과 - (당사회사 개별규모)2 이상 당사회사의 EU 역내 전체 매출액이 각각 2억5천만 유로 초과 ○ 기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회사 합산규모)①당사회사의 전 세계 합산 매출액이 25억 유로 초과 ②3 이상의 EU 회원국에서 당사회사 합산 매출액이 각각 1억 유로 초과 - (당사회사 개별규모)①상기 3 이상의 EU 회원국 각각에서 2 이상의 당사회사 매출액이 각각 2천5백만 유로 초과 ②2 이상 당사회사의 EU 전체 매출액이 각각 1억 유로 초과
신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신고 ※ 사전승인(신고)제도입을 위해 1976년 HSR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신고
신고위반 제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46,517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매출의 10% 이하 벌금
관련 홈페이지	http://www.justice.gov/atr/public/merger-enforcement.html (DOJ) http://www.ftc.gov/bc/mergers.shtm (FTC)	http://ec.europa.eu/competition/mergers/overview_en.html

	일 본	중 국
관 련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독점금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독점법 (Antimonopoly Act)
신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2백억엔 초과 - 타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50억엔 초과 ○ 입원겸임 : 규모기준 없음 ○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2백억엔 초과 - 타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50억엔 초과 ○ 합병공동신설분할 및 흡수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2백억엔 초과 - 타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50억엔 초과 ○ 공동주식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2백억엔 초과 - 타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50억엔 초과 ○ 영업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2백억엔 초과 - 타방의 일본 내 매출액이 30억엔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회사 합산규모)당사회사의 전 세계 합산 매출액이 120억 위안 초과 - (당사회사 개별규모)2 이상 당사회사의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 초과 ○ 기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회사 합산규모)당사회사의 중국 내 합산 매출액이 40억 위안 초과 - (당사회사 개별규모)2 이상 당사회사의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 초과
신고대상	*공동신설분할이나 흡수분할을 통해 설립하는 회사에 당사회사들이 영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느냐 영업의 중요부분을 승계시키느냐에 따라 규모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본문의 규모 기준은 당사회사 모두 전부승계하는 경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주식취득 · 자산취득 ·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한 통제권 취득
신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신고
신고위반시 제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만엔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 회계연도 총매출의 10% 이하 벌금 ○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을 경우 500 만 위안 이하 벌금
관련 홈페이지	http://www.jftc.go.jp/en/policy_enforcement/mergers/index.html	
	http://www.samr.gov.cn/fldj	

II. 기업결합 질의 응답

1.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관

가. 기업결합의 개념

◎ 사례 1 : 기업결합의 개념

[]

가?

[]

- 기업결합이라 함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 · 인적 · 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소유권 또는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말함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M&A(Merger & Acquisition : 인수 · 합병)와 유사한 개념
-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결합을 결합수단에 따라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법 제9조제1항)
 -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
 -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등기임원을 지칭) 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행위
 - 다른 회사와의 합병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양수 · 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수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행위(합작회사 설립)

◎ 사례 2 : 기업결합과 계열회사 편입

[]

가 , 가?

[]

- 기업결합이란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되어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의 과정을 말함
 -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기업결합 신고요건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 ①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의 100분의 20(상장 회사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② 대규모 회사(해당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③ 합병을 하는 경우 ④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⑤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반면, 계열편입이란 "계열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을 의미함
 -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를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가 되며, 이 때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법 제2조 제11호)
 - 지분율 요건(동일인관련자가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 출자자인 경우)

또는 영향력 요건(임원겸임, 거래관계, 채무보증, 대차관계 등으로 지배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계열회사 관계가 인정됨 (법 시행령 제4조)

- 기업결합과 계열편입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 기업결합(주식 취득 또는 임원겸임, 회사설립)의 결과로서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효과가 발생함
 - 일반적으로 계열편입 사실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공시대상기업 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편입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 기업결합 업무는 공정위 기업결합과 소관사항이며, 계열편입 업무는 기업집단정책과 소관사항임

나. 신고대상 주체

◎ 사례 1: 100% 자회사를 통한 기업결합 시 신고의무자

[]

A	100%	B	X	.
A		가 B	가?	

[]

-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의 직접 당사회사인 B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
- 그러나 당해 기업결합 거래(예: 주식취득, 합병 등 구체적 실행계약)의 기본 계약(주주간 계약서 등)의 계약 당사자, 기업결합 목적, 자회사 B의 독립된 의사결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기업결합 주체가 모회사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모회사가 주체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기업결합 목적의 자회사(merger-sub)를 만들거나, 투자목적별로 계정을 분리하기 위해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가 신고주체가 되는 것이 거래구조 파악에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사례 2 : 회사 여부 판단 기준(특수법인의 신고의무)

[]

가	가	
‘ ’	가	가?

[]

- 법 제11조 제1항은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므로, 회사의 특수관계인이면 회사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음
 - 따라서 회사의 개념을 밝혀야 신고의무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음
 - * 다만, 법 제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을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아닌 자로서, 회사의 특수관계인도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정위는 직권으로 기업결합 심사를 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수는 있음. 회사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는 이유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는지 판단함에 의의가 있음
- 일반적으로 회사란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상법 제169조(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3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쫓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으로서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 핵심 개념 요소임

- 회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위 개념요소를 충족하는지 검토함
 - * 영리성이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귀속의 주체가 되고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함(다수설). 따라서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면 영리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법의 적용이 가능한 법인의 경우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일반적으로 설립 근거법률이 상법이 아닌 영리 목적 특수법인의 경우에도 특별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상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됨
 - 성질상 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공법인의 경우 상법을 준용하도록 근거법률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회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판단 과정을 거침
 - ① 당해 법인 자체의 성격 검토 - 영리성과 법인성
 - ② 근거법률에서 상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지 검토
 - ③ 당해 법인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회사인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검토

<	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1255) 		

◎ 사례 3 : 조합의 신고의무

[]

A

가?
가?

[]

- 조합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성격상 “법인”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A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임원의 출자 지분 등을 고려하여 A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라면 당연히 기업결합 신고의무자가 됨

* 특수관계인은 친족, 사용인 등 자연인,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계열회사 등이 될 수 있으나, 조합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지 아니함

* 명칭은 조합이나 구성원들과 독립한 별도의 법률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인에는 기관(대표이사)을 설정하여 기관의 행위를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상관 없이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 독립하여 존재하고 운영됨

- 그러나 조합이 성질상 법인이 아니라 순수한 조합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조합의 대외적 법률행위는 조합 그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당사자로서 업무집행 조합원이 각각을 대리(민법 제709조)

- 다만, 조합의 약정과 출자 지분들을 종합하여 볼 때 A기업집단의 소속회사나 임원이 그 조합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A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그 조합원이 신고의무자가 되어 신고하여야 함

◎ 사례 4 : 펀드의 신고의무

[]

A	가	가?	가?
---	---	----	----

[]

- 펀드란 통상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상 투자신탁 형태의 간접투자 기구, 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 투자기구를 지칭함
 - 투자신탁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추상적인 자산 집합체로서,
 - 투자신탁에 대한 지분 소유자(수익자, 투자자)와 신탁재산에 대한 의사 결정 주체, 곧 운용지시자(집합투자업자, 위탁자, 자산운용사)와 자산 보유·관리·처분명의자(신탁업자, 수탁자, 은행 등)가 모두 다르므로 신고의무 발생시 누가 신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 논리적으로 집합투자(펀드)는 실질 소유자와 의사결정이 분리되어 있고, 엄격한 자산운용 제한으로 기업결합 규제의 실익이 없음
 - 신탁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수익을 취하는 (지분적)소유자와, 자산운용자가 분리되었으므로 신탁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하여 특정인의 지배력이 형성되거나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¹⁾
- 또한 투자신탁의 경우 그 신고의무 주체를 확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의 자산 취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

1)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 다만, 펀드 규모, 수익자 구성, 거래구조,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예외적으로 신고 및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음
 - 사모펀드로서 투자자(수익자)가 특정될 정도로 소수이며 형식적으로는 운용지시자가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수익자가 운용지시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특정인이 펀드를 통해 다른 회사의 자산을 취득한다는 실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음

◎ 사례 5 : 인적분할의 경우 신고의무자

[]

A	B,C,D	E	.	.	, B,C,D	E	가	가?
---	-------	---	---	---	---------	---	---	----

[]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함(법 제10조)
- A사는 B, C, D를 인수한 후 A사와 E사로 인적분할되고 E사는 B, C, D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기업결합신고의무는 E사에 승계됨

◎ 사례 6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특수관계인

[]

14	“	가?
가	”	

[]

- 해당회사의 계열회사나 그 외 특수관계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직원 등)은 아니지만 여러 회사들이 경영권 획득이나 경영활동에 대한 지배를 위한 공동의 목적으로 특정회사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 기업결합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포함함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가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 주식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시 또는 최다출자자 여부 판단시 참여회사 소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게 되고(법 제11조 제5항)
 - 이 경우 이들 회사 지분이 20% 이상이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법 제11조 제1항), 신고는 공동으로 하여야 함(법 제11조 제11항)
 - 기업결합 심사 시 피취득회사에 대한 지배관계 형성 여부도 이들 기업의 소유 지분을 모두 합산하여 고려함

◎ 사례 7 : 합작회사의 신고의무

[]

A B 50%+1 , 50%-1 , A
B 甲 ,
A A B가 가 ?

[]

- 공정거래법 제 11조 제 1항 제5호에 따르면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례의 경우 1주라도 많이 소유하는 A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음

[]

	2	A	B	50:50	C
	B 가			B	
A가		A			?

[]

- 위 사례의 경우 A사와 B사가 C사를 설립할 때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면 이 경우 공동의 지배관계에서 단독의 지배관계로 변화하나 이미 지배관계가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경우 추가로 신고할 필요는 없음

다. 신고요건: 신고대상 주체의 규모 산정

◎ 사례 1 : 외국법인의 경우 국외계열사 포함 여부

[]

,	300	가
,	,	
,	?	

[]

- 기업결합신고대상 회사 여부는 계열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계열회사의 소재가 국내외에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음
- 따라서 외국에 있는 계열사를 포함하여 대규모회사인 경우 영업양수, 합병, 회사설립의 경우는 사전신고하여야 하며, 주식취득의 경우에도 장내 경쟁 매매 등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전신고 대상이 됨

◎ 사례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A	甲	B	30%
.	B	50%	
B	A	?	

[]

- 특수관계인이란 ①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② 동일인 관련자, ③ 경영을 지배할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 (시행령 제14조)

- 당해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개념은 법 시행령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가 규정
- 동일인관련자란 동일인의 친족, 관련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 비영리법인,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위 단체 또는 회사들의 사용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 * 계열회사란 지분율 기준(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영향력 기준(임원겸임, 거래관계, 채무보증, 대차관계 등으로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으로 판단
- 갑이 B사의 주식 30%를 취득하였으나 최다출자자가 아니고 기타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B사는 甲 또는 A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사례 3 :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의 신고요건

[]

?

[]

-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은 (1)외국 기업간의 기업결합과 (2)국내 회사가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2가지 경우로 구분 가능
- 어느 경우이든 신고의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신고요건(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타방 300억 원 이상)을 충족하면서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함(시행령 제18조 제3항)
- 다만, 외국회사가 국내기업을 결합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업 결합이므로 이러한 추가 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대상에 해당함

- 참고로, 공정위 2017. 12. 20.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함

◎ 사례 4 : 외국기업의 계열회사 판단

[]

, ?

[]

- 기업결합 신고요령 IV. 3.에 따르면 외국회사의 계열회사 범위는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제11호 및 제12호, 영 제4조 및 제5조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 외국회사는 자국법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가능
 - 외국회사의 경우 우리 법령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아니고 실제 국내법상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도 않음
 - 기업결합 신고요령 IV.는 외국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음
 - * IV. 2.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판단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자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IV. 4.는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외국의 재무제표를 전제하고 있음
- 그러나 계열회사 판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자국법상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의 실질적 지배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계열회사로 볼 수 있음
 - 기업결합 신고요령 IV.는 연결재무제표 대상회사를 계열회사로 본다는 것이지, 연결재무제표 대상회사만이 계열회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사례 5: 연초 발생한 기업결합에서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산정

[]

2018 1	2017	가
		,

?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기업결합의 신고요건이 되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금액을 의미
- 따라서 회계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 하더라도 가결산 자료(증빙자료 첨부)를 바탕으로 2017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
 - 다만 2016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신고의무 유무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증빙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2016년 회계감사보고서 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으로 제출하여도 무방
- 참고로, 직직전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신고대상 여부 및 사전-사후 신고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사후에 신고한 경우, 추후 직전사업 연도 확정 후 자산총액 및 매출액 증가로 인하여 미신고 내지 지연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사례 6 : 유상증자 시 자산총액 산정

[]

A	?
• A	B 20%
• A	3,000
• B	300 , 300 ,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5조는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에 대해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도,
 -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하도록 규정
- 그러나 이 때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신주는 당해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발생한 신주를 의미하며, 당해 기업결합의 일환으로 발생한 신주를 의미하지는 않음
- 따라서 당해 사안에서 신고기준이 되는 B사의 자산총액은 300억 원 미만이므로 A사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사례 7 : 합병 시 재무상황 작성 방법

[]

- | | | | |
|-------|---|----|-----|
| ○ () | | | |
| | 2 | 가 | + 2 |
| | | 가? | |
| ○ () | 4 | | |
| | 가 | 가 | |
| | | 가? | |

[]

- 합병 당사회사란에는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재무상황 변화는 반영하지 아니하므로 합병으로 갑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당사회사’의 재무상황은 ‘직전 사업년도말’의 재무상황이며, 증가한 부분은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재무상황’을 기록하는 란에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여 기재하게 됨
- 또한, 기업결합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시점의 재무상황을 기재하도록 함

◎ 사례 8 : 인수시기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 여부

[]

	3,000	2	
	300	2	
	2	,	가
			?
*	300	2	
	3,000	2	
			가

[]

- 기업결합신고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결합 전후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고,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양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함(법 제9조제5항)
- 그런데 '사전'신고대상인지 여부 즉,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이 보는지 아니면 모든 계열회사를 포함시켜서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신고회사 기업집단은 2조 원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함)
- 그러나, 영업양수의 경우 양수대상 영업은 상대회사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상대회사 기업집단이 대규모회사이든 아니든 의미가 없으므로 법 제12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원용하여 양도회사의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사후신고를 하면 됨

◎ 사례 9 :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도입

[]

2021

가

?

[]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또는 300 억 원 이상(외국회사의 경우는 국내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함
- 기존 당사자 규모 기준 신고제도에 따르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등에 대한 거액 인수 등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함으로써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경쟁을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이 있음
- 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①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②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도록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신고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 사례 10: 소규모피취득회사 기업결합 시 거래금액 산정방식

[]

가?

[]

- 거래금액 산정방식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V. 1.에서 임원겸임을 제외한 4가지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규정함

- 주식취득·소유: 취득·소유한 주식의 가액(신규 취득주식 취득금액 + 기존 소유주식 장부가액) + 인수채무가액

예) B사의 주식 5%를 보유한 A사가 지분 50%를 5,900억 원에 취득한 경우
(A사는 B사 주식 5%를 45억 원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 B사의 부채 100억 원)

$$\Rightarrow \text{거래금액 } 6,000\text{억 원} (5,900\text{억 원} + 45\text{억 원} + 100\text{억 원} \times 55\%)$$

- 합병: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주당합병가액×교부주식수, 합병 교부금이 있는 경우 포함) + 인수채무가액

- 영업양수: 영업양수대금 + 인수채무가액

- 회사설립 참여: 합작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

◎ 사례 11 : 거래금액 신고제 관련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규정 적용 여부

[]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법 제11조 제2항 적용시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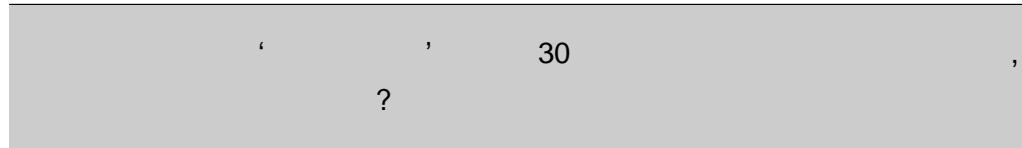
-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기업집단의 전 세계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회사(이하 '신고대상회사'라 한다)가 전 세계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회사(이하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이면서 기업 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 6,000억 원 이상이고 당해 소규모피취득회사 등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2항의 신고대상임
- 이 경우 신고대상회사와 소규모피취득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소규모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라고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 300억 이상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음
- 다만, 법 제11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를 판단할 때에는 기준과 같이 법 제11조 제12항에 따라 법 제9조 제5항이 준용됨

라. 신고시기

◎ 사례 1 : 기업결합 신고시기 기산점

[]



[]

- 기업결합일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
- 30일 산정 시 그 기산점은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 제도 : 기간을 일, 주, 연,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적용

구 분	기업결합일	기산점
주식 취득	○ 주권발행시 - 주권교부일(예 20일) ○ 주권미발행시 - 주식대금 지급일(예 20일)	21일
	○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예 20일) ※ 신주유상취득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날 0시부터 주주가 됨(초일불산입규정 단서적용) ※ 구주취득의 경우는 주권교부 받은 시점부터 주주가 됨	20일
임원겸임	○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예 20일)	21일
영업양수	○ 영업양수대금 지불을 완료한 날(예 20일)	21일
합병	○ 합병등기일(예 20일)	21일
회사설립	○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예 20일)	20일

◎ 사례 2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기업결합 신고

[]



[]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한 주식취득의 경우 법상 기업결합일 규정이 없음 → 주주가 되는 시점을 기업결합일로 봄

구 분	주주가 되는 시점=기업결합일	기산점
전환사채	○ 전환청구시 전환의 효력발생(예 20일)	21일
교환사채	○ 교환청구시 전환의 효력발생(예 20일)	21일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예 20일)	21일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 사채로서 발행되었지만 일정기간 경과 뒤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 투자가 보유한 채권을 일정시일 경과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회사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사채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사례 3 :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기업결합일

[]

17 1

“

”

?

[]

- 유한회사의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

- 기존 사원 상호간 양수도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정한 경우 자유 양도 인정 (상법 제556조 제3항), 즉 당사자 상호 합의만으로 지분 양수 효력 발생

- 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는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상법 제556조 제1항) 정관으로 이러한 요건을 가중할 수 있음

- ☞ 따라서 당사자간의 양도의 합의가 있는 날 또는 양도에 대한 사원총회 승인결의가 있는 날 중 늦은 날을 기업결합일로 봄

- 합명회사의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

- 지분의 양도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발생(상법 제197조) 이러한 요건은 정관으로 완화 가능

- ☞ 따라서 통상의 경우 사원 동의를 얻는 날 또는 계약 성립일 중 늦은 날을 기업결합일로 보고, 다른 사원의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는 계약 성립일을 기업결합으로 보아야 할 것

- 합자회사의 지분양수 효력 발생일

-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함(상법 제269조, 제197조)

-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필요(상법 제276조)

◎ 사례 4 : 유한회사의 증자지분 인수시 기업결합일

[]

가?

[]

-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는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의 양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증자지분의 인수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주식회사의 신주 인수에 관한 규정(1호 나목)을 유추적용 가능
-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발생일인 주식대금 납입기 일의 다음날을 기업결합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한회사의 증자지분 인수는 그 효력발생일인 증자의 등기일을 기업결합일로 보아야 함

◎ 사례 5 : 계약체결 후 기업결합 이행 전 소속집단이 변경되어 사전신고대상 회사로 된 경우 신고의무 및 신고시점

[]

100%	.	B	A	A	5	2	B	(300)
C	.	C					3	25	
B	5	2					5	16	

B 5 2 가 가. 가?

[]

- B사는 5월 2일부터 A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산정 시 동 기업집단의 직전년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의무 여부를 결정

- 그런데 B사는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 당시에는 신고대상 규모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행일에는 사전신고 대상 규모에 해당되므로,
 - 이때 B사에게 C사 설립 참여에 관한 i)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지, ii) 신고 의무가 있다면 사후신고인지 사전신고인지가 문제가 됨
- 이처럼 사전신고 의무발생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의무를 소급하여 적용시키거나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신고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즉, B사가 회사설립 참여 주주총회 결의를 한 시점에 B사는 대규모회사에 해당되기 전이므로 이후 대규모회사가 되었다고 하여 신고의무가 주주총회 결의를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결국 B사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날 (5월 17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함

<|

|>

- | | |
|--------------------|--------|
| ○ '07 M 가 | ' 08 7 |
| ○ '08 10 M 가 20% | |

|

가

(2009 0168)

◎ 사례 6 : 대규모회사 판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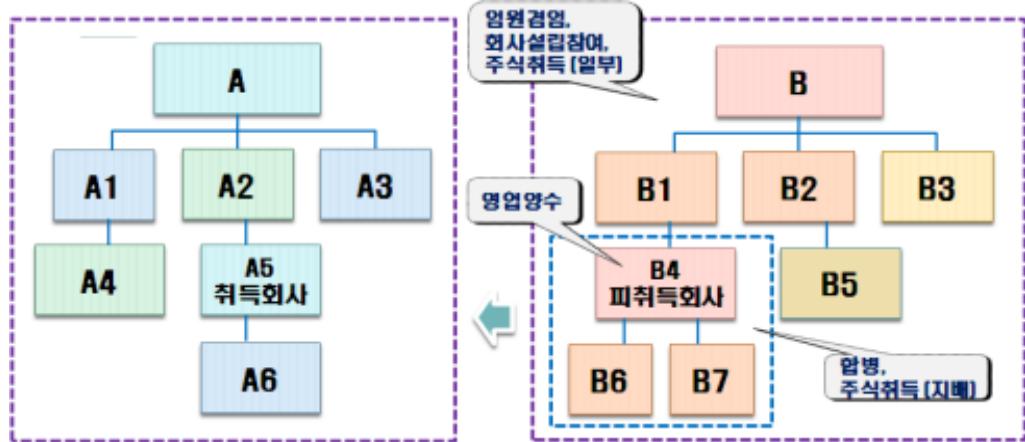
[]

A		?	
• A	B	100%	
• A		5,000	(1 5,000)
• B		500 , 400 ,	
		5.5	

[]

- 공정거래법 제9조 제5항 단서에서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 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기업결합 신고여부의 기준이 되는 일방 3,000억 원 및 타방 300억 원의 요건 충족여부 판단 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포함여부에 대한 기준임
 -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대규모회사”를 판단함에 있어 동 조항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음
- 그러나,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취지 및 거래의 실질을 감안할 때, 대규모회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위 사례의 경우처럼 비록 B사가 기업결합 전까지는 대규모회사(계열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이나, 기업결합 후에는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대규모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경우는 사후신고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참고로 기업결합유형에 따른 결합당사회사 및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12쪽 계열회사 판단시 유의사항 참조)



마. 신고서 작성 관련

◎ 사례 1 : 신고 서류의 종류

[]

가?

가?

[]

- 기업결합신고의 기본적인 내용은 기업결합의 거래구조(결합유형), 기업결합 사유, 당사회사 개요, 당사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 현황, 관련시장 현황, 경쟁제한성에 대한 견해 등이며 각각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기업결합 유형별로 거래구조 등이 달라 신고내용과 양식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결합신고서 작성요령, 양식, 첨부서류는 「기업결합신고요령」에 안내되어 있으며 일반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의 「심결 / 법령」 메뉴 중 고시 · 지침 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일반신고인지 간이신고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 /간이신고 여부를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첨부서류를 작성함
 - 간이신고는 유형별 기업결합신고서에 '[별표 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결합유형에 대한 판단은 거래구조의 형식이 아닌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그에 맞는 신고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예를 들어, 형식상은 주식취득이나 실질은 합작회사 설립인 경우 합작회사 설립에 맞는 신고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사례 2 : “주요품목 등 시장상황” 작성방법

[]

"

"

가?

[]

- 기업결합 신고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주요품목등의 시장상황"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임
- 따라서 신고회사와 상대회사 모두 주요품목(매출액 기준 상위 3개 품목)에 대하여 시장상황을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다만,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개 품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당사회사가 생산하는 품목에 있어 중첩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경우 중첩되는 품목과 관련된 시장상황을 작성하여야 함
- 또한, 원활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주요품목의 기능, 특징, 거래구조, 주요 사업자현황 등 경쟁상황 및 전후방 연관산업 등) 및 관련 시장분석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음

◎ 사례 3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작성방법

[]

"

"

가?

[]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발행주식총수는 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재해야 함
 - 따라서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상법 제369조제2항),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상법 제369조 제3항) 등은 주주현황 작성 시 제외하고 지분율을 산정함

바. 임의적 사전심사

◎ 사례 1 : 임의적 사전신고가 가능한 시기

[]

,

가?

[]

-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법 제12조 제6항에 규정된 신고기간 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9항)

- 다만, 당사회사 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여야만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기업결합이 입찰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할 실익이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통상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거래를 추진하기로 하는 양해각서 또는 MOU를 체결하였을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을 할 수 있음

◎ 사례 2 :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정식신고 여부

[]

가?

[]

-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는 사전심사를 받을지 여부를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요청하는 것이므로 정식신고와는 별개임
 -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정해진 형식 및 절차에 따라 별도로 정식신고를 해야 함 (정식신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따라 신고서를 갖추어 신고해야 함, 다만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부하지 아니함)
 - 다만, 정식신고 후 그 내용이 이미 사전심사를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그 최종결과를 통보하고 있음

사. 신고 후 이행 행위 금지

◎ 사례 1: 이행 행위의 범위

[]

11 8

?

[]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8항은 사전신고를 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기업결합 이행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 때 ‘기업결합 이행행위’는 시행령 제17조 ‘기업결합일*’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함
 - 따라서 주권의 교부, 주식대금의 지급, 합병등기, 영업양수 대금의 지급 등이 기업결합 이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주식취득 : 주권을 교부받은 날/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합의에 따라 의결권 등 주식에 관한 권리가 사전에 이전되는 경우 권리이전일)

합병 : 합병등기일

영업양수 : 영업양수 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회사설립 :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 사례 2 : 이행행위 금지기간

[]

11 8

가

?

[]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8항에 따르면 기업결합당사회사는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기업결합 이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
- 따라서, 신속한 기업결합 추진필요성이 있는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를 활용하여 불가피한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필요시 기업결합 기획 단계부터 공정위와 협의를 진행하여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사례 3: 일부이행의 경우

[]

A	300	B	1,000	가
,	300			A ?

[]

- 대규모회사가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기 전까지 기업결합신고(사전신고의무)를 하여야 하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영업양수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여서는 안되는 이행행위 금지의무가 부가되어 있음
- 다만, 사전신고 및 이행행위 금지 의무의 불이행 여부는 대금지급의 완료를 기준으로 함으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전체 양수대금중 일부를 지급하는 행위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아. 신고대상의 예외

◎ 사례 1 :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 제외의 범위

[]

「

」

,

가 가?

[]

- 법 제11조 제3항은 본 조항에 열거된 회사*들의 주식 취득이나 회사설립으로 인해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법』 상 신기술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 및 이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

- 따라서 갑의 주식취득에 대한 신고의무는 면제됨이 명백

- 그런데 위 회사들에 대한 임원겸임 등 다른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면제조항이 없는바, 임원겸임처럼 결합 형태 면에서 경쟁제한성이 더 낮은 유형은 해석상 당연히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
- 예외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법 문언상 신고제외 유형을 주식 취득과 회사설립 참여로 열거하였으므로 임원겸임의 경우는 신고해야 함

<T		>
○ T	「	」
○ T 가	2	1
가 ,		,
(2008 2541)		가

◎ 사례 2 : 연속된 기업결합에 있어서의 신고의무

[]		
A 가 B	C	. A B
A C		, A B
C A		
가 ?		
* A :	3 2	
B :	3 3	
C :	2	

[]

- 당해 사례에서 A사의 B사 영업양수는 대금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하나,
 - A사는 신고기간 중에 해당 영업을 C사에 다시 양도하게 되어 신고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별도로 기업결합 신고를 할 필요 없음
- 그러나 C사의 A사로부터의 영업양수는 이와 별개의 건으로 C사에게는 기업 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C사는 대규모회사이므로 사전신고 대상임

◎ 사례 3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신고제외의 범위

[]

11 3 3 가 「

가

,
? [, PEF()
]

[]

-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 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기구로 정의하고 있음
 - 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만을 이르며,

() ()

- 따라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인 PEF/Private Equity Fund는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음

2. 기업결합 신고제도 : 유형별 검토

가. 주식취득

◎ 사례 1 :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이동시 신고대상인지 여부

[]

A 가	X	A	B	
			가?	

[]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함(법 제11조 제5항)
- 따라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인 A사의 주식이 B사에게 양도된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없음

◎ 사례 2 : 계열회사가 이미 보유한 주식을 추가 취득 하는 경우

[]

	A		가	?	
• A	B	Y			
• X		B 가	A	X	

[]

-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함(법 제11조 제5항)
 - 주식소유 또는 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는 다음의 경우 발생
 - 20% 미만의 소유상태에서 20% 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8조 제4항)
 - 20% 이상 이미 소유한 자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8조 제5항)
 - 따라서 A의 주식 취득으로 Y그룹 전체의 X사에 대한 주식 소유 비율이 20% 미만인 상태에서 20% 이상이 되거나, 이미 20% 이상 소유하고 있다가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면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

◎ 사례 3 : 주식보유비율이 20% 미만이 되는 경우

[]

20%

20%

가

[]

- 주식 소유 또는 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2호에 정한 경우에만 필요함
-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 후, 보유주식의 매각 등의 사유로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감소한다 하여도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사례 4 : 주식취득 이후 자산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

· A	X	20%			
· A			3,000		
		가 3,000		(3,000
)				
· A		X	30%		
		가			
1) A				가?	
2)			3,000		
		30%			
		가?			

[]

(1) 질의 1

-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이고, 다른 회사는 300억 원 이상인 경우 발생함(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 자산총액이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이 경우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봄(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A사가 올해 X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에 작년말 자산총액과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된 자산총액을 합산하면 3,000억 원이 넘으므로 올해 유상증자 이후 시점에 기업결합을 한다면 신고의무 발생

(2) 질의 2

-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요건이 기업결합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해당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시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A사는 자산총액 요건을 충족한 이후(유상증자 이후)에 다시 주식을 취득하였는데(30% 이상 보유하였다가 20% 이상 추가 취득하였으므로 50% 이상 보유하게 됨) 30% 소유 당시 최다출자자가 아니었다가 금번 20% 이상 취득으로 인해 비로소 최다출자자가 되었다면 신고해야 함

◎ 사례 5 : 인적분할 후 지분 승계시 신고의무

[]

A 가		A,B,C 3 가		A 가 가	
20%	B	C 가		B	C
() 가 가?					

[]

- 단순분할의 경우 기업결합이 아니므로 기업결합신고의무도 없음
-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분할 및 승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회사분할과정에서 분할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주식을 승계 받더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 사례 6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범위

[]

11	1	1	'	344	3 1	369
2	.	3	,			가?
			,			,
				가?		

[]

-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상법 제369조제2항) 및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상법 제369조제3항)은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상대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지분율을 산정해야 함
- 증권거래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에 의해 특별이해관계자주, 금융회사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주 등도 의결권이 없으나,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제한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 사례 7 : 양도담보 목적의 주식취득

[]

가
?

[]

- 채무 상환시 주식을 다시 매각하겠다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의결권이 발생하는 등 외부적 효과는 동일함
- 따라서 일반 주식취득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어 여타 신고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

◎ 사례 8 : 합작회사 설립 이후 특수관계인 간 주식 승계

[]

A	B	가 50:50	C	,	B
100%		D	C가		?

[]

- 합작회사가 A사, B사 모두의 계열사가 되는 경우 합작회사의 실체는 비록 하나이나, 개념적으로는 A사의 계열회사와 B사의 계열회사 지위로 구분 가능
- 이에 따라 B사의 자회사 D 지분을 합작회사가 취득할 경우 B사와 합작회사는 계열회사이므로 계열사간 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신고의무가 없음
- 그러나 합작회사가 A사의 계열회사 지위로서 B사의 자회사 D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2의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간이신고 대상도 아님

◎ 사례 9 : 자사의 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1.	A	가	B	100%			
			30%,	10	70%		30%
				가			
2.			A			A	30%
			10	70%			

[]

A1: 매각 후 B사에 대한 A사의 지분은 100%에서 30%로 줄어들게 되지만 B사가 A사의 계열회사로 존속하게 되어(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인이 30%를 보유하고 있어 계열회사에 해당) 지분 매각에 대한 신고의무는 없음

A2: B사의 주주는 개인들로만 구성되게 되므로 A사 집단으로부터 계열제외 문제만 발생되므로 신고의무는 없음. (다만, 홍길동이 다른 회사의 동일인 이거나 임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 있음)

◎ 사례 10 : 동시 또는 순차적 주식취득의 경우

[]

A1	A2	甲	,	B1	B2	乙	,
					3,000		
B1				B2			50
A1	B1		,	A2가 B2			
				?(
)			

[]

- A1사의 B1사 주식취득과 A2사의 B2사 주식취득이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 B1사와 B2의 각각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만으로 판단
- 그러나 A1사의 B1사 주식취득과 A2사의 B2사 주식취득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별개로 하거나 계약시점이 같은 날짜가 아니더라도 전체를 일련의 기업결합으로 보아 모두 신고함이 바람직함
- 즉, B1과 B2는 기업결합 전에는 乙그룹에 속해 있다가 기업결합 후에는 甲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소속은 변경될 수 있고, 기업결합 전후로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B1과 B2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업결합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
- 다만, 주식취득이 있더라도 상대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B1사와 B2사가 기업결합 전후 계속하여 乙그룹 계열회사 관계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함께 신고할 경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 등이 가능

◎ 사례 11 : 주식취득으로 새로 편입된 계열사의 보유 지분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A	B	C	10%	(,	A, B, C
가)				
A 가 B	50%		, A	B	C
20%		,	A	B	50%
C	20%				?

[]

- A사가 B사의 주식 50%를 취득하면서 B사는 A사의 계열로 편입되므로 A의 기업집단은 C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2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 원칙적으로 회사가 2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A사가 B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주된 거래행위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주된 거래행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시 거래의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도 갈음할 수 있음

* 기업결합 신고요령[공정위 고시 제 2021-24호, 2021.12.30.(시행 2021.12.30.)]

III.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차.규정

◎ 사례 12 : 유상증자 시 타사의 지분 미취득으로 인한 신고의무 발생

[]

A, B	3,000	C
300	.	,
A, B 가	C	.
A, B 가 C	15%, 85%	.
B 가	C	A
	A 가 C	20%
, A	가	?

[]

- 위 사례의 경우 A사와 C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충족하므로 비상장사의 주식을 20% 이상 취득한 A사에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

- 특히 결합당사회사가 대규모회사로서 본 건 주식취득이 사전신고 대상인 경우 A사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여러 회사와 동시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취득 일정 등에 주의해야함

◎ 사례 13 : 주식취득 후 임원겸임 시 신고의무 발생

[]

A 가 B

A . A 가

B

?

A

(A

B

300

)

[]

- A사는 대규모회사로서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음
- 다만, 임원겸임 내용이 주식취득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시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일한 경우 본 건 임원겸임에 대한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또한, 주식취득에 대한 심사 시 A사가 B사에 대한 지배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임원겸임에 대한 별도의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특히 계열회사 간 임원겸임은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식취득의 결과 B사가 A사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 본 건 임원겸임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아님

나. 합 병

◎ 사례 1 : 계열회사 간 합병

[]

A B
가?

가.

[]

- 계열회사간의 합병일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나, 간이신고대상[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에 해당
 - 동 신고요령 「별표3」의 합병신고서 및 첨부자료(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별표 6」간이신고대상 기업 결합의 보조자료)를 제출
 - 신고시기는 일반적인 기업결합의 사전 · 사후신고 기준에 따라 2조 원 미만은 사후신고, 2조 원 이상은 사전신고 대상이 됨

◎ 사례 2 : 합병 당사회사의 계열회사 범위

[]

A B A

A B

?

,

,

[]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2항 및 제9조 제5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요건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은 해당 기업결합 전후에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당해 사례에서 A의 경우 존속회사로서 합병 전후로 계열관계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전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함
 -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뿐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계열회사까지 모두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산정
- 그러나 B사의 경우 합병을 통해 통상적으로 종전 상위 계열관계에서 분리되므로 자신과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만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함

◎ 사례 3 : 합병 신고대상 여부

[]

	B, C가	가?
A:	3,000 , . , ,	A
B:	20 . . A	
C:	가 , . B 80% 20 . B가 C 100% .	

[]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와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발생. 이 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
- 회사 A, B, C의 관계를 살펴보면, 위 회사들은 모두 계열회사 관계임
 - A회사의 대주주인 甲이 기업집단의 “동일인”에 해당하고, 동일인 甲이 B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A회사와 B회사는 계열회사 관계
 - B회사가 C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B, C도 계열회사 관계
- A, B, C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산하면 3,000억 원이 넘으므로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 다만 B회사와 C회사는 “계열회사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간이 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임
 -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요령 「별표3」의 합병신고서 및 첨부자료(합병 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회사의 등기부등본 사본 1부, 「별표 6」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를 제출

◎ 사례 4 : 주식취득과 합병신고의 진행

[]

A	A 甲	B 甲	.	B 가 A 甲	A 가	,
	2		3	?	甲	

[]

- 주식취득의 경우 기업집단내 소속회사간의 주식취득에 불과하므로 B사가 甲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신고의무가 없음. 다만, 계열회사간의 영업 양수나 합병의 경우 법상 명확히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B사가 甲사를 합병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

◎ 사례 5 : 분할후 합병의 경우

[]

A B , C , D	C D 가	.
		?

[]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상법 제 5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은 기업결합 신고가 불필요하나,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분할합병은 신고대상임

다. 영업양수

◎ 사례 1 : 영업양수의 개념

[]

?

[]

- 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임차”, “경영의 수임”,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 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를 통칭하여 “영업 양수”라고 규정
- 이 중 원래 의미의 영업양수는 “영리 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 객관적 의미의 영업(재산)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임
 - 이전의 목적이 되는 “영업”이란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거래선, 영업상 비밀, 노하우 같은 경영조직의 사실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일체로서, 양수인은 이를 이용하여 양도인과 같은 영업상 지위를 취득함
- 영업양수와 합병과의 차이
 - 합병에서 양도회사의 재산권 등 권리의무 관계는 포괄승계 되는 것이나 영업 양수에서는 개별 재산이 별개로 이전됨
 - 영업양수로 인해 당사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으나, 합병 당사회사의 일방은 소멸(청산절차 없이 당연 소멸)
 - 영업양수로 인해 양도회사의 주주 지위에 변동이 없으나, 합병으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존속회사(신설회사)의 주주가 됨

- 영업양도의 대가는 금전의 형태로 양도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합병의 대가가 주식 형태로 주주에게 귀속됨
- 영업양수는 영업의 일부 양수가 있으나 합병에는 일부 합병이 없음
- 영업양수도의 당사자는 회사 이외에 자연인도 될 수 있으나 합병의 당사자는 회사임

○ 영업양수와 자산양수의 구별

- 영업양수란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데 비해 자산인수는 개별 자산이나 부채가 이전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구별됨
- 공정거래법은 영업양수(기업결합)의 실질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산양수의 경우도 신고대상에 포함(“영업용 고정자산의 양수”)

○ 영업양수와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 수임”과 구별

- 영업양수는 “영업의 소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영업의 소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경영관계에서만 변동을 가져오는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수임”과는 구별됨
-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관심 대상은 당사회사 간 영업이 결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이지, 거래되는 영업의 소유권 이전 여부가 아니므로 양수뿐만 아니라 임대차나 경영수임의 경우도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음

◎ 사례 2 : 영업의 일부 양수 시 신고 여부

[]

3,000	A 가	300	B
.		50	
12 (18 ()
가?			

[]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음
 - 여기서 ‘영업’ 이란 회사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이며, 사례에서는 ‘영업’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임
- 영업의 일부 양수라고 할 때, 신고의무가 있는 주요 부분의 양수인지는 “① 양수 부분이 독립된 사업 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 ②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인지 검토해야 함
 - ①과 ②는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사안의 경우 영업양수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양수 부분이 독립된 사업 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었거나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한다면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할 것임

◎ 사례 3 : 양수도 대상이 되는 사업부분의 비중이 작은 경우

[]

A	B	가 A, B	
< >		(:)	
			(%)
A	3,000	300,000	1.0
B		500,000	0.6

< >
, 「 」
가?

[]

-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영업의 주요부분의 양수 임차” 라 함은,
 - 양수 또는 임차한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서,
 -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 B사가 양수받을 갑 사업부분은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양수금액이 A사 매출액의 1.0%에 불과하여 10%미만이고 양수금액이 30억 원으로 50억 원 미만이므로 “영업의 주요부분의 양수 · 임차”에 해당되지 않음

◎ 사례 4 : 영업양수에 있어 금지되는 이행행위의 범위

[]

2

가

가? , 30

가?

[]

- 「기업결합 신고요령」 III.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마. 에서는,
 -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영업양수도계약은 상법상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이며,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는 쌍무계약이므로 영업양수도 계약의 이행행위에는 대금지급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대규모회사가 영업양수도 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후 30일 이내에는 영업양수도 대금을 전액 지급하여야하는 안 됨

◎ 사례 5 : 영업양수 중 ‘경영의 수임’

[]

“

”

,

가?

[]

-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 · 양수회사 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경영수임의 영업양수금액은 기업결합당사회사 간 계약에 의해 책정된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 사례 6 : 부동산의 양수

[]

B A 가 () ?

[]

- 단순히 건물을 사고파는 것이라면 경쟁과 무관하므로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만약 A, B사 모두 방송업을 하는데 방송용 장비까지 포함해서 매도한 것이라면 방송을 위한 영업용고정자산으로 방송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필요
- 또한 A사가 일부는 사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었는데, B사가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수한 경우, 임대업을 위한 영업용고정자산이므로 신고필요
- A사는 건설업자로서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하는 B사에 판매하는 경우, A, B의 영업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단순히 건물을 사고파는 것에 불과하여 영업용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신고가 불필요

[]

B	A
,	.
()	?

[]

- 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영업양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이르며,
 - 구체적으로 “영업”이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영업용고정자산”은 영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계, 설비 등의 유형재산과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무형재산을 의미함
- 동 건의 거래대상은 B사가 A사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토지 및 건축물)로, A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인 대규모유통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용고정자산이 아닌 단순한 “부동산”에 불과함
 - 즉, 동 건은 단순 고정자산(부동산)의 양수에 불과하므로 기업결합 신고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음
- 영업양수 대상인 영업용자산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동 건 매입 건물은 단순 부동산으로서 상대회사가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설비 등을 포함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라. 회사설립

◎ 사례 1 : 합작회사 설립의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

[]

50:50	3,000 , 300 C 가?	A , B 가
-------	------------------------	---------

[]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새로운 회사설립의 참여에 있어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최다출자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 당해 사례에서 A사와 B사는 각각 C사의 50%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출자자 이므로 A사, B사 각각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함
 - 이 경우 A사는 B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B사는 A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기업 결합 신고를 해야 함

[]

• A , B , C	3,000 , 1,000 , 180	가?
• A , B , C)	40%, 30%, 30%	D (300

[]

- 위 경우는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 최다출자자인 A사가 신고의무가 있는 회사(신고대상회사)이며 이 경우 상대회사는 B사와 C사임

- C사의 경우는 자산총액이 180억 원으로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모인 300억 원을
 - C사의 경우는 자산총액이 180억 원으로 기업결합 신고의무 규모인 300억 원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 「기업결합 신고요령」 III. 5. 다.는 신고회사(A사)와 특정상대회사(B사)가 시행령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을 충족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C사도 기업결합 상대회사에 해당하며 신고서에 기입하여야 함

[]

가	가?
• A , B , C 가 50:30:20	
• B C	

[]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5항은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음
- 당해 사례에서 B사와 C사는 특수관계인이므로 합작회사의 주식은 A사가 50%, (B사+C사)가 50% 보유하는 것으로 A사, (B사+C사)가 각각 최다출자자가 되어 A사, B사, C사 모두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음
- 이 경우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 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대리인이 신고대리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함

[]

			가?
•	A :	3,000	
	,	B 50%	.
•	B :	300	
•	C : A, B		300
•	:	B B 25%	
•	A (50%),	(25%), C (25%)	D

[]

- 외국법인 A가 내국법인 B에 50%를 출자하고 있으므로 A와 B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것으로 보이며, 개인 갑은 내국법인 B의 임원(등기임원만 해당됨)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따라서 A와 갑은 모두 B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호 특수관계인임
 -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A, 갑, C 중 A와 갑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 회사설립에서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는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1조 제5항)하여야 하므로 A와 갑이 75% 출자자로서 둘 다 본건 기업결합의 최다출자자임
- 따라서 A와 갑이 C를 상대회사로 하여 공동으로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함(법 제11조 제11항)

[]

A 가 40%, B 가 30%, C 가 30%
가? , B C

[]

- 신설회사 설립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신고함(법 제11조 제1항 5호)
 -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함(법 제11조 제5항)
- 이 경우 B사와 C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60% 지분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되고 두 회사가 모두 신고의무대상회사가 됨
 - 다만,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를 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11항)

<

:

5

>

- | |
|--|
| ○ 롯데와 히카리인쇄간 자금지원, 이면계약 등의 증거는 없으나 다음의 사실을 고려할 경우 롯데가 히카리인쇄와 함께 해태음료의 경영을 공동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 - 롯데가 투자목적 이상으로 국내에서의 해태음료 인수 작업에 적극적으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롯데가 자신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 호텔롯데가 인수자금 조달을 보장, 계약보증금 전액(246억원)을 롯데가 평촌개발에 대여, 클라리온과의 협상 결렬후 11월 15일까지 약 한달동안 인수 협상에 적극 참여 |
| - 컨소시엄 구성원 중 롯데 외에는 국내 음료사업 기반 및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롯데의 경영 참여가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히카리인쇄의 주요 거래처중 하나가 일본 롯데(거래 의존도 : 11.5%)이므로 히카리인쇄가 롯데에 대해 우호적일 가능성성이 큼 |
| - 자금지원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히카리인쇄는 재무상태가 취약하고, 히카리인쇄 사장의 개인신용으로 차입한다고 하나 증거자료 제출이 불충분 |
| ○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11조제3호를 적용하여 히카리인쇄를 (주)호텔롯데 및 롯데산업(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

[]

?

- A, B, C 70:25:5
- A
- B, C 3,000 , 300

[]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가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합작회사 설립에 참여한 회사 중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최다출자자가 아닌 경우 대부분 심사에서 지배력 미형성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 따라서 합작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기업결합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다만, 비영리법인의 회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

◎ 사례 2 : 합작회사 설립시 신고 의무

[]

가?
• A B 80:20
• A 3,000 , B 180 B 가 B' 2 2,000
• B 10%

[]

- 회사설립참여시 주식소유비율과 관계없이 최다출자자(A사)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년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가 있음
 - 동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가 있을 경우 사전신고(회사설립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기업결합완료일 전까지)를 하여야 함
 - 사전신고를 한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주금 납입을 할 수 없으며, 사후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주금납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
- 참고로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 심사시 검토 사항이므로 기업결합신고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 정도와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함

◎ 사례 3 : 단독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여부

[]

12	100	20
.	.	2
가	100%	
가	가?	

[]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1호의 주식소유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20% 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및 최다 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
- 또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11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합작회사 설립 시에는 최다출자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
 - 다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순수하게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회사설립은 기업결합이 아니며 동법 제11조에 의한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음

◎ 사례 4 : 현물출자로 합작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A 가	(50%)	45%
			가?	

[]

- 기업결합은 회사 간의 결합이므로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합작회사 간의 기업 결합도 신고 대상임
 - 법 제2조(정의) 제7호에서도 주식은 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취득뿐만 아니라 지분 취득의 경우도 신고해야 함
- 또한 지분 취득의 대가로 현금을 출자하는지, 현물을 출자하는지와 관계 없이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신고해야 함
- 따라서 A사가 국내에 신설되는 회사의 지분을 현물 출자하여 지분을 인수하고, 이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면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기업 결합신고를 하여야 함

◎ 사례 5 : 외국기업의 한국 내 신규법인 설립

[]

10

2

25%

가 가?

[]

- 국내시장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일방이 3,000억 원, 타방이 300억 원)에 해당되면 누구든지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함께 지분을 출자한 투자자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신고할 필요 없음
 - 그러나 개인투자자가 특정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고, 특정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기준인 규모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함

◎ 사례 6 : 기존 사업 범위 내의 합작회사 설립

[]

				가
			?	
•	A	,		B
• A	B		3,000	, 300
• A	B	50:50	C	.
	A	/	B	
		.		

[]

- 합작회사의 향후 업무영역은 기업결합 신고의무 유무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사업구조와 범위 내에서 합작회사가 설립되어도 신고의무는 발생
- 당해 사례에서 A사와 B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300억 원 이상이므로 최다출자자인 A사, B사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함

◎ 사례 7 : 조합이 최다출자자인 회사설립

[]

A, B, C	50%, 30%, 20%		
.		A	(
)	, B	C	?

[]

- 원칙적으로 회사설립의 경우 최다출자자가 기업결합신고의무가 있음. 그러나 「기업결합 신고요령」 III. 5.아.는 최다출자자가 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사안은 최다 출자자가 조합(조합이 다른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으로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므로 A사는 신고의무가 없고 B사와 C사도 신고의무가 없음

◎ 사례 8 : 외국회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시 신고요건

[]

A	B	가 50:50	C
.	A B	3,000	, 300
A	300		가
?			

[]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신고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충족 외에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신고대상으로 규정
 - 그러나, 「기업결합 신고요령」(고시) III. 5. 바.는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 설립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입법취지는 외국회사가 포함된 기업

결합의 경우, 그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경우는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법상 신고의무가 부과하지 않는 것이므로, 합작회사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임

- 따라서, 당사회사 중 일방이 외국회사이고 그 합작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이 300억 미만인 경우 국내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법상 신고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입법취지에 부합

◎ 사례 9 : 공동 최다출자자에서 단독 최다출자자로의 변경

[]

		가	?
• A , B , C	34.5%, 34.5%, 31%		
• A B		34.5%	
• A	3,000	,	300

[]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은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다음의 두 가지를 규정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위의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또한, 시행령 제18조 제5항은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
- 당해 사례에서 A사는 합작회사의 주식을 이미 20% 이상 취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마. PEF설립

◎ 사례 1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참여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

[]

A	(350)	B	()	C	(180)
PEF										
PEF	180			A	가		(GP)	10%		
B, C		(LP)			70%, 20%					가?

[]

-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은 기업결합 유형 중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에 해당하므로 최다출자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어야 할 것이나,
 - PEF의 경우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무한책임사원(GP)이 하므로, 최다출자자가 유한책임사원(B)이라 하더라도 무한책임사원(A)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음 (「기업결합 신고요령」 III. 5. 마.)
 - 또한, 무한책임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중 최다출자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음
 - 따라서 A운용사가 기업결합신고회사로서 B, C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함

※ C사는 자산 또는 매출액규모가 300억 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공동으로 참여하는 B사가 기업결합 규모요건을 충족하므로 기업결합신고 시에는 두 회사를 모두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함
(「기업결합 신고요령」 III. 5. 다. 참조)

◎ 사례 2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시 신고방법 및 계열사 편입 여부

[]

PEF 가
가?

PEF PEF 가?

[]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은 「기업결합 신고요령」 II. 2. 라.에 따라 간이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간이신고 양식에 따라 신고함
 - 설립된 PEF는 무한책임사원의 업무 집행 및 책임 하에 운영되므로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사원(GP)의 계열사로 판단함
 - 다만, 지분참여자들간의 별도의 규정에 따라 PEF를 무한책임사원 외 특정 회사의 계열사로 지정한다면, 그 규정에 따라 PEF의 계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사례 3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시 신고시기 및 기업결합일

[]

PEF (PEF) 가
가 가 가?
PEF 가
가?

[]

- PEF 설립에 대규모회사가 참여했다면 사전신고로 해야 하고, 이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가능한 날은 설립에 참여하기로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기업결합일 이전임
 - 다만, PEF 설립(출자)에 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신고의무발생 시점)을 요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전결규정상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날’을 신고의무 발생일로 봄
- 시행령 제17조 제5호에서 기업결합일을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PEF 설립 시 자금투입시기가 지분 참여자 각각 다르다면, 기업결합일은 다른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최초 자금이 투입된 시점을 기업결합일로 판단함
- 따라서, 위 경우의 PEF 설립 사전신고는 당사회사간 협약체결일부터 지분 참여자 중 최초 자금투입시점 이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사례 4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주식취득

[]

(PEF)	가
PEF	가 가?

[]

- PEF 설립 당시에는 유한책임사원에게는 신고의무가 없지만 설립 후 PEF 지분 취득에 관하여서는 이를 면제하거나 간이신고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유한책임 사원으로 PEF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20% 이상 취득한다면 일반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함

◎ 사례 5:

[]

甲	A가 20%, B가 10%, C가 50%, D가 20%	.
B가	C	.
?		

[]

- 유한책임사원 B사(신고회사)와 설립된 甲사모투자전문회사(상대회사)의 자산규모가 기업결합 신고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B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15% 또는 20% 이상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여야 함

◎ 사례 6

[]

甲 ()가	乙 ()
15%	20%
?	

[]

- 사모투자전문회사 자체의 자산규모외에도 업무집행사원 겸 무한책임사원의 자산, 무한책임사원의 계열회사들의 자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기존 투자 대상회사들 중 지분관계, 겸임관계, 거래관계 등의 관점에서 실질적 지배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회사들의 자산을 합산하여야 함

◎ 사례 7

[]

甲 가

가

?

[]

- 甲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이 기존에 15% 또는 20% 미만인 상태라면 당해 취득으로 15% 또는 20%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함
- 반면, 기존에 15% 또는 2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라면 추가취득에 따른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기존에 15% 또는 20% 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경우였다면 당해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사례 8

[]

2

?

[]

- 원칙적으로 공동 무한책임사원들 중 출자지분율이 높은 사원의 계열 회사로 봄
- 다만, 출자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겸임관계,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참여사원들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고려함

◎ 사례 9

[]

가

?

[]

- 법 시행령 제 17조 제5호의 규정대로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날을 기업결합일로 봄이 타당
- 따라서 대규모회사가 참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의 경우 배정받은 지분에 대한 최초 납입 이전에 회사설립 신고를 하면 됨

◎ 사례10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사원 지위 변경

[]

甲 가

가

?

[]

- 신고회사의 사원 지위 변경 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에 해당하므로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주식취득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취득으로 보아 신고를 해야 함
 - 다만, 주식취득 비율은 PEF 설립 당시의 지분율이 아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원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함

바. 임원겸임

◎ 사례 1 : 임원의 정의

[]

9	1	2	11	1	3	‘	’
‘	’						

가?

[]

- 공정거래법은 제2조제6호에서 “임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임원이란 이사 · 대표이사 ·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함
 - 이 규정에서 “이에 준하는 자”란 이사, 대표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사회에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 회사의 비등기 임원은 비록 이사의 직함은 갖고 있으나, 인사관리 · 기획관리 등의 특정분야 업무에 종사할 뿐(즉, 종업원의 역할을 수행할 뿐)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비등기 임원들을 공정거래법상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함

◎ 사례 2 : 기업집단 내 “인사교류”가 임원겸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가	가?
---	---	---	----

[]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임원겸임” 중 계열회사간의 임원겸임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집단 내 인사교류에 임원겸임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은 아님

◎ 사례 3 :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대규모회사에의 임원 겸임

[]

2

2

?

[]

-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규모회사외의 자가 자신의 임직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시키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기업결합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
- 또한,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임원겸임의 경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대규모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규정됨
- 따라서, 대규모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법상 신고의무가 없음

◎ 사례 4 : 파견 또는 휴직형식으로 출자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가	20%	가
'	'	가?

[]

- 임원겸임을 규제하는 주요 이유는 ①임원겸임을 함으로써 겸임회사와 피겸임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독과점가격의 형성을 피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②공동행위보다 더 결속력이 강한 기업결합을 통해 가격, 수량 등에 관한 공동행위 금지의 원칙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파견 또는 휴직의 형식으로 출자회사의 임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시장지배력의 강화나 공동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임원겸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다만, 출자회사가 계열회사일 경우 임원겸임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사례 5 : 이미 겸임하고 있는 임원에 대한 신고의무

[]

가	2	가
		가?

[]

- 임원겸임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므로,
 - 대규모회사가 된 이후의 추가 임원겸임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되고, 그 이전의 임원겸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음

◎ 사례 6 : 임원겸임으로 인한 계열회사 편입

[]

	가	?		
• A		B	29.9%	2
• A	B	5	2	,
1	가			
• 1	가	B		

[]

-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가 하는 임원 겸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토록 하고 있고, 다만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
- 그러나 이 때 신고의무가 제외되는 계열사간 임원겸임이란 해당 겸임행위 이전에 이미 계열사 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의미
 - 이는 이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지배력이 미치고 있으므로 임원겸임에 따라 해당 회사의 지배관계가 바뀌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당해 사례와 같이 임원겸임의 결과 계열회사가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지배관계가 변동되므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됨

◎ 사례 7 : 임원겸임이 아닌 임원선임권

[]

	,	가	가?
(,)	

[]

-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임원겸임’에 대해 임직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즉, 임원선임권의 행사로서 임원겸임을 시키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되며 임원겸임이 아니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사례 8 : 임원겸임 신고기간(30일)이 경과되기 전에 임원겸임을 해소한 경우

[]

		가,
30	,	
	가	가?

[]

- 임원겸임이 발생하였다가 신고 기한 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임원겸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임원겸임의 발생 및 해소 사실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사례 9 : 외국법인의 국내법인 임원겸임

[]

A	2	, B	2
. A		B	
A			가?
,			가?

[]

- 공정거래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임원겸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경우 사내이사든 사외이사든 불문
 - 또한,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 또는 국내기업이 외국회사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신고요건에 별도의 요건(국내매출액 300억 원)이 필요하지만,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기업결합 하는 경우는 통상의 국내기업 간 기업 결합과 신고요건이 동일함
- 따라서 해외법인인 A기업이 국내기업인 B기업의 임원겸임을 할 경우 임원겸임 신고를 하여야 함
 - 이 때, 이의 근거는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임

◎ 사례 10 : 직원이 자의적으로 타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

[]

A	A	B	가	가?
,	,	,	,	,

[]

- 공정거래법 제9조 및 제11조는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임원겸임은 지배관계를 떠나 임원겸임행위가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직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회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든 법원등기부상의 임원으로 등기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함
 - 다만 직원이 개인적으로 겸임한 것으로 회사가 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는 등 기업결합심사를 면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시 참작사유로서 고려될 수는 있음

바. 임원겸임

◎ 사례 11 :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타 회사의 사외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

'	542	8	가	,
,	,	,	,	,
'	542	8	'	?

[]

-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I. 2. 라.에 의하면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신고 시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는 상장회사만을 의미하므로, 상법 규정에 따라서 선임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인 경우만 신고 제외 대상이므로 비상장회사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함

3. 기업결합 심사

가. 지배관계

◎ 사례 1 : 기업결합에서의 지배관계가 인정되면 양사가 기업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

가	,	가?
,	4	
		가
,		
, 20%		
가	,	
.		

[]

- 현행 「기업결합심사기준」에서의 지배관계 판단기준과 시행령 상 기업집단의 범위 판단기준은 유사한 점들이 있음
 - 예컨대, 주식취득의 경우 「기업결합심사기준」 상 지배관계 판단기준은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지배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데 동 지배관계가 형성되면 기업집단의 범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큼
 - 또한, 기업집단의 범위 요건 중 일차적인 것은 30%이상 최대주주인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기업집단의 범위 요건은 주주권외에도 자금대차, 채무보증, 거래 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관계 판단기준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음
- 현행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기업결합심사에서의 지배관계란 완전한 지배뿐만 아니라 거부권 등을 가지는 부분적인 지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결정하는 판단기준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나. 경쟁제한성 판단

◎ 사례 1 : 기업결합의 유형

[]

. . .

가?

[]

-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기업결합을 수평·수직·혼합결합으로 분류함
 - 수평형 기업결합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으로, 동종업계 또는 대체재 시장 등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 시 수평결합으로 심사함.
예) 반도체 생산업체 간의 임원겸임, 동종 철강제조업체간의 합병
 - 수직형 기업결합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임
예) 휴대폰제조업체와 통신업체의 합병, 백화점업체의 의류업체 주식취득
 - 혼합형 기업결합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을 의미
예) 자동차제조업체의 조선업체 주식취득
- 기업결합당사회사 또는 그 계열사의 영위업종, 생산품목에 따라 수평·수직 결합, 수직·혼합결합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음

◎ 사례 2 : 기업결합심사 시 안전지대 적용 여부

[]

() .

. 가?

[]

- 「기업결합심사기준」은 HHI* 기준에 따른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결합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규정(일반심사)

- 이때 수평결합·수직결합·혼합결합인지에 따라 안전지대가 상이함

* 각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허핀달·허쉬만 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 결합 후 집중도가 특정 수준에 해당하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는 영역

- 수평결합일 경우(시장지배사업자로 추정될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에는 결합 당사회사의 관련시장의 시장집중도(HHI)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경쟁 제한성 없음으로 추정

① HHI가 1,200(저집중시장) 미만

② $1,200 \leq HHI(\text{중집중시장}) < 2,500$ 이고, 결합후 $\Delta HHI(\text{증가분}) < 250$

③ $2,500 \leq HHI(\text{고집중시장})$ 이고, 결합 후 $\Delta HHI(\text{증가분}) < 150$

- 또한, 수직·혼합결합에 있어서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경쟁제한성 없다고 추정 가능

①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 이고,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 사례 3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판단기준

[]

,	가	가?
	()
가	(3,000
1	50%	, 10%
3	가 75%)
,	가	1, 2
가	25%)가
	()가
3	2	
5%		

[]

- 공정거래법 제9조 제3항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더라도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
- 「기업결합심사기준」은 경쟁제한성 판단요건으로 시장집중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기업결합심사기준 VII-1-가. 시장집중도)
 - 즉,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심사기준 VII-1-가(안전지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이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결합당사회사의 단독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등

다. 시정조치

◎ 사례 1 : 시정조치의 사례 및 시정조치불복 절차

[]

가?

[]

- 해당 기업이 기업결합신고를 하면 공정위는 동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적인지 여부를 심사함
 - 심사를 통해 동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 동법 제14조에 의거 해당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하거나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이 중 어떤 내용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의 성격이나 정도 등에 따라 다르며,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게 됨

- 따라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조치의 내용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게 됨
- 이러한 시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해당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공정위 처분 불복의 소도 제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복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정위 시정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정조치에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고발 등의 제재수단이 사용됨

◎ 사례 2 : 시정조치에 따른 의무의 이행 주체

[]

, 가)가	(, 가?
가?		

[]

-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시정조치는 양 당사자의 기업결합으로 형성·강화·유지되는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자 결합 당사회사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당사자인 기업결합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이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또한, 기업결합 심사 시에는 결합 당사자를 하나의 결합체(Merged entity)로 취급(법 제9조제3항제1호 본문)하여 시장집중도,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조치함

- *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평가, 경쟁제한성판단, 시정조치는 결합체 차원에서 이루어짐
-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신고회사에게 시장점유율 축소 및 설비 및 자산매각 토록 시정조치하기도 하는데, 이는 신고회사가 상대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어 신고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도 시정조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임

◎ 사례 4 : 시정조치 후 권리구제절차

[]

1.		가
	()	가 가?
2.		가 가?
3.	30	가?
	가?	
4.	88 ,	10 가 가?
	?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9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일단 불복의 소를 제기한 후에는 다른 소송절차와 동일함
 - 따라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음.

- 법 제9조(기업결합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복의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2. 현재까지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서울고법에 제소한 사례는 코오롱의 고합 영업 양수도(2001, 소취하),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 건(2003, 소취하),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2006, 패소), 이랜드리테일의 한국까르프(주) 주식취득(2006, 패소) 건이 있으며,
- 대법원 확정 사례는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 건(2004),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 케미컬즈 컴퍼니 주식취득 건(2006) 2건임
3. 불복의 소 “소송물”에 대한 판단 또한 일반원칙에 따름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자체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소송물이 되나,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후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 가능함
 - 즉,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이 소송물이 될 것이며 재결이 원처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처분”이 소송물이 될 것임
4. 법 제88조에서 규정된 시정권고는 위원회 상정 전의 절차로서, 법위반사실에 대한 협의가 인정되므로 시정권고와 같은 처분을 피심인이 수락할 것인지에 대한 통지임
- 시정권고를 수락한다면 위원회에 상정할 필요없이 시정권고가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불수락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시정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고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시정조치 등을 명하게 됨

◎ 사례 5 : 글로벌 기업결합에서의 시정조치

[]

M&A

?

[]

- 각국 경쟁당국은 나름의 신고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각자의 관할권 내에서 독립적으로 경쟁제한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거나 금지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또한 특정 경쟁당국에서 해당 기업결합이 자국 시장에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고, 이를 해소할만한 적절한 시정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금지 조치를 부과할 경우 다른 경쟁당국이 해당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하였더라도 해당 기업결합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봄이 타당
 - 한편, 동일한 기업결합에 대해 각 경쟁당국이 시정조치의 내용이나 강도에 있어 상이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합당사 기업은 모든 경쟁당국의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각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 판단 결과 및 시정조치간의 상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제 공조 심사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4. 기업결합 관련 제재 수단

◎ 사례 1 : 과태료 부과 여부

[]

가?

[]

-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가 1)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신고 한 경우, 3)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130조[과태료]제1항제1호 참조)
 - 과태료의 금액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됨
- 과태료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별로 기업결합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에 따라 사후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400만 원 ~ 1,200만 원, 사전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 1,500만 원~4,000만 원까지 부과되며, 허위로 신고한 자는 7,000만 원이 부과됨
- 그 외 신고기한 도과기간, 위반횟수, 기타 각종·감경사유에 따라 금액이 결정됨

◎ 사례 2 :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

가?

[]

- 기업결합의 이행강제금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를 위반하여 제14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기준범위 내에서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부과됨(법 제16조[이행강제금] 참조)
 - 예를 들어 주식취득 및 새로운 회사 설립 참여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액 합계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 1일당 부과됨
 - 합병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교부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액의 합계액에,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양수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 1일당 부과됨. 임원겸임의 경우는 매1일 200 만원 범위 내에서 부과됨

◎ 사례 3 : 별칙 여부

[]

, 가 가?

[]

- 법 제14조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자는 법 125조 [별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III. 주요 시정조치 사례

1.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22.2.21. 의결)

(가) 기업결합 내용

-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1일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나’)의 보통주 약 64%를 취득(이하 ‘이 건 결합’)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 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

(나) 시장획정

- 항공 여객운송은 서비스의 특성상 그 자체로 지역적 요소를 내포하는바, 상품시장 획정과 지역시장 획정을 구분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검토
 - (국제선 항공여객운송 관련)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당사회사 등이 중복으로 운항하는 총 65개의 노선별 시장(왕복)으로 획정
 - 소비자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자의 공급 대체성 등 고려 시 다른 노선으로의 대체가 어려운 점, 그간 다수의 외국 항공사 간 결합사례를 통해 출발-도착 도시 간 시장획정이 확립된 점 등
 - 다만, 인접공항은 대체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예: 인천-도쿄, 김포-도쿄는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함)
 - 운항시간 8시간 이상의 장거리 노선의 경우 경유 노선이 대체수단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1회 경유편을 직항편에 포함하여 획정
 - (국내선 항공여객운송 관련)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당사회사 등이 중복으로 운항하는 총 22개의 노선별 시장(편도)으로 획정
 - 국제선 항공여객운송 관련 시장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자의 공급대체성 등과 다수의 해외 선례에 기반
 - 내륙 노선의 경우 고속철도(KTX, SRT)가 대체수단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속철도편을 포함한 노선별 여객운송 시장으로 획정
 - 총 이동시간, 운임, 운항빈도,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고속철도편은 항공편에 대한 대체재로서 가능

(다) 경쟁제한성 검토

- 결합 후 각 노선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집중 현황, 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 경쟁사업자와의 공급능력 격차, 운임 인상 여력, 소비자 설문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신규 항공사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1)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업 관련 검토

-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부터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한 점을 감안하여 2019년 경쟁 상황을 기준으로 시장상황을 판단함
-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외에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진에어, 아시아나의 계열사인 에어 부산, 에어서울의 점유율을 함께 고려

- 국제선 항공여객 운송업의 각 노선별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 결과, 65개의 중복노선 중 26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제노선

구분	중복노선 개수	경쟁 제한 노선 개수	경쟁 제한성이 있는 노선명
미주	5개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①뉴욕, ②로스엔젤레스, ③시애틀, ④샌프란시스코, ⑤호놀룰루
유럽	6개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①바르셀로나, ②프랑크푸르트, ③런던, ④파리, ⑤로마, ⑥이스탄불
중국	18개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①장자제, ②시안, ③선전 · 부산 ↔ ④칭다오, ⑤베이징
일본	12개	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 나고야
동남아	19개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①프놈펜, ②팔라우, ③푸켓, ④자카르타 · 부산 ↔ ⑤세부, ⑥다낭
기타	5개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 ①시드니, ②괌 · 부산 ↔ ③괌
총계	65개	26개	-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26개 노선에서 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진다고 판단
- (시장 집중도) 당사회사는 결합 후 우리나라 국제선 전체 약 48.9%를 차지하며, 노선별로는 당사회사 독점 운항 노선이 10개, 60% 이상인 노선이 29개 등 다수 노선에서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음

- (수요 대체성 및 구매 전환 가능성) 당사회사 간 수요 대체성이 높은 반면, 소비자들이 다른 항공사로 구매를 전환하기는 쉽지 않음
 - 소비자들은 당사회사를 매우 밀접한 대체 수단으로 인식하며, 대표 국적항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매우 높고 운항 시간대, 운임, 각종 제공 서비스가 유사하여 당사회사 간 수요 대체성이 매우 높음
 - 이에 비해, 외국 항공사 등 다른 경쟁 항공사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고, 제공 서비스, 마일리지제도, 운항 시간대, 운항 횟수 등에 차이가 있어 대체성이 낮고 구매 전환도 쉽지 않음
- (노선별 신규진입 가능성 및 경쟁상황) 인천·김해공항 및 다수 해외 공항에서 슬롯이 부족하고, 운수권 보유 필요성 등 경쟁 항공사가 신규로 진입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음
- (공급능력 격차) 당사회사는 경쟁사 대비 국내 공항 슬롯, 운수권, 게이트나 체크인카운터 등 공항시설 접근성, 네트워크 접근성 등 생산 능력 측면에서도 매우 우월하여 당사회사가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들이 이를 적기에 견제하기 어려움
- (경제분석 결과) 다수의 노선에서 당사회사가 결합 후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평균 기격 인상률 (북미) 26.3%, 유럽 11.5%, (중국) 7.6%, (동남아) 4.9%, (일본) 2.9%
- (운임인상 여력) 당사회사의 실제 운임은 국토교통부 승인운임(상한)에 비해 크게 낮아(30~50% 수준) 결합 후 운임 인상 여력이 충분

2) 국내선 항공여객운송업 관련 검토

- 당사회사가 중복으로 운항하는 국내선 여객 노선은 22개이며, 이중 14개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보았음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노선

구분	종복노선 개수	경쟁 제한 노선 개수	경쟁 제한성 있는 노선명
제주 노선	16개	14개	· 제주 ↔ ①청주, ②김포, ③진주, ④광주, ⑤부산, ⑥여수, ⑦울산
내륙 노선	6개	0개	-
총계	22개	14개	-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14개 노선에서 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진다고 판단
- (시장 집중도) 당사회사는 결합 후 우리나라 국내선 제주노선의 전체 약 62.0%를 차지하며, 노선별로는 당사회사 독점 운항 노선이 6개이며, 대구↔제주 노선을 제외한 모든 제주노선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게 됨
 - (수요 대체성 및 구매 전환 가능성)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당사회사 간 수요 대체성이 높은 반면, 소비자들이 다른 항공사로 구매를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소비자들은 당사회사를 매우 밀접한 대체 수단으로 인식하며, 대표 국적항공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매우 높고 운항 시간대, 운임, 각종 제공 서비스가 유사하여 당사회사 간 수요 대체성이 매우 높음
 - 이에 비해, 저가 항공사 등 다른 경쟁 항공사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가 낮고, 제공 서비스, 마일리지제도, 운항 시간대, 운항 횟수 등에 차이가 있어 대체성이 낮고 구매 전환도 쉽지 않음
 - (노선별 신규진입 가능성 및 경쟁상황) 제주공항에서의 슬롯이 매우 부족하고, 외국 항공사는 국내선을 취항할 수 없어 경쟁 항공사가 신규로 진입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음
 - (공급능력 격차) 당사회사는 경쟁사 대비 제주·김해공항 슬롯, 보유 기재, 조종사 등 승무원 수, 자금력 등 생산능력 측면에서도 매우 우월 하여 당사회사가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들이 이를 적기에 견제하기 어려움

- (경제분석 결과) 제주 노선 대부분에서 당사회사가 결합 후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평균 가격 인상을 (제주 출발) 12.4%, (제주 도착) 9.9%
- 한편, 제주 노선 중에서 제주-대구 노선은 대구공항을 주공항으로 하는 티웨이항공이 결합 전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점, 당사회사 점유율이 비교적 높지 않은 점(50% 미만) 등 고려 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 내륙-내륙 노선(6개)의 경우 KTX, SRT 등 고속철도가 충분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고속철도 포함 시 당사회사의 여객 점유율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라) 예외 인정 여부

-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이 건 결합이 법상 예외 인정 사유인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회생 불가 항변)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
- (지급불능 여부) 아시아나는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영업실적 개선 추이 등 고려 시 가까운 시일 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아시아나의 재무구조 악화가 장기간 지속된 점은 인정되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화물운송 부문의 호조세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음
 -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될 경우, 여객 운송 수요의 강한 반등이 예상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의 영업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
- (자산 퇴출 여부) 아시아나의 도산을 가정하여도 관련 노선에 신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은 운항편 추가 투입을 위해 아시아나의 항공기, 정비, 조업 시설 등을 인수하여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
- (대체 인수자 부재 여부) 아시아나는 대한항공보다 덜 경쟁 제한적인 대체 인수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아시아나는 현대산업개발과의 매각계약이 무산된 이후 규모가 큰 일부 기업집단에만 인수 의사를 타진하였으므로, 대한항공 외에 아시아나 인수 의사가 있는 대체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마) 시정조치 내용

-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 운송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할 필요
 - * 구조적 조치의 이행이 완료되면 행태적 조치의 이행 의무 또한 종료됨
-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경쟁 제한성 해소에 효과적이지 못한 국내선 6개 시장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만 부과
- 시정조치의 이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로 하였으며,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이행기간을 규정
- (구조적 조치) 결합 이전 경쟁상황의 유지 및 향후 경쟁 촉진을 위해 5개 당사회사에 신규진입의 주요 제약 요소인 국내외 공항의 슬롯과 운수권 등의 개방조치를 부과(공항시설 관련 협조의무 포함)
 - * (국제선) 인천공항, 김해공항, (국내선)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해외공항의 경우 해당 공항의 혼잡도, 신규진입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
- (행태적 조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시장 불확실성,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상황 등 고려 시 단기간 내 모든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병행 부과
 - 각 노선에 대한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하물 등 서비스품질 유지, 항공마일리지 불리하게 변경 금지 등
- 한편, 벽지 노선으로 수요가 부족한 국내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10년간 동일한 행태적 조치만 부과
 - * 제주-울산, 제주-진주, 제주-여수 각각 양방향

2. KT스카이라이프 등 5개 방송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건('21.9.29.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KT스카이라이프는 2020년 10월 13일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1월 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
- 이후, KT스카이라이프의 계열회사인 KT스튜디오지니가 2021년 7월 8일 현대미디어의 주식취득에 대한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KT스카이라이프로 부터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2021년 7월 1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8VSB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시장,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 방송과고 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유선전화시장 등 10개 시장으로 획정
- 지리적시장: 상품시장별로 각각의 방송구역과 전국시장으로 획정
 -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 각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이 방송구역별로 상이한 점, 요금수준 및 채널구성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실제 경쟁상황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대HCN의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 시장으로 획정
 - (그 외 상품시장) 가격이나 상품 구성 등이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가격 책정 및 경영의사 결정 등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사업 운영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규제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시장으로 획정

(다) 기업결합 유형

- 동 기업결합은 KT계열(방송, 유무선통신)과 현대HCN계열(SO, 콘텐츠, 유선통신)간 결합으로 수평결합 외에 수직·혼합결합이 함께 발생
- 유료방송시장은 IPTV(KT), 위성방송(KTSKY)과 현대HCN의 디지털케이블 TV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 수평결합이 발생
- 현대HCN이 제공하는 8VSB방송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별개의 시장으로 혼합결합이 발생
-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시장에서는 수평결합(skyTV / 현대미디어)외에 방송사업자가 콘텐츠를 구매하므로 수직결합이 발생
-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시장은 채널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간 수평결합 (KT,KTSKY / HCN)외에 홈쇼핑사업자(KT하이텔)에게 채널을 판매하므로 수직결합이 발생
-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통신망 보유 및 서비스하는 KT, 재판매하는 KTSKY와 자가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HCN이 직접 경쟁하므로 수평결합이 발생

유형	관련시장	KT 계열				HCN 계열	
		KT	KTSKY	skyTV	KTH	HCN	현대 미디어
수평	① 8개 방송구역별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	○	×	×	○	×
혼합	② 8개 방송구역별 8VSB 유료방송시장	×	×	×	×	○	×
수평, 수직	③ 방송채널사용사업(PP)시장	×	×	○	×	×	○
수평	④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	○	×	×	○	×
수평	⑤ 지상파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	○	○	×	×	○	×
수평	⑥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	○	×	×	○	×
수직	⑦ 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	×	×	×	○	×	×
수평	⑧ 방송광고시장	○	○	○	×	○	○
수평	⑨ 초고속인터넷시장	○	○	×	×	○	×
수평	⑩ 유선전화시장	○	×	×	×	○	×

(라) 경쟁제한성 판단

※ 유료방송시장 외 다른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하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수평 및 혼합결합에 대해 기술

(1)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 본 건 결합 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합산 시장점율 확대 및 경쟁 압력의 약화, 경쟁자들과의 생산능력 격차 확대, UPP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 8개 구역별로 결합에 따른 합산 점유율이 59.8% ~ 73.0%으로 1위가 되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35.4%p ~ 59.3%p까지 확대
 -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 계열과 결합함으로써 해당구역에서 케이블 TV 요금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
 - 설문 결과에서도 현대HCN의 디지털 케이블TV 요금 인상(10%)시 KT계열 방송(IPTV+위성방송)으로의 전환율이 43.6%로 가장 크게 나옴
 - 결합상품 구성 등 서비스 제공능력 격차가 커져 IPTV 사업자인 SKB, LGU+등의 경쟁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
- UPP 분석결과,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2) 8VSB 유료방송시장

-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 증대, UPP분석결과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
 - 8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로 독점사업자
 -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인상 등을 억제해 오던 잠재적 경쟁자로서 결합 시 잠재적 경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

- 모든 방송구역에서 인접시장인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이 증가(60.6% → 68.9%)^{*}함에 따라 8VSB상품의 채널당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183.3원→90.7원)지고 있음을 확인
 - * 서울관악권역 경쟁사업자 점유율과 8VSB 채널당 단가 변동 추이 분석 결과
- 해당 방송권역에서 100% 독점사업자임에도 채널단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KT등 경쟁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에 직면해 왔음을 의미
 - 본 결합으로 KT계열이 모든 방송플랫폼(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구비 함에 따라 결합상품 제공능력 등 시장진입에 더욱 많은 비용 소요
 - UPP분석결과, 양(+)의 값이 도출되어 가격인상 유인 존재
 - 8VSB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피해* 소지 및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예상
 - * 디지털케이블TV(DCTV)와 8VSB간 가격할인 등 차등 적용 사례
 - 약정할인 차등 : DCTV 10%(1년)~30%(3년) VS. 8VSB (약정할인 없음)
 - 결합할인 차등 : DCTV + 초고속인터넷 15%할인 VS. 8VSB 10%할인
 - * DCTV와 8VSB간 채널단가 차이 : DCTV(52.9원) < 8VSB(90.7원) → 8VSB 가입자에게 더 높은 실질요금 부과
 - * DCTV와 8VSB상품의 요금(무약정) 비교 : DCTV(실버형 22,000원) VS. 8VSB(훼밀리 플러스형 8,800원)

(마) 시정조치: 행태적 조치(2024. 12. 31.까지)

주요 시정조치 내용

- | |
|--------------------------------|
| ①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
| ②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
| ③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
| ④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
| ⑤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
| ⑥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
| ⑦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 |

3.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 등 4개 배달앱 사업자의 주식취득 건 ('21.2.2.의결)

(가) 기업결합 내용

- 국내 2위 배달앱(요기요)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이하 DH라 한다)가 국내 1위 배달앱(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하 우형이라 한다)의 주식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2019년 12월 13일 체결하고, 2019년 12월 30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배달앱 시장) 배달앱 서비스의 차별화된 기능 및 효용, 소비자와 음식점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구매행태 등을 고려하여 배달앱 시장으로 획정

- (기능 및 효능) 다양한 음식점 정보·이용후기·편리한 결제·쿠폰 할인·맛집 배달 등의 특화된 기능은 직접 전화나 프랜차이즈 자체 주문서비스와는 구별됨

- (소비자 측면) 각종 설문조사 결과 기능적 편의성 때문에 직접 전화 방식을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배달앱 이용률 및 지속 이용 의사가 높게 나타남

* 배달앱 이용률 : 16년 40.3% → 19년 76.4%, 지속 이용 의사 90.6%

** 임계매출감소 분석 결과 쿠폰할인 5~10% 감소시 실제가격탄력성이 임계가격탄력성 보다 낮아 배달앱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

- (음식점 측면 대체가능성) 음식점들은 매출증대 효과가 큰 배달앱에 광고비의 85.9%를 지출하고, 전단지 등 다른 광고수단의 지출비중을 줄이는 경향

* 임계매출감소 분석 결과 수수료 5% 인상시 실제마진율이 임계마진율보다 낮아 배달앱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

- (음식 배달대행시장) 갓 조리된 음식 배달이라는 특성. 배달지역 및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하여 일반 물류 서비스와 별도로 음식 배달대행시장으로 획정

- (공유주방 시장) 매장 시설 외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임대와 별도로 공유주방 시장으로 획정

□ 지역시장

- (배달앱 시장) 배달앱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가 없고, 광고·마케팅·수수료 정책 등이 자체로 전국 단위로 결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전국 시장으로 획정
- (음식 배달대행시장) 당사회사의 서비스 지역 및 결합의 효과가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고려하여 서울·인천·경기 32개 시·군·구 지역 전체로 획정
- (공유주방 시장) 당사회사의 서비스 지역 및 사업자간 경쟁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 지역으로 획정

(다) 경쟁제한성 검토

가. 수평형 결합 : 배달앱 시장

□ 시장집중도 : 경쟁제한성 추정요건 총족*

-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2019년도 거래금액 기준 99.15%로 1위이고,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가 98.66%p로서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의 25% 이상
* ① CR1 50% 이상 또는 CR3 75% 이상, ② 1위 사업자, ③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
- 양면 플랫폼임을 감안하여 소비자 규모, 음식점 규모, 수수료 매출액 등의 다른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결합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80% 이상

* 월별 순 접속자 기준 : 89.55%, 등록 음식점수 기준 : 82%, 수수료 매출액 기준 : 99.34%

□ 단독의 경쟁제한성 판단

- (구매전환가능성) 배달의민족-요기요 이용자들은 서로를 차선의 선택으로 이용하므로 상호 간 수요대체성과 전환가능성이 높음
 - (소비자 측면) 배달앱간 구매전환율 배민→요기요 81%, 요기요→배민 77.5%
 - * 양 배달앱간 서비스의 유사성이 가장 높고, 멀티호밍 이용자 중 91.4%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이용
- (음식점 측면) 주문수가 많은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멀티호밍하는 정도가 높고, 그 변동 가능성도 낮음

* 음식점들은 평균 2.2개의 배달앱을 이용, 87.1%가 주배달앱 계속 이용

- (사업능력 격차) 결합당사회사의 단독행위시 적시에 대항할 경쟁자 부재
 - 2020년 6월경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쿠팡이츠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결합당사회사에게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명확

* 19년도 전국 거래금액 기준 점유율 0.32%, 20년 7월 서울·경기 일부 지역 점유율 9.5%
- (정보자산의 격차) 결합당사회사가 배달음식 주문 관련 압도적인 정보자산을 바탕으로 저비용·고효율의 마케팅을 통해 경쟁 사업자의 성장 저지 가능
- (가격인상 가능성) 배달의민족·요기요 간 직접 경쟁 감소로 인한 효과
 - (소비자 측면) 할인 경쟁을 하던 유력한 경쟁자 제거로 프로모션 감소 가능성
 - * GUPPI 분석 결과 값이 대부분 10%를 상회하여 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 존재
 - (음식점 측면) 음식점 모집 및 수수료 할인 경쟁 감소, 정률수수료 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한 실질적 수수료 가능성 있음
 - * 임계매출감소분석 결과 임계마진율보다 실제마진율이 낮아 배달의민족·요기요 동시 가격 인상가능성 존재, 이탈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가격 인상시 음식점 이탈율 최대 1.31%

나. 혼합형 결합

<배달앱 시장-음식 배달대행 시장(서울·인천·경기 32개 지역 전체)>

- 시장집중도 : 안전지대 미해당
 - (배달앱 시장) 2019년 12월 당사회사 합계 점유율이 거래금액 기준 약 96.99%, 주문건수 기준 96.71%에 달함
 - (음식 배달대행 시장) 2019년 12월 당사회사 합계 점유율이 배달처리건수 기준 19.7%로 3위이고, 가동 배달원 수 기준 점유율은 33.74%로 1위
- 경쟁제한성 : 우려 있음
 - (경쟁사업자 배제) 당사회사가 결합상품(주문증가+배달대행) 판매 등을 통해 자체 배달 모델을 급속도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음식점들의 주문증가 선택 가능성이 줄어들 경우 경쟁자 배제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진입장벽 증대) 충분한 규모로 자체배달 모델 확장시 배달앱 및 배달대행시장의 진입장벽이 증대하여 주문중개와 배달대행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사업 능력을 갖춘 사업자 외에 진입 곤란
- (잠재적 경쟁 저해) 당사회사가 모두 배달앱 및 배달대행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음

<배달앱 시장-공유주방 시장(서울 지역)>

□ 시장집중도 : 안전지대 미해당

- (공유주방 시장) 주요 6개 사업자가 총 41개의 공유주방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고, 입점 음식점들의 배달앱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추정

□ 경쟁제한성 : 우려 있음

- (잠재적 경쟁 저해) 신고회사는 현재 외국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동 결합이 없을 경우 국내 공유주방 진출 가능성성이 높음
- (경쟁사업자 배제) 배달앱상의 노출반경, 노출순위, 배달반경 조정 등을 통한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 우대시 경쟁 공유주방 및 그 입점 음식점 배제 가능성 존재
- (진입장벽 증대) 경쟁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에 대한 배달앱 서비스의 제공을 차단·차별할 경우 공유주방 시장 진입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

다.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 (비가격 경쟁제한) 본 건 결합으로 배달앱들이 기존에 음식점들의 매출증대를 위해 제공하던 마케팅 정보제공 항목을 줄이거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킬 가능성

(라) 시정조치 내용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당사회사가 주장하는 본 건 기업결합의 동반 상승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시정조치를 적절히 병과

- 구조적 조치 : DHK 지분 전부 매각 명령
 - DH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DH가 보유하고 있는 DHK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함
- * 다만, 동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태적 조치 : 매각 완료 시까지 현상 유지 명령
 - 매각대상인 ‘요기요’ 배달앱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DHK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행태적 조치의 주요 내용

- ① 요기요 및 당사 회사 다른 배달앱 간의 분리 · 독립 운영
- ② 음식점에게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 ③ 소비자에 대한 매월 전년 동월 이상의 혜택 금액 사용 및 차별 금지
- ④ 배달앱 연결 · 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 항목 등 변경 및 결합 당사 회사 계열 배달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명령
- ⑤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 조건 등의 불리한 변경 및 우형으로의 유도 금지
- ⑥ 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 금지 명령

4. 보레알리스와 디와이엠솔루션 간 주식취득 건 ('20.5.28. 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보레알리스(Borealis AG)는 디와이엠솔루션의 주식 90.52%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8년 10월 20일 체결하고 2018년 10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중압·고압·초고압 반도전 시장으로 획정

- 각 전압대별 반도전^{*}이 상호 대체되기 어렵고, 가격 수준이 다르며, 결합 당사 회사도 전압별로 반도전 제품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 전력 케이블의 도체(구리, 은)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 케이블의 오작동을 막는 물질

- 지리적 시장: 국내 시장으로 획정

- 디와이엠솔루션의 매출이 국내 및 중동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외 경쟁상황이 다르며, 전력 케이블 인증 절차가 복잡해 수요자가 새로운 제품으로 구매를 전환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수평형 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 고압 반도전 시장

- 시장집중도: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80~90%로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70~80%p로 법상 추정요건에 해당

- 단독효과: 우려 높음

- (고착화된 시장) 안전성을 중요시하는 전력케이블 사업자들이 겹중된 반도전 제품의 장기간 사용을 선호하고 제품 전환을 꺼리므로 시장이 고착화됨

- (구매 전환 곤란) 케이블 제조사들은 안전성 문제로 결합 당사회사 외의 반도전 제품을 선호하지 않고, 전력 케이블의 소재인 반도전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전환 곤란

□ 협조효과 : 우려 있음

- 실질적 경쟁사업자의 수가 4개 사에서 3개 사로 감소하게 되며, 당사회사는 수요자인 국내 전력 케이블사의 거래 정보 획득이 용이해짐
- 보레알리스는 반도전용 원재료를 경쟁 반도전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어 협조 유지가 용이

(2) 혼합형 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 초고압-고압 반도전 시장

- 시장집중도 : 보레알리스는 국내 초고압 반도전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에 이르는 사실상 독점사업자이며, 결합당사회사는 국내 고압 반도전 시장점유율 80~90%로 1위 사업자임
- 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 : 이 사건 결합이 없었다면 디와이엠솔루션이 독자적으로 초고압 반도전 시장에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
- (개발 노력) 디와이엠솔루션은 2002년 초고압인 345kV 반도전 제조 기술을 자체 개발했고, 현재 2건^{*}의 초고압 반도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 * 전력 케이블 제조사와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 ±500kV HVDC 전력 케이블 개발 국책 사업 등
 - (유통 가능성) 개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전력 케이블 제조사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개발에 성공하면 디와이엠솔루션의 초고압 반도전이 바로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다른 잠재적 경쟁자 부존재) 국내 전력 케이블 제조사들은 결합 당사회사 외에 초고압 반도전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는 의견

(라)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여부

-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세계 고압용·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사업자가 국내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품질문제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해외 반도전 사업자에 의하여 경쟁이 도입될 가능성 낮음
- 신규진입가능성: 안정성 테스트 및 외부 인증기관의 인증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신규진입자에게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마) 시정조치: 행태적 조치

- 국내 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수평결합과 국내 고압용 반도전-초고압용 반도전 시장 간 혼합결합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하여 시정조치 필요
 - 다만, 상대회사의 고압용 반도전 관련 국내매출액이 상대회사의 전체 매출액에 비하여 작은 수준인 점, 초고압용 반도전 시장의 잠재적 경쟁 저해 우려^{*}를 이유로 기업결합을 제한할 때는 조치 수준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행태적 조치를 부과

* 상대회사가 초고압용 반도전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을 뿐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지 않음

□ 고압 반도전 관련

- (제품 공급 의무) 결합 당사회사가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수요자들에게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해야 함
- (정보 공유 금지) 디와이엠솔루션은 수요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 가격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를 보레알리스와 공유해서는 안 됨

□ 초고압 반도전 관련

- (연구 개발 지원) 디와이엠솔루션은 시정명령일부터 5년간 또는 초고압 반도전의 개발이 성공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의 연구 개발 경력을 가진 인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연구를 지속해야 함

- (제품 공급 의무) 디와이엠솔루션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 과정에서 공동 개발 상대방에게 시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초고압 반도전 개발을 성공하면 상대방이 요청하는 물량을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해야 함
- (지식 재산권 제공 의무) 디와이엠솔루션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 성공 후 5년 내에 공동 개발 상대방 등이 요청할 경우 반도전 생산 관련 지식 재산권을 공동 개발 상대방 등에게 제공해야 함

5. 다나허 코퍼레이션의 GE 영업양수 건('20.2.24.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다나허 코퍼레이션(다나허)은 2019년 2월 25일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GE)로부터 바이오공정 제품 등을 생산하는 Biopharma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5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2개 바이오공정 제품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으로 획정

- 바이오공정 제품들은 공정 및 용도별로 구분되고 상호 대체가 어려우므로 결합당사회사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세포 배양 배지 시장 등 32개 바이오 공정 제품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 각각을 상품시장으로 획정

구분	부문	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생 물 공 정 분 야	업 스 트 립	세포 배양 및 마이크로 캐리어	세포 배양 배지	
			세포 배양 혈청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제품		일회용 배양기	일회용 로킹 배양기
				일회용 교반탱크 배양기
			일회용 혼합기	
			일회용 커넥터	
			일회용 전달장치	
			일회용 용기	
	다 운 스 트 립	바이오공정 여과	시스템	DFF 시스템
				TFF 시스템
		소모품	장비	TFF 장비
				DFF 소모품
				TFF 소모품
				중공섬유 카트리지 필터
				평판 카세트 필터
	크로마토 그래피	LPLC 스키드	통상의 스키드	
			일회용 스키드	
		LPLC 컬럼	통상의 컬럼	
			사전충전형 컬럼	
		LPLC 레진	친화성 레진	단백질 A 레진
				그 외 친화성 레진

			이온교환 레진	
			혼합모드 레진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기타 생명과 학 분야	실험실 여과	여과 매체	멤브레인 필터	
		일회용 기기/매체 캡슐		
		실험실 여과 액세서리		
	분자 특성 분석	비표지 분석 제품	(표면 플라스몬 공명 제품)	
	HCS	광각 기반 HCS		
		공초점 기반 HCS		
	현미경	첨단 도립 현미경 고해상도 현미경		

※ : 이 사건 상품시장

지리적시장: 세계시장으로 획정

- 바이오공정 제품은 운송에 따른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점, 판매가격 대비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개별 제품의 수·출입에 별도의 법·제도적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계시장으로 획정

(다) 시장집중도

-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시장, 세계 일회용 LPLC 스키드 시장, 세계 통상의 LPLC 컬럼 시장, 세계 친화성 레진 시장, 세계 이온 교환 레진 시장, 세계 혼합 모드 레진 시장, 세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시장, 세계 비표지 분석법 시장 등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이 법 제7조 제4항의 추정요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세계 단백질 A 레진 시장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나 다나허의 시장점유율이 0.1%에 불과하고 카네다의 제품을 도급받아 재판매하였으나 해당 도급계약이 2020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실질적 의미의 중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외 24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은 심사기준에 따른 안전지대이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등의 이유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시장		결합 후 점유율 (A)	2위 점유율 (B)	격차 [(A-B)/A]
부문	관련 제품			
세포 배양	マイクロキャリヤー	71.7	13.61	81.0
크로마토그래피	일회용 LPLC 스키드	87.4	8.05	90.8
	통상의 LPLC 컬럼	51.8	18.15	64.9
	친화성 레진 (단백질 A 레진 제외)	72.3	7.35	89.8
	이온교환 레진	57.2	12.55	78.1
	혼합모드 레진	69.7	24.5	64.8
	LPLC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50.9	24.7	51.5
분자특성 분석	비표지 분석 제품	62.4	12.5	80.0

(라) 경쟁제한성 판단

1)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 (단독효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 시장에서 가격인상, 중복제품 생산중단 등 단독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 8개 관련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9%~87.4%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26.2%p~79.4%p로 확대되어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
 - 바이오공정 제품의 주요 구매자인 제약사 등은 제품 구매 시 가격보다 제품의 기술수준 및 품질, 안정적 공급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이 있으며, 결합당사회사는 관련시장에서 동등한 수준의 제품력 및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유력사업자이므로 제품 간 수요대체가능성이 높음
 - 관련시장은 순위 변화가 거의 없는 고착화된 시장이고 시장집중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들이 단기간에 충분한 수준으로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매전환이 용이하지 아니함

□ (협조효과) 관련시장에서 실질적 경쟁사업자가 감소하는 측면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협조효과 발생 가능성은 낮음

- 바이오공정 제품은 일반적으로 표시가격이 아닌 수요자가 요구하는 견적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바, 수요자마다 신규 공장·제조설비 시공 또는 기존 공장·설비 확장 등의 사정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세부 견적내용을 달리 하므로 경쟁사 간 협조행위의 가능성은 극히 낮고 관련시장에서 공동 행위가 발생한 전력도 없음

2) 혼합결합의 경쟁제한성

□ (잠재적 경쟁의 저해 효과) 결합당사회사는 바이오공정 전 범위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바이오공정 제품은 유통경로 및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는 낮다고 판단

-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일방만이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에 타방이 새롭게 진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나 사업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가 없음
- 결합당사회사 중 일방이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에서 그 일방 또는 경쟁사업자들이 현재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타방의 진입가능성을 의식하여 제품가격을 책정하는 등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 결합당사회사를 잠재적 경쟁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머크 밀리포르, 씨모 피셔, 리플리젠, 코닝, 사토리어스 등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존재하는 바, 바이오공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들의 존재는 잠재적 경쟁 감소 우려를 낮춤

□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결합당사회사와 대등한 수준의 사업능력을 갖는 글로벌 사업자들이 존재하고, 공정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제품을 단품으로 선택하여 여러 제조사들의 제품을 조합하는 수요자들의 구매행태 및 입찰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구조의 특성상 결합판매 또는 끼워팔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는 낮다고 판단

- (진입장벽 증대 효과) 바이오공정 제품은 서로 다른 제조사 제품 간에도 상호 호환 및 대체가 가능하고, 제품 간 결합판매 및 끼워팔기도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 최소 자금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아니함

(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 (신규진입 가능성) 바이오공정 제품 제조업은 생명공학과 관련하여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부문이며, 수요자들이 가격보다 품질, 기술수준, 안정적 공급능력, 브랜드 평판 등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므로 신규 사업자가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수준으로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움
-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제조사가 각자 강세를 보이는 분야를 바탕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고착화된 시장이고,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연구소, 학교 등도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대량구매 등을 통한 가격인상 억제 효과가 중소 구매처까지 전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바) 시정조치: 구조적 조치

- 8개 바이오공정 및 기타 생명과학 제품과 관련하여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토록 함

6. 엘지유플러스-CJ헬로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방송·통신 사업자 간 기업결합 건('19.12.11. 및 '20.1.10. 의결)

(가) 기업결합 내용

-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의 주식 50%+1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2019년 2월 14일 체결하고 2019년 3월 15일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
-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3개사(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 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를 합병하는 계약 및 SK텔레콤이 티브로드노원 방송의 주식 55%를 취득하는 계약을 2019년 4월 26일 체결하고, 2019년 5월 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방송분야와 통신분야 별로 각각 관련 시장을 획정
 - (방송분야) 8VSB 유료방송시장,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 시장, 방송광고시장, 홈쇼핑 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으로 획정
 - * 8VSB(8-level vestigial sideband) 방식이란,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의 하나로 디지털 TV를 보유한 아날로그방송 가입자도 기존 아날로그 요금으로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신호만 변환하면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을 의미
 -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실제 구매전환 행태, 유사성에 대한 인식, 가입형태, VOD 이용 행태, 임계매출 감소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을 별개 시장으로 획정
 - (통신분야)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유선 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으로 각각 획정
- 지리적시장: 상품시장별로 각각의 방송구역과 전국시장으로 획정
 - (8VSB 유료방송시장 및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각각의 23개 방송구역으로 획정

- ①SO는 허가받은 방송구역을 넘어 다른 방송구역의 유료방송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이 제도적 ·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케이블TV 가입자들도 다른 방송구역으로 이주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송구역의 케이블TV상품으로 구매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각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이 방송구역 별로 상이하고 요금수준 및 채널구성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
- (그 외 상품시장) 지역적인 차별 없이 전국에 균질하게 제공되는 점, 가격책정 및 경영의사결정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소비자의 구매전환가능성 및 구매행태 등을 고려하여 전국시장으로 확정

(다) 경쟁제한성 검토

< LG유플러스 - CJ헬로 기업결합 건 >

※ 유료방송시장 외 다른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하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혼합결합에 대해 기술

□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혼합결합

- (시장집중도) 23개 8SVB 유료방송시장의 HH가 모두 5,000 이상이고, 22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HH가 2,500 이상으로 안전지대에 미해당
- (잠재적 경쟁저해 효과) ①CJ헬로는 LG유플러스를 8SVB 유료방송의 잠재적 경쟁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점, ②LG유플러스를 포함해 경쟁 사업자들의 존재가 CJ헬로의 가격 인상 행위를 억제해 온 점, ③실제로 CJ헬로가 23개 8SVB 케이블TV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사업자임에도 채널 수 축소 및 채널 단가인상 시 고객들이 인접 시장인 IPTV 등으로 이탈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감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감소할 경우 8SV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
- (진입장벽 증대 효과) 케이블 서비스 외에도 이동통신, IPTV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결합상품 제공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 (가격인상 유인) 본 건 결합으로 외부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압력이 약화될 경우 당사회사는 할인율 조정 및 인센티브 축소 등의 방법으로 8SVB 케이블 TV 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
- UPP 분석결과, 8SVB 유료방송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 또한, CJ헬로는 IPTV 등 인접 시장의 점유율이 낮거나 독점 SO 인접 지역의 경우 IPTV 등 점유율이 높거나 복수의 SO가 있는 지역에 비해 8VSB 케이블 TV에 대해 더 적은 채널을 편성하거나 더 높은 채널 단가를 책정하고 있었음
- (가격인상 능력)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을 통해 고가의 요금제 상품으로 신규 및 전환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 8SVB 케이블 TV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SK브로드밴드 - 티브로드 기업결합 건 >

※ 유료방송시장 외 다른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았으며, 이하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수평·혼합결합 기술

-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수평결합
- (시장집중도) 결합당사회사들이 1위인 5개 지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 후 2위와의 격차가 18.3% ~ 46.2%로 확대되고, 12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가 되는 등 경쟁제한성이 추정되거나 안전지대 미해당
- (단독효과) SO와 IPTV 사업자 간 결합으로 기존 이종 플랫폼 간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경쟁압력이 약화되어 당사회사는 디지털 케이블TV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채널 수를 축소 등 경쟁 제한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실제로 티브로드방송은 점유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적은 채널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실질 요금이 높음

- 본 건 결합으로 당사회사들은 23개 방송권역에서 지역 독점적인 디지털 케이블TV 플랫폼과 IPTV 플랫폼을 동시에 보유하는 유일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되면서 기존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서비스에 더해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제공능력까지 더할 경우 다양한 결합상품을 구성함으로써 생산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
- 또한, UPP 분석결과에서도 단기적으로 티브로드가 디지털 케이블TV에 대해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의 혼합결합

- (시장집중도) 23개 방송구역 8SVB 유료방송시장의 HHI가 5,000 이상이고, 23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HHI가 2,500 이상으로 안전지대에 미해당
 - (잠재적 경쟁저해 효과) ①티브로드 방송은 SK브로드밴드를 8SVB 유료방송의 잠재적 경쟁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점, ②SK브로드밴드를 포함해 경쟁 사업자들의 존재가 티브로드 방송의 가격 인상 행위를 억제해 온 점, ③실제 티브로드 방송이 23개 8SVB 케이블TV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사업자임에도 채널 수 축소 및 채널 단가인상 시 고객들이 인접 시장인 IPTV 등으로 이탈 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감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감소할 경우 8SV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
 - (진입장벽 증대 효과) 케이블 서비스 외에도 이동통신, IPTV 서비스 제공능력 및 결합상품 제공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 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 (가격인상 유인) 본 건 결합으로 외부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압력이 약화될 경우 당사회사는 할인율 조정 및 인센티브 축소 등의 방법으로 8SVB 케이블 TV 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
- UPP 분석결과, 8SVB 유료방송의 경우 장·단기적으로 가격 인상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

- (가격인상 능력) 8VSB 케이블TV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을 통해 고가의 요금제 상품으로 신규 및 전환 가입을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커 8SVB 케이블 TV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
- 또한, SK브로드밴드 및 티브로드 방송의 직·간접 유통망을 통해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통신 서비스 등과 결합판매 또는 기존 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제 상향판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라) 시정조치: 행태적 조치('22. 12. 31.까지)

행태적 조치의 주요 내용

구분	시정조치 내용
공통사항	①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② 8SV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8SVB 및 디지털 케이블TV 간 채널 격차 완화, 8SVB 케이블TV 포함 결합상품 출시방안 마련) ③ 케이블TV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감축 금지 ④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⑤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
LG유플러스	■ 시정조치 대상: 8VSB 케이블 TV
SK브로드밴드	■ 시정조치 대상: 8VSB 및 케이블 TV

7.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및 퀄컴 리버 홀딩스 비 브이의 엔엑스피 세미컨덕터 엔 브이의 영업양수 건('18.1.29.의결)

(가)

-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및 퀄컴 리버 홀딩스 비 브이는 2016년 10년 27일 엔엑스피 세미컨덕터 엔 브이(이하 'NXP')의 자산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

()

□ 상품시장: 베이스밴드 칩셋, NFC 칩, 보안요소 칩,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으로 획정

-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 이동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베이스밴드 칩셋은 모바일 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각종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반도체 등과 기능이 구별되므로 기타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와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NFC 칩 시장) NFC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등과 같이 무선통신 기술의 일종이나, 기타 무선통신 기술과는 통신거리, 사용전력, 보안성 등이 상이한 점, 기타 무선통신 기술에 비해 통신거리가 10cm 미만으로 가장 짧은 점, 전력 소모가 거의 없는 점, 보안성이 가장 높은 기술인 점 등을 고려하여 NFC 칩은 기타 무선통신 칩과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보안요소 칩 시장)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이 일반적인 모바일 결제에서는 보안요소 칩의 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으나, 교통카드 용도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은 거래정보가 무선통신을 통해 송수신되어서 보안요소 칩에 비해 보안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안요소 칩 시장을 호스트 카드 에뮬레이션과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 보안요소 칩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이므로 보안요소 칩과 보완적이고 대체가능성이 없는 점, 피심인 NXP 외의 모든 사업자들이 보안요소 칩과 보안요소 운영체제를 별도로 공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안요소 운영체제를 보안요소 칩과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지역 시장: 세계시장으로 확정

- 베이스밴드 칩셋, NFC 칩 및 보안요소 칩 등 반도체 제품은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점, 최종 반도체 가격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 해당 상품들의 공급업체 및 수요업체들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 국가별 운송을 제한하는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
- 보안요소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로서 전 세계적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운송비가 없다는 점, 주요 공급업체 및 수요업체들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 국가별 운송을 제한하는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

()

1)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

① 퀄컴: 아래 시장에서 모두 시장지배력 있음

- (CDMA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 CDMA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의 HHI는 5,816으로 고집중 시장으로 퀄컴은 CDMA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의 1위 사업자로 시장점유율은 70.2%이고, 경쟁사업자로는 Via Telecom이 유일하고, 퀄컴은 CDMA 표준필수특허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장기간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
- (WCDMA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 WCDMA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은 HHI가 3,654.5인 고집중 시장으로 WCDMA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의 1위 사업자는 MediaTek로 시장점유율은 47.8%이고, 2위 사업자인 Spreadtrum의 시장점유율은 34.7%이며, 퀄컴은 3위 사업자로 시장점유율은 12.4%임
-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 퀄컴은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의 56.4%를 점유한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인 MediaTek 20.4%, 3위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11.2%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HiSilicon, Spreadtrum, Intel 등 각각의 시장점유율이 5% 미만인 경쟁사업자가 존재

② NXP: 아래 시장에서 모두 시장지배력 있음

- (NFC 칩 시장) NFC 칩 시장은 HHI가 5,849인 고집중 시장으로 피심인 NXP는 NFC 칩 시장의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는 삼성전자, 3위 사업자는 Sony이며, Broadcom, MediaTek 등 기타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5% 미만임
- (보안요소 칩 시장) 보안요소 칩 시장은 HHI가 5,185인 고집중 시장으로 피심인 NXP는 보안요소 칩 시장의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는 Infineon, 3위 사업자는 Toshiba이며, STMicroelectronics, HiSilicon 등 기타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5% 미만임
-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 NXP는 보안요소 칩과 구분하여 보안요소 운영체제를 판매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점유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1개의 보안요소 칩에는 1개의 보안요소 운영체제가 탑재되므로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에서 피심인 NXP의 시장점유율도 보안요소 칩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과 동일하게 69.1% 정도일 것으로 추정

2)

- CDMA 표준필수특허 중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WCDMA의 경우 14,200개, LTE의 경우 22,700개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NFC 칩과 관련하여 672개의 특허를 보유(그 중 표준필수특허는 215개)하고 있음. 다만, 퀄컴은 보안요소 칩, 보안요소 운영체제와 관련된 특허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NXP

- NFC 칩과 관련하여 951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표준필수특허는 48개이며, NXP는 보안요소 칩과 관련하여 152개, 보안요소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21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3)

- (정책변경 가능성)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자신의 반도체 구매자에게 반도체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를 연계하면서 경쟁업체에게는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등 퀄컴은 자신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에 따라 피심인 NXP가 보유한 NFC 특허를 라이선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경쟁제한 효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 이 사건 기업결합 후 퀄컴이 자신의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피심인 NXP가 보유한 NFC 특허에 적용할 경우 NFC 칩 시장의 경쟁사업자 또는 잡재적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 라이선스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는 점
 - 퀄컴의 라이선스 정책 하에 구축된 퀄컴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특허 우산은 경쟁사업자의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잡재적 경쟁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기능하는 점
 - 피심인 NXP가 보유한 NFC 특허가 퀄컴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경우 퀄컴의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 향후 로열티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 (시장점유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 당사회사는 경쟁사업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
- (경쟁사업자의 대응능력 저해 요인) 결합 당사회사가 자신의 제품과 경쟁사업자 제품 간 호환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나 기술적 지원을 제공 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들은 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업체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경쟁사업자들이 비록 결합 당사 회사와 유사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더라도 MIFARE 기술이

탑재되지 못하면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음

- (결합상품 판매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결합 당사회사의 결합판매 전략이 상호호환성 저해행위 및 MIFARE 라이선스 거절행위와 결합될 경우 NFC 칩, 보안요소 칩 및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해당 시장에서 진입장벽이 증대될 우려가 있고, 이는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효과로 이어져 피심인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게 됨
 -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업자들의 투자유인을 감소시켜 베이스밴드 칩셋, NFC 칩, 보안요소 칩 및 보안요소 운영체제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바일 기기 시장의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라) 예외인정 가능성

- 효율성 증대효과 항변 : 인정곤란
 - 결합 당사회사가 언급한 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 효과는 반드시 이 사건 기업결합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결합 당사회사가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음
- 회생불가회사 항변 : 해당 없음

() : (,)

- 기업결합이 완료되기 전에 NXP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NFC 표준필수특허 및 NFC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도, 양도 또는 이전하도록 하고,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0년간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
- NFC 표준필수특허 및 NFC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도, 양도 또는

이전하기 전에 NFC 관련 제품의 제조사 또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해당 라이선스를 요청한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허여하도록 하고, 이렇게 허여된 권리는 NFC 표준필수특허 및 NFC 시스템 특허가 매도, 양도 또는 이전된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며, 피심인들이 NFC 표준필수특허 및 NFC 시스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NFC 표준필수특허 및 NFC 시스템 특허 매수인이 이러한 조건을 동의하는 경우에만 NFC 표준필수특허 및 NFC 시스템 특허를 매도, 양도 또는 이전하도록 함

- 웰컴이 NXP로부터 취득하는 NFC 특허 즉, NFC 표준필수특허 및 NFC 시스템 특허 외의 NFC 특허에 대해서는 웰컴이 보유하는 한 특허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NFC 관련 제품 제조사 또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를 허여하도록 함
- 웰컴이 보유하고 있던 NFC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NFC 관련 제품 제조사 또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게 FRAND 조건으로 허여하도록 하고, NFC 특허에 대해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NFC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먼저 체결하도록 하거나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시정명령일로부터 8년 간 금지함
- 시정명령일로부터 8년 간 제품 간 상호호환성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3자의 제품과의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함
 - ① 제품 연동을 위해 필요한 문서, 명령어 등의 정보 일체, 제품 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버그를 수정하는데 필요한 지원 및 제품 연동과 관련된 기술적 지침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적시에 제공
 - ② 베이스밴드 칩셋에 NFC 관련 제품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는 경우 이 기능이 제3자가 제공하는 NFC 관련 제품에 간섭하지 않도록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
 - ③ 제품성능 향상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심인들의 제품과 제3자의 제품 간 연동과 관련해 제3자의 제품의 성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금지

- 시정명령일로부터 8년 간 NFC 관련 제품 제조사 또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의 MIFARE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요청에 대해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에 존재하는 NXP의 MIFARE 라이선스와 적어도 동등한 수준으로 허여하여야 하며, NFC 관련 제품 제조사 또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에 존재하는 MIFARE 라이선스의 주요 상업적 조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함

※ 쿨컴은 2018. 7. 26. 엔엑스피와의 자산 양수계약을 해지하고, 2018. 8. 10. 위원회에 엔엑스피의 주식 취득 및 자산 양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철회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직권취소함(2018. 11. 5.)

8. 린데 및 프렉스에어의 합병 건('18.10.5.의결)

(가) 기업결합 내용

- 글로벌 산업용가스 회사들인 피심인 린데 아게(이하 “Linde” 라 함) 및 프렉스에어 아이엔씨(이하 “Praxair” 라 함)는 2017. 6. 1. 역삼각 합병 및 주식 교환공개매수를 통해 피심인 린데 피엘씨(Linde plc)를 지주회사로 하여 합병하기로 계약하고, 2017. 8. 14.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함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산업용가스) 가스의 종류 및 공급 방식에 따라 ‘산소 토니지 시장’, ‘산소 별크 시장’, ‘질소 토니지 시장’, ‘질소 별크 시장’ 및 ‘아르곤 별크(토니지 포함) 시장’^{*}으로 시장을 획정함

* 아르곤의 경우 대부분 별크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르곤 토니지 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지 않음

<산업용가스 공급 방식>

- **토니지 공급 방식:** 대용량의 가스를 파이프라인(Pipe-line) 또는 수요처 부지 또는 그 인접 지역에 설치된 전용 플랜트(On-site)로부터 기체 형태로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식임.
- **별크 공급 방식:** 별크 공급 방식은 기체 형태로 생산된 가스를 액화 한 후 이를 탱크 트레일러 또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고객의 장소에 설치된 저저장탱크로 운송하는 공급 방식임.

- (엑시머 레이저가스) 희귀가스 혼합물 중 엑시머 레이저* 용도로 사용되는 혼합물(불활성 희귀가스 혼합물, 불소 희귀가스 혼합물, 염화수소 희귀가스 혼합물)을 하나의 시장인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으로 획정함

* 엑시머 레이저란 자외선 영역의 빛을 고출력으로 발진하는 레이저를 말하며, 가스 혼합물을 봉입하여 발진시키는 가스레이저의 일종임

- (헬륨) 헬륨 공급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헬륨 도매업 시장과 헬륨 소매업 시장으로 획정함
 - * 헬륨공급원 → 도매업자 → ISO 컨테이너(헬륨을 액체 상태로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특수 용기) → 각 국의 개별 소매업자 → 최종 소비자

□ 지역 시장

- (산업용가스) 산소, 질소, 아르곤의 경우 국내 수요자들은 국내 산업용 가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찰 등을 통해 산업용 가스 공급업자를 선정하므로 국내시장으로 획정
 - 또한, 토니지의 경우 공급 방식의 특성상 수출입이 불가능하고, 벌크의 경우에도 산업용 가스의 낮은 공급 단가로 인하여 수출입에 따른 경제성이 없음
 - * 산소, 질소, 아르곤 벌크 공급 방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반경 약 300km 범위 내에서만 경제성이 있음[벌크 공급 가격: 산소(약 100원~110원/kg), 질소(약 110원~150원/kg)]
- (엑시머 레이저가스) 수입 비중이 높고, 공급 가격 대비 운송비*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시장으로 획정
 - * 엑시머 레이저 가스 운송 비용은 제품 가격의 약 1.6 ~ 2% 수준에 불과함
- (헬륨) 헬륨 도매업의 경우 사업자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세계 시장으로 획정하고, 헬륨 소매업은 통상 개별 국가 내의 충전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내시장으로 획정

(다) 경쟁제한성 검토

1)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 (시장 집중도)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6.8%이고,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42.8%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며,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3.6%p로, 법 제7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추정요건에 해당함

□ (경쟁 제한 가능성)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 행위 가능성도 증가함

○ 최근 결합 당사회사가 신규 취득한 질소 토너지 프로젝트의 규모가 2016년 전체 생산능력의 약 30.5%에 달하여 향후 결합 당사회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산업용가스 제조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ASU(Air Separation Unit)* 플랜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500억 원 ~ 1,500억 원의 비용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음

* ASU: 압축된 공기를 액화점 근처까지 냉각한 후 극저온 분별 증류를 통해 산소, 질소, 아르곤 등의 산업용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함

○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사실상 3개로 줄어들고, 결합 당사회사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에서 경쟁 사업자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국내 산소 토너지 시장’의 경우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26.6%로 2위 사업자에 불과하여 경쟁 제한 우려가 없으므로 이하 생략함

2) 국내 산소, 질소 및 아르곤 벌크 시장

□ (시장 집중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산소 벌크(40.1%), 아르곤 벌크(41.8%) 시장에서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하고, 질소 벌크 시장에서도 상당한 점유율(37.2%)로 1위 사업자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의 우려가 존재함

□ (경쟁 제한 가능성)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 행위 가능성도 증가하게 됨

○ 주요 경쟁 사업자들의 벌크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결합 당사회사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더라도 경쟁 사업자들이 적시에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주요 경쟁 사업자인 Praxair의 경쟁 압력이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제거됨으로써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사실상 3개로 줄어들고, 결합 당사회사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에서 경쟁 사업자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음

3) 세계 액시머 레이저 가스 시장

- (시장 집중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점유율이 63.4%(Linde 52%, Praxair 11.4%)로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함
 - * 국내 시장에서도 Linde 25.9%, Praxair 26.6%로 합산 점유율이 52.5%에 달함
- (경쟁 제한 가능성)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 행위 가능성도 증가함
-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63.4%에 해당하여 단독으로 가격 인상이 가능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됨
- Praxair의 경쟁 압력이 이 사건 기업결합을 통해 제거됨으로써 결합 당사회사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경쟁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모두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음

4)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

- (시장 집중도)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42.6%로 1위이고, 2위 업체인 Air Products와의 점유율의 차이가 21.6%p에 달하는 등 경쟁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함

- (경쟁 제한 가능성)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 행위 가능성도 증가하게 됨
 -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 당사회사는 규모가 큰 다양한 헬륨 공급 원을 확보하게 되고, 미국 BLM^{*} 관련 헬륨 정제 능력의 약 60%를 보유하는 등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됨
 - * BLM[미국 토지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시스템은 미국 텍사스 주에 위치한 헬륨 저장 시설로 미국 정부는 일정량의 천연 헬륨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입찰을 통해 헬륨 재고량을 민간에 매각하고 있음(세계 헬륨 공급 능력의 약 17.7%를 차지)
 - 또한, 헬륨 자원의 희소성, 최대 20년에 이르는 헬륨 조달 계약 기간, 헬륨 생산량의 80~100%에 달하는 의무 인수 비율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헬륨 도매업 시장에의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음
 - 기업결합 후 관련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사실상 3개로 줄어들고, 결합 당사회사와의 점유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는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아짐

※ 한편, '국내 헬륨 소매업 시장'의 경우 결합 당사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30.7%(Praxair: 27.5%, Linde: 3.2%)로 2위 사업자에 불과하여 경쟁 제한성이 없음

(라) 시정조치 내용

- (산업용가스) 국내 산소, 질소 및 아르곤 각각의 토니지 및 벌크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 중인 Linde 또는 Praxair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토록 함
- (엑시머 레이저가스) 엑시머 레이저 가스 개발, 제조, 판매와 관련하여 미국 뉴저지에 보유하고 있는 Linde의 자산 또는 국내 보유의 Praxair 자산 중 일방의 자산 일체를 매각토록 함
- (헬륨 도매업) 헬륨 도매업과 관련하여 Linde 및 Praxair가 보유한 다음과 같은 헬륨 자산을 매각토록 함

- **(Linde)** Otis 정제소, 미국 토지관리국(BLM)과 체결한 저장 계약에 따른 권리, 헬륨 공급원들(Sources)과 체결한 6개의 헬륨 공급 계약 및 Linde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
- **(Praxair)** PGNiG(폴란드 헬륨제조업체)와 체결한 헬륨 공급 계약, Linde와 체결한 백투백 계약 및 Praxair가 확보한 헬륨 공급 물량의 일부
- 최소 106개의 ISO 컨테이너

9. 씨제이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취득 건('18.1.22.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주)씨제이헬로비전은 하나방송(주)의 빌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6년 12월 6일 체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기업결합 건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2017년 7월 12월 공정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협의를 요청

(나) 시장획정

상품시장: 유료방송 시장으로 획정

* 유료방송 시장은 방송 사업자가 가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를 포함하는 시장임

-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 모두 다채널 유료 방송 플랫폼으로 기능, 가격 및 상품 구성과 소비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소비행태 등을 감안할 때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지리적시장: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으로 획정

- 결합 당사회사가 함께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으로 획정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System Operator)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 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SO, 위성방송 사업자 및 IPTV 사업자들은 SO의 방송구역 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

(다) 시장집중도

-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본 건 기업결합으로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53.63%가 되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21.98%p로 더욱 확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

- *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 결합 후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고, 결합 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이며, 결합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결합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

사업자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 , %)
CJ헬로비전 (케이블방송)	224,295	38.91
하나방송 (케이블방송)	84,875	14.72
당사회사 합계	309,170	53.63
KT (IPTV+위성방송)	*****	**
SK브로드밴드 (IPTV)	*****	**
LG U+ (IPTV)	*****	**
합 계	576,493	100.0

(라) 경쟁제한성 판단

- (단독효과) 본 건 기업결합으로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장 큰 플랫폼인 케이블방송에서의 경쟁이 소멸하게 되어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을 가지게 된다고 판단
- SO간 경쟁이 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 간 가입자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요금할인, 보조금 및 경품 등 포함) 유인도 상당 부분 감소 내지 제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높음
 - 실제 씨제이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독점적으로 케이블TV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구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 수신료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모든 상품을 정액으로 판매하는 IPTV 사업자와 달리 SO는 약관 요금 범위 내에서 자체 할인율을 책정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IPTV와 케이블TV 간의 요금 격차(1.7배~3.75배)를 축소시킬 가능성성이 높음
- 더불어 본 건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가 유료방송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채널 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소비자 선호 채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저가형 상품에서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우려가 있음

(마)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 (신규진입 가능성) SO는 방송법에 따른 허가와 소유지분 및 방송구역 제한 등의 엄격한 규제가 있으며,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력과 설비 투자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 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음
- (인접시장의 존재) PC 등을 통해 VOD 형태로 방송 프로그램을 감상하는 OTT(Over-The-Top) 서비스는 지상파 채널방송과 주요 PP 채널방송 등을 주로 제공하는 유료방송과는 기능 및 효용이 달라 아직까지는 유효한 경쟁 압력으로 보기 어려움

(바) 시정조치 : 행태적 조치(2년, '19.12.31.까지)

-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케이블방송(아날로그 및 디지털 모두) 요금 인상과 단체 가입 거부 및 단체 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 행위 금지
-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 채널 수를 축소하거나 홈페 이지에 판매 중인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금지
-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거나 그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및 상품 간 가입 전환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 전환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금지
-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에 대해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10. 머스크의 함부르크 슈드 주식취득 건('17.11.28.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머스크)는 2017년 3월 14일 함부르크 슈드아메리 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함부르크 슈드)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2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

- 머스크와 함부르크 슈드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며,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은 운항 일정, 선박 유형, 화물 종류 및 운임 결정 방식 등이 부정기선 운송업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 지리적시장 :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등 10개 항로”

- 머스크와 함부르크 슈드의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활동이 중첩되는 전세계 항로들 중 국내 항구를 포함하는 지역 범위인 극동아시아와의 연관성을 고려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지리적 시장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극동아시아-북유럽 항로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	극동아시아-인도 아대륙 항로
극동아시아-남미 동해안 항로	극동아시아-중동 항로
극동아시아-북미 항로	극동아시아-오세아니아 항로
극동아시아-지중해 항로	극동아시아-남아프리카 항로

(다) 시장집중도

- ▶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통상적인 개별 사업자 단위에 기반한 분석 이외에도,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도 함께 실시
- 컨소시엄은 특정 항로에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이 공동으로 기술적·운영적·상업적 합의를 통해 사업상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임

-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도 함께 고려한 이유 : ①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개별 사업자 지위보다는 컨소시엄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 ②본 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 뿐만 아니라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과도 연계가 됨으로써 시장지배력이 강화, ③컨소시엄의 선박 공유로 인한 협조 효과 가능성

-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본 건 기업결합으로 결합 당사회사는 개별 사업자 단위 1위 사업자(33.3%)가 되며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 54.1%를 보유하게 되어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

운송업체명	전체 구간		서행·북행 구간		동행·남행 구간	
	운송량	점유율	운송량	점유율	운송량	점유율
Maersk(마스크)	339,752	28.8%	82,424	46.0%	257,328	25.7%
HSDG(함부르크 슈드)	53,006	4.5%	6,528	3.6%	46,472	4.6%
결합 당사회사 합산	392,758	33.3%	88,952	49.6%	311,645	30.3%
CMA CGM/APL	110,277	9.3%	20,518	11.5%	89,759	9.0%
Hapag-Lloyd/UASC	78,178	6.6%	13,354	7.5%	64,824	6.5%
MSC	58,245	4.9%	8,892	5.0%	49,353	4.9%
결합 당사회사의 컨소시엄 단위 점유율	639,458	54.1%	131,716	73.6%	507,742	50.7%
결합 당사회사 제외 사업자 컨소시엄 점유율	540,682	45.9%	47,377	26.4%	493,305	49.3%
계	1,180,140	100.0%	179,093	100.0%	1,001,047	100.0%

-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 본 건 기업결합으로 결합 당사회사는 개별 사업자 단위 1위 사업자(37.6%)가 되며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 65.9%를 보유하게 되어 강력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

운송업체	전체 구간		서행·북행 구간		동행·남행 구간	
	운송량	점유율	운송량	점유율	운송량	점유율
Maersk(마스크)	413,795	22.8%	143,126	20.4%	270,669	24.3%
HSDG(함부르크 슈드)	267,630	14.8%	116,195	16.6%	151,435	13.6%
결합 당사회사 합산	681,425	37.6%	259,321	37.0%	422,104	37.9%
Hapag-Lloyd/UASC	205,508	11.3%	82,519	11.8%	122,989	11.0%
MSC	232,615	12.8%	113,581	16.2%	119,034	10.7%
CMA CGM/APL	77,056	4.2%	22,168	3.2%	54,888	4.9%
결합 당사회사의 컨소시엄 단위 점유율	1,196,604	65.9%	477,589	68.2%	719,015	64.5%
결합 당사회사 제외 사업자 컨소시엄 점유율	617,681	34.1%	222,854	31.8%	394,827	35.5%
계	1,814,285	100.0%	700,443	100.0%	1,113,842	100.0%

*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와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를 제외한 나머지 항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음

(라) 단독효과

-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 단독의 운임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짐
 - 함부르크 슈드가 속한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머스크 간 연계가 형성됨에 따라 머스크의 주요 4개 경쟁사업자들(HSDG, MSC, Hapag-Lloyd, CMA-CGM)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
 - 함부르크 슈드가 속한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다른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도 중복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결합 당사회사의 컨소시엄 이윤 극대화를 위한 활동에 동조할 유인이 높음

(마) 협조효과

- 결합 당사회사의 컨소시엄은 구성원 간 합의로 선복량 배분, 운항 일정 및 기항지 등을 결정하므로 협조가 매우 쉬운 구조이며, 컨소시엄이 구성원 간 정보교환의 통로가 되어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들까지 교환할 가능성이 높음

(바)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 (신규진입 가능성)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고 주요 사업자들 간 컨소시엄 구성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움
- (인접시장 경쟁압력) 부정기선 운송업은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과 운항일정 [정기/부정기], 선박 유형[컨테이너선/벌크선], 화물 종류[포장/산적] 및 운임 결정[공표/합의] 등에 차이가 있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움

(사) 시정조치 : 구조적 조치

- (함부르크 슈드)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토록 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은 계약 기간 연장을 금지함
- (머스크 및 함부르크 슈드) 컨소시엄 탈퇴일과 컨소시엄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함

11. 다우 및 듀폰의 합병 건('17.5.10.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다국적 화학회사인 더 다우 케미칼 컴퍼니(다우)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듀폰)는 2015년 12월 11일 신설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 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산 공중합체 시장”

*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용 재료의 접착력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됨

- 다우와 듀폰은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며, 산 공중합체는 다른 석유화학 제품들과 비교하여 볼 때 기능 및 용도가 구분되고 원재료, 생산방식 및 생산단계에도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 지리적시장 : “전세계 시장”

- 산 공중합체는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전세계적으로 운송이 가능하고, 국내 수요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과 관련한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

(다) 시장집중도

- 전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의 경우, 본 건 기업결합 후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7.7%이며 결합 당사회사는 1위 사업자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

*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 결합 후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고, 결합 당사회사가 1위 사업자이며, 결합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와 2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차이가 결합 당사회사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

<	>	(: , %)
사업자	매출액	시장점유율
듀폰	232	32.54
ExxonMobil	124	17.39
다우	109	15.29
INEOS	89	12.48
기타	159	22.30
시장규모	713	100.00

(라) 단독효과

- 전세계 산 공중합체 시장은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인해 소수 생산업체들의 과점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장이므로, 1위(듀폰) 및 3위(다우) 사업자가 결합하여 시장집중도가 높아질 경우 단독의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짐
- 결합 당사회사는 다양한 등급의 산 공중합체를 생산하는 반면, ExxonMobile은 다양한 등급의 산 공중합체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직접적 경쟁사업자인 다우와 듀폰 간 경쟁이 제거됨

(마) 협조효과

- 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상태에서 주요 경쟁사업자의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되며, 결합 당사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경쟁 사업자들은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음

(바) 시정조치: 구조적 조치

- 산 공중합체의 개발,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토록 함

12. 베링거 인겔하임의 사노피 영업양수 건('16.12.6.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베링거 인겔하임 인터내셔널은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16.6.26.) 이를 공정위에 신고('16.7.5.)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 동물의약품은 품목허가서에 기재된 사항 외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동물종, 적응증, 투여방식 등에 따라 별개의 상품시장을 획정함

□ 지리적 시장 : “국내 시장”

- 동물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품목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시장은 국내시장으로 획정함

(다) 시장집중도

-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5.9%이고,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됨

국내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점유율

(단위: 원, %)

사업자	2014년		2015년	
	매출액	시장점유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BI	27,846,784,343	77.86%	30,791,064,339	81.48%
Merck	2,927,177,392	8.18%	2,497,015,544	6.61%
Sanofi	1,588,257,487	4.44%	1,677,140,888	4.44%
Zoetis	1,357,609,664	3.80%	923,278,176	2.44%
기타	2,045,267,114	5.72%	1,899,752,053	5.03%
합계	35,765,096,000	100.00%	37,788,251,000	100.00%

-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66.9%이고,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됨

국내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단위: 원, %)

사업자	2014년		2015년	
	매출액	시장점유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BI	155,750,711	31.23	205,146,487	35.53
Sanofi	170,481,738	34.18	181,229,993	31.39
Zoetis	162,612,533	32.61	165,061,079	28.59
Vetoquinol	9,885,847	1.98	25,977,268	4.50
합계	498,730,829	100.00	577,414,827	100.00

(라) 단독효과

-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베링거 인겔하임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건 결합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경우 가격인상이 예상됨
 - 또한 베링거 인겔하임 제품의 가격추이를 검토한 결과 사노피 제품은 베링거 인겔하임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여 왔음
-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점유율 및 가격추이,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결합으로 인해 가격인상이 예상

(마) 협조효과

-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10% 미만이므로 경쟁사업자는 베링거 인겔하임의 가격을 추종할 가능성이 크고, 본 건 결합 후 주요 사업자의 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되므로 협조효과가 증대됨
 - 또한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제약사와 도매상과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행감시가 용이한 시장인 것으로 판단됨
-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점유율 및 제품가격이 고착화 되어 있는 시장에서 본 건 결합 후 10% 이상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게 되므로 협조효과가 증대됨

-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동물의약품 유통을 좌우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격책정 및 마케팅 방식 등이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바)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 (국제적 경쟁상황 및 신규진입 가능성) 동물의약품을 신규로 수입, 제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수입경쟁 또는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유사품 및 인접시장) 동물의약품은 품목허가 상에 기재된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유사품이 존재하지 않음
-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다가백신으로부터 경쟁압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하더라도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므로 인접시장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은 낮음
- (강력한 구매자) 동물의약품은 도매상, 동물병원 및 동물약국, 소비자, 시·군청에 대한 판매 등 판매경로가 다양하고 도매상 역시 구매비중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강력한 구매자는 존재하지 않음

(사) 시정조치: 구조적 조치와 시정조치를 병과

- (구조적 시정조치)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 및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된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함
- (행태적 시정조치) 해당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술 자료를 매각상대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동안 해당 제품의 완제품 및 원재료를 일정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함

13. SK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주식취득 및 씨제이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 건('16.7.18.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30%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을 15.11.2.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15.12.1.)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으로 구분), 방송광고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유선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
- (유료방송시장) 방송사업자가 가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다수의 채널을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아날로그 케이블TV,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를 구분 없이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아날로그 ·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 모두 다채널 유료방송플랫폼으로서 기능, 상품구성, 가격, 소비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소비행태 등을 고려할 때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
 - 공정위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간 기업결합 심결에서도 아날로그 · 디지털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를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방송채널의 전송권을 제공받는 시장으로서 수수료 지급방식 및 거래형태 등을 감안하여 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홈쇼핑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으로 구분 획정

- (방송광고시장) 지상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이 광고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시청자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시장으로서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이동통신 소매시장)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이동전화단말기 등을 통해 음성, 문자, 영상 등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 2G, 3G 4G(LTE) 등 여러 단계의 기술방식이 적용되는데 이는 이동통신 기술방식의 진화/발전 단계로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어 상호 대체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이동통신 소매시장으로 획정
 - 더불어 일반 이동통신서비스(MNO)와 알뜰폰서비스(MVNO)도 서비스의 동질성, 수요 및 공급대체성, 경쟁상황 등을 감안하여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이동통신 도매시장) 이동통신망사업자(MNO)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이동통신망을 도매로 제공해 주는 시장으로서 MNO의 자가공급분은 제외하고 MNO와 MVNO간 거래분만 포함
- (초고속인터넷시장) 전기통신사업자가 백본망 및 가입자망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빠른 속도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 기술방식 및 속도에 따라 DSL, CATV, BWLL, Ethernet-LAN, FTTH 등으로 분류되나, 각 방식 간 수요 및 공급대체성이 높아 상품시장을 별도로 구분 획정하지 않고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다만, 이동전화기를 통한 모바일인터넷과 와이브로 등과는 속도와 용량의 차이, 낮은 수요·공급대체성 등을 감안하여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유선전화시장) 전기통신사업자가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망이나 인터넷망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음성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
 - 유선전화는 PSTN 시내전화, PSTN 시외전화 및 인터넷전화로 구분되나, 각

통화서비스간 수요대체 및 공급대체성을 감안하여 PSTN 시내전화, PSTN 시외전화, 인터넷전화를 하나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지리적시장 : “유료방송시장은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별 지역시장으로, 나머지 상품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획정”
 - (유료방송시장) SO는 법적·제도적 규제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구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여, SO,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SO의 방송구역 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는 것이므로 각 지역시장으로 획정
 -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방송구역별로 상이하고, 요금수준 및 채널구성도 지역별 차이가 있는 점 등 실제 경쟁상황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 공정위는 유료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료방송시장을 지역시장으로 나누어 획정해 왔으며, 현재 경쟁상황도 심결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
 - (기타 상품시장) 기타 상품은 가격이나 상품구성 등이 전국적으로 유사하고 사업운영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전국시장으로 획정됨

(다) 기업결합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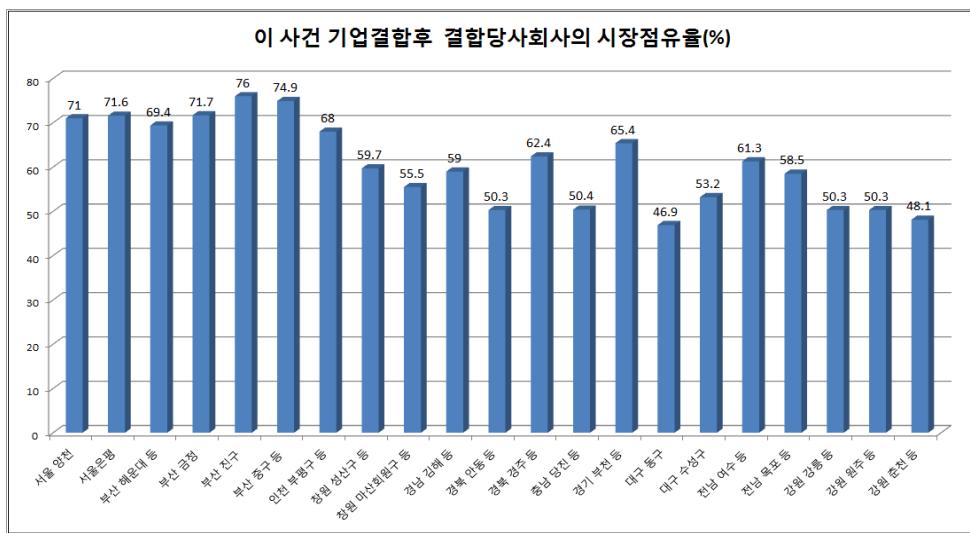
- 동 기업결합은 유료방송시장 이종 플랫폼(케이블TV-IPTV)사업자간 결합인 동시에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형 결합이 발생

관련시장	신고회사			상대회사 (C)헬로비전)	결합 유형
	SKT	SKB	SK텔링크		
23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시장	×	○	×	○	수평
방송광고시장	×	○	×	○	수평
방송채널전송권 거래시장	×	○	×	○	수평
이동통신 소매시장	○ (MNO)	×	○ (MVNO)	○ (MVNO)	수평
초고속인터넷시장	○	○	×	○	수평
유선전화시장	×	○	×	○	수평
국제전화시장	×	○	○	○	수평
이동통신 도매시장	MNO	×	MVNO	MVNO	수직

(라) 경쟁제한성 판단

(1)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 유료방송시장

- 동 건 기업결합은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결합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구역별 각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됨
 - * 경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군 지역 및 전북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순창, 임실 지역 등 2개 방송구역에서는 기업결합 후에도 2위 사업자가 되므로 경쟁제한가능성이 낮음
- (시장 집중 상황) 기업결합이후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46.9% ~ 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p에 이르는 등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



- 서울 양천구 등 16개 방송구역별 유료방송시장에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됨
 - * ① 결합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② 1위 사업자이고, ③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

- 결합당사회사는 CJ헬로비전이 기업결합 전에 1위인 17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와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6.7%p ~ 58.8%p로 더욱 확대되며, 4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됨
 - * 영남방송(경북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봉화, 문경, 청송, 영양지역), 충남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영서방송(강원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강원방송(강원 춘천, 인제, 홍천, 양구, 화천, 철원)
 - (단독의 요금인상 가능성) SO와 IPTV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서 기존 이종 플랫폼간의 경쟁구도의 변화 및 경쟁압력 약화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큼
 - CJ헬로비전은 IPTV사업자 중 가장 유력한 SK브로드밴드와 결합함으로써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됨
 - 결합당사회사 제출 설문조사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가장 많은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 IPTV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CJ헬로비전 케이블TV의 가장 가까운 대체제는 SK브로드밴드 IPTV라는 의미)
 - 실제로 CJ헬로비전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 오고 있음
 - (경제분석 결과)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한 경제분석으로서 UPP(Upward Pricing Pressure) 분석을 실시한 결과,
 -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변형된 식과 변수,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UPP 지수 (효율성 10% 가정)는 모두 양수의 값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함
- * UPP 값이 양수이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고, 그 값이 음수이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없음

(2)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 : 이동통신 소매시장

-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 강력한 경쟁압력

으로 작용하던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음

□ (시장 집중 상황) 결합당사회사의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7.7%(SK텔레콤 및 계열사 46.2%, CJ헬로비전 1.5%)로서 이 사건 기업결합은 이동통신소매시장에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됨

* ① 결합 후 당사회사를 포함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으로, ② 1위 사업자이고, ③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이므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

□ (경쟁제한 가능성)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유력한 경쟁자인 CJ헬로비전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

○ CJ헬로비전은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한 알뜰폰사업자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가격과 품질면에서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독행기업(maverick)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음

○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최초로 LTE서비스를 도입하고, 반값-무약정 LTE 유심 요금제, 국내 최저 LTE 요금제 등 혁신적 요금제 및 알뜰폰 최초 아이폰5 판매 등 알뜰폰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 2015년 9월 현재 알뜰폰사업자의 평균 LTE서비스 가입자 비중은 12.9%인데 반해, CJ헬로비전의 LTE 가입자 비중은 36% 수준 (2위 사업자 SK텔링크의 LTE 비중은 4%수준)

○ 이러한 상황에서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알뜰폰 도입으로 촉발된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 활성화 및 요금 인하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큼

□ (지배력 강화)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415만)를 기반으로 판촉 및 광고 강화 등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각종 불공정한 수단 등을 활용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음

(3) 수직결합의 경쟁제한성 : 이동통신 도매시장

- 이동통신 도매서비스 공급자인 SK텔레콤이 가장 유력한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경쟁 도매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이 있음
- (시장 집중 상황) 상부시장인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취득회사인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45.6%(KT 46.7%, LGU+ 7.7%)이고,
 - 하부시장이라 할 수 있는 알뜰폰시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텔링크가 1·2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28.45%임 (CJ헬로비전 14.24%, SK텔링크 14.21%)
- (판매선 봉쇄)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는 알뜰폰 가입자의 28.45%를 확보함에 따라 SK텔레콤의 경쟁사업자의 이동통신 도매서비스 판매선 봉쇄가 가능해짐
 - 특히, CJ헬로비전은 알뜰폰시장에서 우량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전체 이동통신 도매대가의 38.1%를 차지하여, 도매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SK텔링크 (17.2%)와 합해 이동통신 도매시장의 55.3%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음
 - 취득회사인 SK텔레콤은 알뜰폰과의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익저하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유인도 충분히 있음
 - 실제로 동 기업결합관련 계약이후 CJ헬로비전 알뜰폰가입자 중 KT망 가입자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SK망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4) 경쟁제한성 종합결론

- 동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당사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23개 각 지역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에서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케이블TV 플랫폼사업자(CJ헬로비전)와 케이블TV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IPTV 플랫폼사업자 중 유력한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결합할 경우, 동 지역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
- 이동통신시장에서 독행기업으로 가격·서비스경쟁을 선도하였던 알뜰폰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음
- 이동통신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U+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도 있음

(마) 시정조치

- (구조적 조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 이행 행위 금지명령

14.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의 노키아 코포레이션 주식취득 및 영업양수 건('15.8.24.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이하 “MS”)는 노키아 코포레이션(이하 “노키아”)의 노키아의 38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노키아 본사의 이동통신 기기 및 서비스 사업 관련 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해당 사건의 심의일 전인 2014. 8. 27.에 시정방안을 제출하면서 동의의결을 신청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모바일 단말기 시장”, “모바일 OS 및 소프트웨어 시장”, “모바일 특허기술 시장”
- 결합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내용 및 양수하는 사업부문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모바일 단말기 시장, 모바일 OS 및 소프트웨어 시장, 모바일 특허기술 시장으로 획정
- 지리적시장 : “세계시장”
- 상품의 특성, 구매자나 판매자의 분포 등에서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세계시장으로 획정
 - * 시장획정과 관련하여, 모바일 단말기 시장을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세분하여야 하는지, 지역시장을 국내시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동의의결은 신청인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에 따른 것으로 위법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으므로 시장을 명확하게 획정하지 아니함

(다) 경쟁제한 가능성

- (잠재적 봉쇄 효과) MS가 안드로이드 OS에서 채택한 특허기술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지위를 토대로 경쟁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한 특허료 인상 등을

통해 생산요소(OS) 공급을 잠재적으로 봉쇄할 우려가 존재

- (잠재적 협조 효과) 결합 후 양사가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등을 상호 조절함으로써 경쟁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존재

(라) 동의의결 신청 내용

□ 잠재적 봉쇄 효과와 관련한 자진시정방안

- (표준특허 관련) 표준특허를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고,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제조사가 생산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대하여 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명령 또는 수입 금지명령을 청구하지 않음
 - 표준특허를 라이선스하면서 실시권자(licensee)에게, 그 실시권자의 특허가 동일한 산업표준에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해당 실시권자의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신청인에게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 표준특허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i)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 (ii) 양수인이 이를 재양도할 경우 재양수인에게 위와 같은 원칙을 고수 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이상 표준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음
- (비표준특허 관련)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제조사에게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대한민국 내 제조,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한 비표준특허를 비독점적으로 계속하여 라이선스함
 - 본 건 라이선스를 (i) 본 건 기업결합일 이전의 신청인의 기준에 따른 실시료율, 또는 현재 신청인의 실시권자인 경우 해당 실시권자와의 현행 계약에서 정한 실시료율을 초과하지 않는 실시료율로, 또한 (ii) 비가격(non-pricing) 조건의 경우 본 건 기업결합일 이전 신청인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따른 일반적 조건, 또는 현재 신청인의 실시권자인 경우 해당 실시권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조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으로, 계속하여 제공

-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제조사와의 기존 교차 실시허락으로 인하여 비표준특허에 대한 실시권이 부분적으로 허여된 경우, (i) 신청인은 위와 같은 잔존 비표준특허에 대한 실시허락(“잔존 실시 허락”)을 해당 제조사에게 적절히 제공하고, (ii) 잔존 실시허락의 실시료율은 위 ② (i)에서 규정한 상한에 따르고 해당 제조사의 기존 교차 실시허락의 가치에 따라 적절하게 감액될 것이며, (iii) 잔존 실시허락의 비가격 조건의 경우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라이선스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건이 계속하여 제공
- 신청인은 비표준특허를 동의의결일 이후 5년 동안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 나아가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신청인은 양수인이 동의의결일 이전에 신청인에 의해 이루어진 라이선스 관련 약정을 준수하고 위 비표준특허의 재양수인에게도 동의의결일 이전에 신청인에 의해 이루어진 라이선스 관련 약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비표준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음
- 동의의결일 이후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제조사가 본 건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표준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명령 또는 수입금지명령을 청구

잠재적 협조 효과와 관련한 자진시정방안

- 신청인은 사업제휴계약을 수정하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하드웨어 관련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의 교환에 관한 조항 및 이행의무를 삭제
- 또한 신청인은 사업제휴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 국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조사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하드웨어 관련 경쟁상 민감한 영업정보를 교환하지 않음

(라) 동의의결의 적법성

- (소극적 요건) 동의의결 대상 행위는 ① 기업결합 제한규정의 위반 혐의와

관련된 행위로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 ② 그 범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 제71조(고발)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의의결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적극적 요건) 신청인의 시정방안은 수직결합으로 인한 잠재적 봉쇄효과 우려 및 잠재적 협조효과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신청인은 표준특허에 대하여는 FRAND 원칙에 따라 라이선스하고, 비표준특허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기준에 따른 실시료율이나 협행 계약에 따른 실시료율로 라이선스하며, 특허를 양도할 경우 양수인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바, 특허료의 인상으로 인한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자의 비용 증가 우려가 없음
- 또한 신청인이 표준특허의 경우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명령 또는 수입 금지명령을 청구하지 않고, 비표준특허의 경우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한다면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명령 또는 수입금지명령을 청구하지 않으므로 단말기의 판로 차단에 대한 우려도 없음

15.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아이엔씨(AMAT)와 도쿄 일렉트론 엘티디(TEL)간 합병 건 ('15.4.27. 심사보고서 송부)

(가) 기업결합내용

- AMAT과 TEL은 대등합병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2013. 9. 24.)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2013. 11. 15.)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14개 반도체 장비시장(세분화시 16개)”

- 증착(deposition)*, 식각(etch)**, 산화 · 확산(oxidation · diffusion)***, 세정(clean) 등 반도체 제조 공정별로 당사회사가 직접 경쟁하고 있는 장비 시장을 각각 별개로 획정하였음.

* 반도체 형성에 필요한 얇은 막을 기판이나 다른 막 위에 씌우거나 빈 공간을 메우는 공정

** 웨이퍼 위에 형성된 막질의 두께를 얇게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

*** 실리콘 산화막을 만들거나 웨이퍼에 주입된 불순물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공정

동 건 결합의 관련 상품시장 요약

구분	상품시장	개발/판매 여부
1	콘택트 배선용 차세대 금속(FFW 포함) 증착 장비	개발
2	텅스텐 콘택트 배선용 라이너/배리어 필름 증착 장비	개발 및 판매
3	구리 배선용 배리어 및 시드 필름 증착 장비	개발 및 판매
4	MRAM PVD 장비	개발
5	세미배치 ALD 장비	개발 및 판매
6	실리콘 산화물 캡 필 증착 장비	개발 및 판매
7	게이트스택 클러스터 장비	개발 및 판매
8	플라즈마 질화(산화 포함) 장비	개발 및 판매
9	VNAND 식각(계단, HMO, HAR) 장비	개발 및 판매
10	MRAM 식각 장비	개발
11	박막 실리콘 식각 장비	개발 및 판매
12	표면 식각 장비	개발 및 판매
13	범프 공정용 PVD 장비	개발 및 판매
14	범프 공정용 ECD 장비	개발 및 판매

□ 지리적 시장 : “세계 시장”

- 운송비 비중이 높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국가별 거래 조건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다) 경쟁제한성 판단

(1) 수평형 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

□ 시장집중도 : 결합 후 14개의 상품시장 중 10개는 독점으로, 1개는 복점으로, 3개는 경쟁업체의 수가 3개인 시장으로 변화되어, 고도로 집중화됨

□ 단독효과

- (가격 인상 가능성) 당사회사는 서로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또는 소수의 업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결합 후 장비 판매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수요업체들은 장비 구매를 위한 협상시 당사회사의 치열한 경쟁 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고, 그 결과 낮은 가격에 장비를 구매할 수 있음을
 - * 조달경매모형을 본 건에 적용하면, 특정 수요업체가 14개 관련 상품시장 중 4개 시장에서 최근 2년 간 결합 당사회사 간 경쟁을 통해 얻은 비용절감액은 최소 약 5.5억 달러(약 6.000억 원)로 추산됨
 - 반도체 장비가격이 반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2 ~ 60%로 추정되는 바, 장비 가격인상은 칩 가격을 인상시킬 우려 존재
-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인상 및 서비스 중단 가능성) 결합 후 당사회사를 대체 할 장비업체가 없는 상황을 이용, 업그레이드 비용을 인상하거나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중단할 능력 및 유인 증가
 - 반도체 장비는 상당히 고가에 해당하여 통상 1회 이상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수요업체의 부담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중복 장비 단종으로 인한 구매자 선택의 제한 및 부품 · 유지 · 보수 비용 증가)

당사회사가 동일 기능의 장비를 중복 생산 중인 경우, 그 중 하나를 단종시켜 수요업체의 선택을 제한할 가능성(기구매 수요업체의 부품 및 유지·보수 비용을 증가 우려)

□ 협조효과 : 각 반도체 장비업체는 수요업체와의 지속적 협상을 통해 장비의 사양 및 가격을 조정하므로, 협조효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반도체 장비업체 간 이직 및 상시적인 포럼 등의 인적 교류가 활발한 편이므로, 협조효과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 혼합형 결합의 경쟁제한 가능성

□ 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 : 결합 당사회사는 양 당사 중 일방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는 첨단 및 핵심 공정 분야에서 상호 간에 유일하거나 또는 가장 유력한 잠재적 경쟁사업자

○ 해당 분야는 기술력 및 제조경험, 상당한 규모의 R&D 투자 여력, 고객 신뢰 등의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바, 대체적 경쟁사업자가 부재

□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 결합 후 당사회사는 반도체 전체 공정(리소그래피 제외)에 걸친 장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므로, 결합판매, 장비 간 호환성 저해, 부품 봉쇄 등의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할 가능성

○ 다른 모든 경쟁사업자들은 결합회사와 달리 일부 분야에 국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결합회사를 견제하기 어려운 상황

□ 진입장벽의 증대 가능성 : 결합회사가 전 공정에 걸쳐 보유하게 될 특허 포트 폴리오는 강력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여 신규진입을 한층 어렵게 할 가능성

(3) (수평형 및 혼합형 결합의) 혁신 저해 가능성

□ 혁신 경쟁 감소로 인한 혁신 저해 가능성 : 본 건 결합은 혁신 역량이 독보적인 3사(결합 당사회사 및 Lam) 중 상위 1, 2위 업체 간 결합으로, 혁신에 투자할 유인을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큼

□ 병행적 기술개발 경쟁 소멸로 인한 혁신 저연 가능성 : 결합 후 당사회사의 병행

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중단되면, 장비 개발의 실패 확률 또는 열등한 기술만이 개발되는 위험이 증가하여 혁신이 지연될 우려

- 향후 혁신적 시장 형성을 늦출 가능성 : 결합 후 당사회사 간 경쟁 소멸은 웨이퍼 크기 확대(300mm → 450mm) 및 공정 통합 등으로 요약되는 미래의 시장의 도입 시기를 늦출 가능성

(라) 신규진입 가능성 및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여부

- 적시성, 개연성, 충분성의 측면에서, 신규진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됨
- 또한, 삼성전자, 인텔, TSMC 등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하기는 하나, 본 건 경쟁제한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해당 수요업체들의 당사회사 장비 구매 비중이 높고, 기술력 측면에서 당사회사를 대체할 경쟁 업체가 없거나 극히 소수에 불과)

(마) 효율성 증대효과 여부

- 피십인이 제시한 계량적 수치는 산정근거가 추상적이고, 해당 효과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거나 확실하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일부 인정 하더라도 그 전체를 기업결합 특유적이라고 볼 수 없음

(바) 시정조치

-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으며, 당사회사는 합병 계획을 자진하여 철회

16. 바이엘코리아의 한국엠에스디 영업양수 ('15.5.4.의결)

(가) 기업결합 내용

-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Bayer AG)의 국내 자회사인 바이엘코리아는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앤드컴퍼니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 엠에스디의 일반 의약품 관련 품목 허가권 · 관련 자산을 양수하고자 기업결합을 신고(2014. 10. 21.)

(나) 시장획정

□ 상품 시장 : 일반 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

- 이번 영업 양수를 통해 영향을 받는 상품 시장은 바이엘코리아와 한국 엠에스디가 공통적으로 판매하여 경쟁하고 있는 ‘일반 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

* 일반 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피임의 목적으로 먹는 의약품으로 대부분 수입품임

□ 지리적 시장 : 국내시장

-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수입 ·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로부터 의약품을 손쉽게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리적 시장을 ‘국내 시장’으로 획정

국내 일반 의약품 경구용 피임제 시장현황(2013년)

(단위: 백만 원, %)

회사명		제품명	매출액	시장 점유율
수입사	판매사			
한국 엠에스디	유한양행	머시론	9,141	43
		마이보라	5,435	25
		미니보라	1,146	5
		멜리안	1,547	7
		트리콜라	339	2

		소계	8,457	39	
	소계		17,598	82	
한국화이자제약	일동제약	미뉴렛	1,392	6	
		에이리스	1,628	8	
		소계	3,020	14	
광동제약		센스리비	580	3	
크라운제약(제조사)		쎄스콘	309	1	
합계			21,507	100	

(다) 시장집중도

- 경구용 피임제 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82%(매출액 기준)로 1위가 되고 2위 사업자(화이자)와의 차이가 68%p가 되는 등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의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
 - * 결합 이후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그 합계의 25% 이상임.(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 특히 한국 엠에스디의 머시론과 바이엘코리아의 마이보라는 국내에 유통되는 대표적인 경구용 피임제로 두 제품이 전체 시장 매출의 70%를 육박하고 있음

(라)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발생가능성 높음

- 이 사건 기업결합 이후 바이엘코리아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82%로 매우 높고 점유율 10% 이상인 경쟁 사업자가 3개 사에서 2개 사로 줄어들어 독과점이 심화됨
 -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1, 2위 사업자간 결합으로 실질적이고 유력한 경쟁사업자가 소멸하여 가격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미미, 충분한 제품 공급의 어려움 등으로 결합 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한 대응능력 취약
- 국내 경구용 피임제 시장의 1,2위 사업자 간 결합으로 결합 이후 바이엘코리아의 가격 인상 시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경쟁 사업자가 없음

(마) 협조효과: 발생가능성 높음

-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유력한 사업자간의 가격 경쟁이 제거되어 협조가 용이한 구조로 재편
 - 영업조직 및 유통경로 등이 상대적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경쟁업체간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

(바)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낮음

- 결합 당사회사가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쟁 사업자의 수입물량 증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 낮음
- 관련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신규진입 가능성 낮음
- 경구용 피임제 시장은 공급자보다 수요자가 월등히 많아 수요측면의 구매력이 분산되어 있어 강력한 구매자의 지위를 갖기 어려움

(사) 효율성 증대효과: 해당 없음

- 피심인은 본 건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입증하고 있지 못함

(아) 시정조치 내용

- 한국 엠에스디로부터 양수하는 일반 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 관련 권리 · 자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
 - 단, 현재 바이엘코리아의 경구용 피임제를 유통하고 있는 자 등에게 매각은 불가
- 기존 바이엘코리아의 일반 의약품 경구용 피임제를 한국 엠에스디로부터 양수하는 경구용 피임제(머시론) 영업 부문의 매수인 또는 머시론을 유통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 시정명령 이행 결과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

17. 현대제철 등의 동부특수강 주식취득 건('15.3.3.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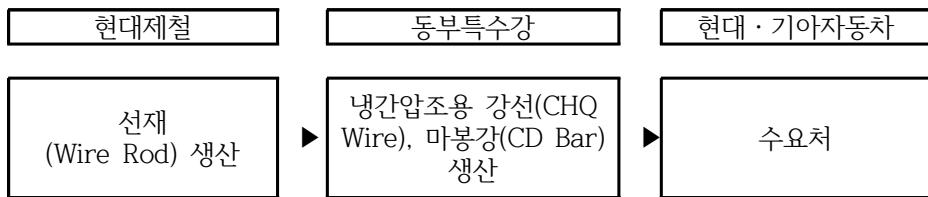
(가) 기업결합내용

- 현대제철은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14.11.28.)하고 같은 날 기업결합 신고함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Wire Rod 시장, CHQ Wire 시장, CD Bar 시장, 자동차용 파스너 시장, 자동차용 샤프트 시장 및 자동차 시장으로 획정”
- 이번 결합을 통해 현대제철, 현대·기아자동차는 원료(Wire Rod)에서 최종 수요(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 하는 점을 고려

수직 계열화 구조



□ 지리적 시장 : “국내 시장”

- 관련 상품들의 국내 판매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수입하는 경우 상품가격에서 관세나 운송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국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수입물량으로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다) 시장집중도 :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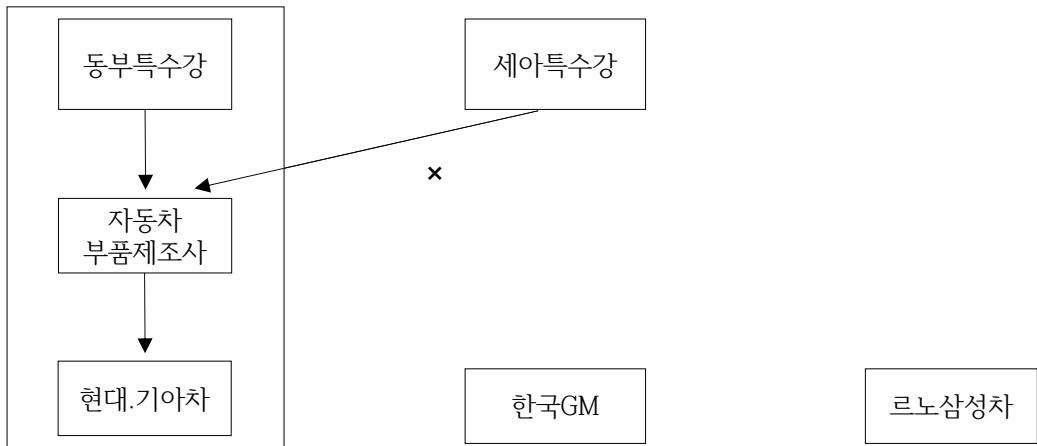
- (Wire Rod 시장) 현대제철이 Wire Rod 시장에 진출하여 40만 톤을 생산할 예정이므로 이를 가정하여 2013년 각 Wire Rod 업체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점유율 및 시장집중도를 추산해 보면 현대제철은 관련시장에서 2위 사업자가 되고, HHI 지수는 4,921임

- (CHQ Wire) '13년 매출액 기준으로 세아특수강이 51%, 피심인 동부특수강이 23%, 대호피엔씨가 2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95% 수준이고, HHI 지수는 3,576임
- (CD Bar) '13년 기준으로 세아특수강이 35%, 피심인 동부특수강이 3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 2사의 점유율은 70%에 달하며, HHI 지수는 2,609임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시장) 현대·기아차의 '13년 기준 시장점유율은 69.8%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부품(파스터 및 샤프트)시장에서 높은 구매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라) 봉쇄효과: 봉쇄능력 및 유인을 보유

- 이번 기업결합 후 현대제철, 현대·기아자동차는 원료(Wire Rod)에서 최종 수요(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하여 냉간압조용 강선(CHQ Wire) 및 마봉강(CD Bar)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음



- 현대·기아차는 파스너·샤프트 제조사의 강력한 구매력을 이용하여 계열사(동부특수강, 현대제철) 소재 구입을 강요할 수 있음

- 냉간압조용 강선(CHQ Wire) 및 마봉강(CD Bar) 시장 모두 초과 공급 상태에서 계열사를 통한 물량 처리 유인이 큰 상황임
- 부품 도면에 아예 계열사를 소재 메이커로 지정하거나, 신차 개발단계에 계열사만 참여시키는 방식 등 부당하게 비계열사를 차별하는 것이 가능
- 거래 상대방인 파스너·샤프트 업체의 경우에도 동부특수강과 현대·기아차 사이에 끼게 되어 소재 구매 결정권을 상실할 가능성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
 ⇒ 현대·기아차가 완성차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 자동차용 파스너 및 샤프트 시장, 냉간압조용 강선(CHQ Wire) 및 마봉강(CD Bar) 시장으로 바뀔 우려가 있음.

(마) 협조효과: 협조효과 증대

- 국내 CHQ Wire, CD Bar, 자동차 시장은 3~4개의 사업자가 80~9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시장으로써 협조행위가 용이한 구조임
 -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해 동부특수강은 하방시장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던 현대·기아차를 통해 파스너·샤프트 제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세아특수강과의 직접 경쟁을 회피할 수 있어, 사업자 간 경쟁압력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원재료 구매회사인 현대·기아차는 상방시장 참여자가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으나 현대·기아차가 상방시장 회사를 흡수하여 결합당사회사가 됨에 따라 상방시장 참여자 간의 협조행위를 막을 강력한 구매자가 사라지게 됨

(바) 시정조치 : 행태적 제한조치

- 파스너·샤프트 업체에 대한 동부특수강 냉간압조용 강선(CHQ Wire), 마봉강(CD Bar)구매 강제 금지

- 자동차 부품의 품질 향상 · 부품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를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 등 비계열회사 차별 금지
- 현대 · 기아차에 납품하는 파스너 · 샤프트에 계열회사 냉간압조용 강선(CHQ Wire), 마봉강(CD Bar)를 사용하도록 지정하거나 자동차 부품 사양을 계열회사 냉간압조용 강선(CHQ Wire),, 마봉강(CD Bar)제품에 적합한 형태로 변경하는 행위 금지
- 거래 과정이나 공동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을 금지
- 부품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와 독립적인 거래 감시인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 감시협의회를 설치하고 현대제철의 선재(Wire Rod) 생산 개시일로부터 3년간 이행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

18. 예실로 아메라의 대명광학 주식취득 건('14.5.27.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예실로 아메라 인베스트먼트 피티이 엘티디(이하 “예실로”)는 안경렌즈의 제조, 판매회사인 대명광학 주식회사(이하 “대명광학”)의 발행주식 50%를 취득하는 내용의 주식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 신고('13.3.8.)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단초점렌즈 시장” 및 “누진다초점렌즈 시장”
 -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는 기능 및 용도에 있어 다른 광학제품과 뚜렷한 차이가 있어 대체가능성이 낮음
 - 시력교정용 안경렌즈인 단초점렌즈와 누진다초점렌즈는 가격, 기능 및 용도에 있어 뚜렷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수요 대체가능성이 낮아 각각 별도의 상품 시장으로 획정
- 지리적시장 : “국내시장”
 - 단초점렌즈는 구매자의 인식, 사업자의 인식, 중국업체의 판매지역 전환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다른 나라로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낮음
 - 임계매출감소율분석, 총전환율 분석 등 계량적 분석 결과도 국내시장으로 획정
 - 누진다초점렌즈는 개별 고객의 수요에 맞춘 주문생산렌즈형태로 공급되고 적시 배송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내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

(다) 시장집중도

- (단초점렌즈 시장)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66.3%로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55.2%p로 범상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

결합 전후 국내 단초점렌즈시장 집중도 비교(2012년)

(단위 : 백만원, %)

순위	업체명	매출액	결합 전		결합 후	
			점유율	HHI	점유율	HHI
1	케미그拉斯 (데코비전)	31,142	39.3%	1,544	66.3%	4,396
	에실로코리아	8,061				
3	대명광학	27,000	27.0%	729		
4	한미스위스광학	11,100	11.1%	123	11.1%	123
5	호야	8,546	8.6%	74	8.6%	74
6	칼자이스	1,529	1.5%	2	1.5%	2
7	한독	1,400	1.4%	2	1.4%	2
8	기타 브랜드	3,039	3.0%	4	3.0%	4
9	기타 비브랜드	8,062	8.1%	11	8.1%	11
	합계	99,879	100.0%	2,490	100.0%	4,613

- (누진다초점렌즈 시장)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은 46.2%로 1위 사업자이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3.6%p로 법상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

결합 전후 국내 누진다초점렌즈시장 집중도 비교(2012년)

(단위 : 백만원, %)

순위	업체명	매출액	결합 전		결합 후	
			점유율	HHI	점유율	HHI
1	케미그拉斯+데코	4,004	33.4%	1,116	46.2%	2,134
	에실로코리아	14,352				
2	대명광학	7,014	12.8%	164		
3	호야	17,900	32.6%	1,063	32.6%	1,063
4	칼자이스	4,725	8.6%	74	8.6%	74
5	한미스위스	2,100	3.8%	14	3.8%	14
6	한독	171	0.3%	0.1	0.3%	0.1
7	기타 브랜드	3,580	6.5%	2	6.5%	2
8	기타 비브랜드	1,070	1.9%	0.6	1.9%	0.6
	합계	54,916	100.0	2,433	100.0	3,288

(라)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RF Power Transistor 시장)

- 단초점렌즈 시장 : 본 건 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고,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음
 - 본 건 결합으로 결합당사회사간의 치열한 경쟁관계가 소멸될 경우 가격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안경원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계량분석(전환율 분석 등) 결과도 두 회사 제품간 대체 관계가 높아 가격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 도출
 - 증가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대리점, 안경원에 대해 인센티브 축소 등 불리한 거래조건을 부과할 우려
- (누진다초점렌즈 시장) 경쟁압력 소멸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 높음
 - 중저가 제품군에서 지속적인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해 온 경쟁사업자인 대명광학을 제거함에 따라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음
 - 경쟁사업자는 유통망 확보의 한계, 상품조정을 통한 공급대체가 쉽지 않아 결합당사회사가 가격인상시에 대응능력이 약함

(마) 공동행위 가능성(RF Power Transistor 시장)

-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유력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이 제거되어 협조가 용이한 구조로 재편
 - 대리점 등 유통망을 매개로 관련시장내 정보공유 가능성이 크고, 묵시적 합의나 의식적 병행행위 가능성이 증대
 - 거래구조가 단순하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행감시 및 제재가 용이하여 협조상태에서의 이탈 가능성이 낮음

(바) 단초점렌즈,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의 혼합 결합

- 결합당사회사의 종합적 사업능력 향상으로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이 높음
 - 결합당사회사는 저가부터 고가까지 모든 상품군을 공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업체인 만큼 결합 후 끼워팔기 등 남용행위 가능성이 큼
 - 또한 국내 유통채널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기존 유통업체에 대해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쟁사업자 배제도 가능
- 결합당사회사의 제품포트폴리오가 강화되면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 됨

(사) 시정조치

- 이 사건 기업결합을 불허함

19. 롯데쇼핑의 CS유통 주식취득 건('12.1.18.의결)

(가) 기업결합내용

-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CS유통 주식회사 주식 99.4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2011.6.10.)
 - * CS유통 : SSM시장 7위(2.0%)로 직영점(굿모닝마트) 35개, 임의가맹점(하모니마트) 176개 등을 운영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마트 시장”
 - SSM은 유통업태의 스펙트럼 상 대형마트와 개인형 슈퍼마켓 사이에 위치해 있으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와 대체가능성이 더 크다고 인식
 - 개인형 슈퍼마켓은 소비자의 인식· 배송서비스· 온라인 슈퍼마켓 운영· PB상품 판매 등에서 SSM과 차이
 - 다만, 임의가맹점 하모니마트는 점주가 자본을 전액 투자하고 본사의 통제없이 판매가격 및 상품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SSM에서 제외
- 지리적시장 : “전국시장” 및 “지역시장”
 - (전국시장) 본사 중심으로 유통망 운영, 구매 및 매장 관리, 가격책정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감안
 - (지역시장) 대형할인마트는 반경 5km 주변으로 확정하고, SSM은 반경 1km 주변을 지역시장으로 확정하되,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을 적용하여 지역시장을 확대

(다) 시장집중도

- 전국시장 및 15개 지역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준 상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 3개 지역시장(서울 서초구·동작구, 의정부, 춘천)의 경우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도 않음
- 1개 지역시장(대전 유성구 송강동·관평동)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추정

<2010

.

(단위: 백만원, %)

구분	점포명	매출액	점유율(전)	점유율(후)
롯데쇼핑	롯데마트 대덕테크노밸리점	89,143	86.2	94.9
씨에스유통	굿모닝마트 송강점	9,024	8.7	
농협	하나로마트 북대전농협관평지점	5,278	5.1	5.1
합계		103,445	100.0	100.0

(라)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3개 지역(서울 서초구·동작구, 의정부, 춘천)은 근거리에 유력한 경쟁사업자 및 대형 개인슈퍼마켓이 존재하여 경쟁제한의 우려가 낮음
- 그러나 대전 유성구 송강동·관평동은 결합 후 피심인이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가격인상, 소비자 선택폭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영업면적이 약 100평에 불과하여 피심인(롯데마트 4900평, 굿모닝마트 300평)에게 실질적인 경쟁 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 또한, 현재 하모니마트가 SSM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결합 후 계약관계 변경으로 언제든지 피심인의 SSM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면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5개 지역 중 4개 지역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이 인정됨

- 1개 지역(시흥)은 완전 독점이며, 3개 지역(평택 팽성읍, 대전 유성구, 서산)은 2위와의 격차가 큰 1위 사업자로 신규 진입 가능성이 낮음

(마) 신규 진입 가능성

- SSM과 대형마트의 경우 점포개설을 위해 임지와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필요하나, 해당 지역의 경우 이미 인구 수 대비 SSM 등이 충분히 진입하여 향후 신규진입 가능성이 낮음

(바) 시정조치

- (구조적 조치)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지역시장의 SSM 점포(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굿모닝마트 송강점)에 대해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령
- (행태적 조치) 향후 5년간(~2016.12.31.) 하모니마트 점주의 의사에 반하여①하모니마트와의 거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②하모니마트 상호를 ‘롯데’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③향후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4개 지역시장 하모니마트(시흥의 시흥조남점, 평택 팽성읍의 팽성점, 대전 유성구 원내동의 대전원내점, 서산의 서산동문점)를 직영점으로 인수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조치

20. BHP 빌리턴과 리오틴토의 합작회사 설립 건('10.10.1.심사보고서 송부)

(가) 기업결합내용

- BHP빌리턴과 리오틴토는 호주 서부지역의 철광석을 생산하는 합작회사 (WAIO JV)를 50:50의 지분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2009.12.28)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해상운송 분광, 괴광, 펠릿”

- 철광석 광종을 기준으로 분광, 괴광, 펠릿으로 구분하여 획정하고, 운송수단을 기준으로 해상운송 시장으로 획정

* 각 광종은 기능 및 효용 상 차이가 존재할 뿐 아니라, 상품 가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요·공급대체 가능성도 낮은 측면이 존재

□ 지리적 시장 : “세계 시장”

- 동아시아와 서유럽 간 유사한 경쟁상황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시장으로 획정

◎ WAIO JV의 효과 : 양 사간 경쟁이 실질적으로 소멸하여 “완전한 결합”과 유사한 효과

(다) 시장집중도

- 괴광 시장 : 결합 후 점유율이 55%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커 경쟁제한성이 추정됨
- 분광 시장 : 결합 후 점유율이 38%로 경쟁제한성은 추정되지 않으나, 1위 사업자가 되어 구체적인 경쟁제한성 분석 실시

- 펠릿 시장 : 결합 후 HHI 지수 2,560의 고집중 시장이 되나, HHI 증가분이 82로 150미만이므로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되어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됨

<세계 해상운송 철광석 시장별 점유율 현황(2008년 기준)>

분광(Fine)			괴광(Lump)				펠릿(Pellet)						
공급업체		점유율	공급업체		점유율	공급업체		점유율					
BHPB Rio	BHPB/ Rio	15.82%	BHPB Rio	BHPB/ Rio	23.01%	BHPB Rio	BHPB/ Rio	6.37%	12.83%				
		38.09%			55.17%			6.46%					
Vale		30.19%	Vale		10.42%	Vale		46.90%					
FMG		2.51%	Kumba		9.42%	LKAB		9.86%					
Kumba		2.16%	Assmang		2.65%	CSN		4.45%					
기타		27.05%	기타		22.34%	기타		25.96%					

(라)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 생산 조인트벤처를 통해 공급을 감축할 경우 개별 업체의 입장에서는 감축하는 공급량은 절반이 되고, 가격인상 효과는 동일해지므로 생산량 감축의 유인이 증가

* 임계기울기* 분석결과 및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도 생산량 감축 및 가격인상의 효과를 나타냄

- 또한 향후 철광석의 수요가 유지 또는 확대되는 전망 하에서도 장기적으로 생산능력 확장계획을 자연 또는 철회함으로써 공급감축의 효과를 얻을 유인
- ① 이전가격 부풀리기, ② 제품 표준화로 인한 수요자 선택가능성 제한 등의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 가능

(마) 공동행위 가능성

- 기업결합 이후 ① 주요 공급자가 3에서 2로 줄어들어 공급자축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커지고, ② 분광부문에서 경쟁사업자인 Vale와 규모가 유사해지며, ③ 기존 BHPB와 Vale간의 조인트벤처(Samarco)를 고려할 때 3대 공급업체간 지분이 연계되는 효과가 있어 공동행위 발생 가능성성이 더욱 높아짐

(바) 신규진입 가능성 및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여부

- 철광석 광산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신규진입이 활발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쟁제한 우려가 완화되기 어려움
- 또한, 중국 등 육상운송 철광석은 수요자 입장에서 대체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어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움

(사) 효율성 증대효과 여부

- 피심인이 주장한 생산량 증대에 따른 효율성 등은 기업결합에 특유한 효율성으로 보기도 어렵고 수요자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없어 불인정

(아) 시정조치

-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으며, 당사회사는 합작 회사 설립계획을 자진하여 철회

21.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글로벌의 면세점 사업 인수(’09.5.12)

(가) 기업결합내용

-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주)호텔롯데는 (주)파라다이스글로벌의 면세점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 (09.5.12)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시내 및 출국장면세점”과 “인터넷면세점”

- “시내 및 출국장면세점(오프라인면세점)”은 내·외국인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고급 수입상품 및 토산품을 판매 및 내국세가 면제된 가격에 판매하는 면세점으로서 당사회사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
- 인터넷면세점은 이용환경·고객구성·상품구색 등의 차이와 낮은 수준의 매출 비중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면세점과 별개 시장으로 확정
 - * 백화점 등 일반 소매점은 고객 및 가격 측면에서 면세점과 명확히 구별되며, 기내면세점도 이용환경, 상품구색, 핵심고객 등이 현저히 달라 시내 및 출국장면세점과 구별

□ 지리적 시장

- “시내 및 출국장면세점”은 “부산·경남지역(부산 시내면세점, 김해공항 및 부산항만 출국장면세점)”으로 확정
 - * 인천공항면세점의 경우, (1) 부산지역 면세점 이용자중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비율이 25% 미만인 점, (2) 10~20% 정도의 가격차이, (3) 시내면세점과 공항면세점 간의 차별성(고객구성, 이용환경, 핵심품목 등의 차이), (4) 사업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여 관련 지역시장에서 제외
- 인터넷면세점은 “전국 시장”으로 확정

(다) 시장집중도

- 부산·경남지역 면세점시장에서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97.4%로서 완전 독점 상태를 초래

< (2008) >

사업자	롯데면세점 (부산점+김해공항)	파라다이스 면세점	관광공사 (부산항)	합계
결합 전	64.8%	32.6%		
결합 후		97.4	2.6%	100%

(라) 단독효과 : 가격인상(할인감소) 및 소비자 선택감소

- 현재 부산지역 면세점들은 타 지역(서울/제주)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할인율이나 판촉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8. 3월 인천공항의 주류 코너를 독점한 이후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감안할 때, 독점 후 가격인상 가능성성이 높음
- * 파라다이스면세점의 전품목 할인율은 롯데부산점보다 약 7%p 높고, 롯데부산점의 할인율은 롯데의 7개 매장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동일 품목 할인율의 경우에도 파라다이스면세점이 롯데부산점보다 4.8%p 높음
- * 롯데부산점의 판촉비(사은권, 할인쿠폰 등) 비율도 롯데의 7개 매장을 중 가장 높은 수준

(마) 신규진입 가능성 : 거의 불가능

-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신규진입이 곤란
 - * 2000년 이후 신규진입 사례가 없고, '07년 신세계백화점이 부산에서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특허를 받지 못하였음
 - * 신규특허 요건: ① 전년도의 전체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실적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 이상 ② 전년도 말 기준 외국인 입국자가 지역별로 30만명 이상 증가(보세판매장운영고시)

(바) 예외인정 가능성

- 효율성 증대효과 항변 : 인정곤란
 -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는 본건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일부 효율성을 인정하더라도 소비자 후생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음
- 희생불가회사 항변 : 해당 없음

(사) 시정조치내용 : 금지

- (주)호텔롯데가 (주)파라다이스글로벌의 면세점 사업부문을 인수하여 기업결합을 하게 되는 경우 부산·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호텔롯데가 (주)파라다이스글로벌의 면세점 사업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 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파라다이스면세점의 기업결합은 금지될 것임

22. 이베이 케이티에이(UK)의 (주)인터파크의 G마켓 주식취득('09.4.16)

(가) 기업결합 내용

- 이베이 인코퍼레이티드('이베이')는 (주)인터파크지마켓('G마켓')의 주요주주들과 주식취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08.4.25)한 후,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함(08.5.24)
 - * 위원회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하였고, 그 심의결과를 통지(08.9.30)한 후, 피심인이 정식신고(09.4.16)

(나) 시장 확정

- 국내 인터넷쇼핑시장과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서비스시장
 - 오픈마켓의 양면 플랫폼(2-sided platform) 비즈니스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 소비자 관계에서는 전체 인터넷쇼핑시장으로, 대 판매자 관계에서는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서비스 시장으로 확정
 - * 판매자들의 인식, 오픈마켓 운영자들의 인식, 판매자의 거래전환이 제한되는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오픈마켓을 일반인터넷쇼핑몰과 구별되는 별개 시장으로 확정
- * 다만, 인터넷쇼핑시장은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36.4%에 불과하고 소비자의 전환비용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다) 시장집중도

-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87.5%로 경쟁제한성 추정 대상에 해당

2008					
구 분	G마켓	옵션	인터파크	11번가	기타
결합전	51.5%	36.0%			
결합후		87.5%	8.2%	4.0%	0.3%

(라) 단독행위 가능성 : 단기적으로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없음

-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수료율 인상 가능성이 있음
 - 옥션과 G마켓은 시장 1·2위 사업자로서 현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개별 판매자의 매출에서 옥션과 G마켓을 통한 매출이 큰 비중(약90%)을 차지해 판매자에 대한 지배력이 존재
 - 옥션과 G마켓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가 강하고 방문빈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판매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2002년 3월 옥션이 독점적 시장지위를 갖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고 매출액을 확대한 사례가 있음
- 다만, 인터넷 베이스 산업의 특성상 향후 시장구조의 동태적 변화가능성이 커 중장기적으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제한됨
- 국내 G마켓 성공사례, 중국·미국 등에서 이베이의 시장지배력 급감 등 시장 경쟁구도가 급변한 사례가 다수
- IPTV, 모바일통신 등 관련 산업과의 결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새로운 경쟁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2년 옥션의 수수료 인상으로 판매자의 불만이 급증해 향후 2~3년간 G마켓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된 바 있어, 중장기적 시각에서 결합회사의 수수료 인상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됨

(마) 신규진입 가능성 : 단기적으로 없으나 중장기적으로 있음

- 최근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초기 진입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진입 후 유효한 시장경쟁 압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마케팅비용 투자가 필요
- 인터넷포털의 경우 현재는 인터넷쇼핑몰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 향후 중장기적으로 수익구조가 변화할 경우 이미 확보한 인터넷 트래픽을 바탕으로 오픈마켓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 있음

- 일반인터넷쇼핑몰도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판매자 네트워크를 이용해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음

(바) 공동행위 가능성

- 오픈마켓의 주요 가격경쟁수단인 쿠폰발행관련 정보의 공유가 제한되는 점, 사업자간 서비스의 차별성이 존재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행위 등 협조 효과의 발생가능성은 높지 않음

(사) 예외인정가능성

- 효율성 증대효과 항변 : 인정곤란
 -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과는 본건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업결합의 예외인정 사유로 볼 수 없음
- 회생불가회사 항변 : 해당 없음

(아) 시정조치내용 : 행태적 조치

- ① 피심인들은 이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자신이나 자신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의적 사전심사 신청일인 2008년 5월24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래수수료율을 인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자신이나 자신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들에 대하여 위 신청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고정가 방식(경매방식은 제외)의 등록수수료와 서비스 수수료 및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단가를 위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8년 5월의 소비자물가지수와 단가인상일 현재 가장 최근에 발표된 월간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한 인상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소비자물가지수는 통계청 발표, 총지수, 전도시 기준).
 - ⓓ 자신이나 자신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에 중소형판매사업자만의 리스팅을 위한 게이트웨이 확보 등 중소형판매사업자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자신이나 자신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들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수립된 방안은 판매자들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사항은 이 시정조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피심인들은 위 시정조치 이행에 대해서 매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피심인들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는 해당시장의 경쟁상황이 변경되었음을 소명하여 위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3. 삼성테스코의 이랜드리테일 주식취득('08.10.17.)

(가) 기업결합내용

- 삼성테스코(주)는 2008. 5. 14. (주)이랜드리테일 주식을 91.2% 취득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결합 신고('08. 5. 16.)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 : 대형마트를 다른 유통업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시장으로 확정

- 3,000m² 이상의 매장면적을 갖추고 식품·의류·생활용품 등 다양한 구색의 일상소비용품과 각종 문화·생활편의 서비스의 집합적 one-stop shopping이 가능한 유통업체인 「대형마트 시장」으로 확정하되, 동 유통업체의 점포인 경우는 3,000m² 미만인 경우도 포함

- 대형마트의 특성, 소비자 및 피심인의 인식, 국내외 심결사례, 법·제도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리적 시장 : 전국 또는 지역시장으로 확정

- 전국시장은 본사 중심으로 전국 유통망 운영, 구매 및 매장 관리, 전반적인 가격책정 및 판촉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감안

- 지역시장은 총 15개 지역으로 확정

*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방법을 통해 지역시장을 확정하되, 자연지형·도로여건 등 지리적 특성이나 고객분포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분리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지역시장을 합리적으로 조정

(다) 시장집중도, 구매전환율(Diversion Ratio) 등

- 단순 시장점유율 이외에 시장집중도, 구매전환율(Diversion Ratio)·점포입지에 따른 점포별 실제 대체가능성·인접시장의 존재 등 실질적인 경쟁상황을 토대로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 구매전환율(Diversion ratios) : 피취득회사인 홈에버 고객을 대상으로 취득

회사로의 구매 전환율을 측정함으로써 경쟁제한성 판단(예컨대, 흠플러스 비율이 높은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전국 대형마트 시장> : 경쟁제한성 없음

- 결합 후, 점포수 및 매출액 기준 2위와 4위인 사업자의 결합으로 2위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공고화되나,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공동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적어 경쟁제한 가능성성이 없음

<지역별 대형마트 시장> : 5개 지역의 경쟁제한성 인정

-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7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실질적인 경쟁제한 가능성이 인정됨
- 3개 지역(대구 칠곡, 서울 금천·광명, 청주)은 완전독점 또는 경쟁제한 가능성성이 높으며, 2개 지역(부산, 대전)은 국지적·제한적인 경쟁제한 가능성 존재

<14

>

지 역	시장점유율 기준		실질적 경쟁제한성 판단주 ³⁾
	법상 추정요건주 ¹⁾ 해당	HHI 기준상 일반심사주 ²⁾ 대상	
서울 강서·양천		○	×
서울 영등포·구로		○	×
서울 금천·광명	○		○
인천·부천		○	×
수원		○	△
부산	○		△
순천	○		×
안산	○		×
대전	○		△
청주	○		○
대구 내당		○	×
대구 칠곡	○		◎
포항		○	×
전주		○	×

* 주 1)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 해당

2) HHI가 1,200 이상~2,500 미만이고, HHI 증분이 250 이상, HHI가 2,500 이상이고, HHI증분이 150 이상

3) 구매전환율, 점포의 지리적 분포, 인접시장의 존재 등 고려(◎ : 아주 강함, ○ : 강함, △ : 제한적·국지적, × : 없음)

(라) 예외인정 가능성

- 효율성 증대효과 항변 : 인정 곤란
 - 피심인은 구체적인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액수 및 그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음
- 회생불가회사 항변 : 해당 없음
 - 피취득회사는 2007년중 당기순손실 약 1,900억원을 시현하고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았으며, 2008. 7. 1. 현재 국내 자산순위 30위 이랜드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고 볼 수 없음

(마) 시정조치내용 : 행태적 조치

- ①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4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피심인은 금천·광명 지역의 홈에버 시흥점, 부산지역의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대전지역의 홈에버 둔산점, 청주지역의 홈플러스 동청주점, 대구 칠곡지역의 홈플러스 칠곡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 점포별로 가격책정(Local Pricing)을 하는 상품의 가격을 피심인의 해당 품목 전국 평균가격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③ 피심인은 소비자가 위 조치대상 점포의 상품 가격이 아래의 비교대상 점포의 동일 상품 가격 또는 비교대상 가격보다 높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에게 그 차액의 2배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④ 홈에버 시흥점의 비교대상 점포는 홈플러스 금천점,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의 비교대상 점포는 홈에버 해운대점, 홈에버 둔산점의 비교대상 점포는 홈플러스 대전둔산점, 홈플러스 동청주점의 비교대상 점포는 홈에버 청주점으로 하고, 홈플러스 칠곡점의 비교대상 가격은 전국 평균가격 수준으로 한다. ⑤ 피심인은 동 보상제도를 도입한 사실을 조치대상 점포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피심인은 이 사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보상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및 소비자에 대한 고지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피심인은 위 조치대상 점포의 점포별 가격책정(Local Pricing)대상 품목의 가격 운영실적과 소비자에게 보상한 실적을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후 신규점포 개점 등 지역 시장 상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이의신청 : 일부 인용

- 시정조치내용 중 Local Pricing 품목에 대한 조치대상 점포의 비교대상 가격을 그 지역의 비교대상점포의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이의신청 주장과 차액 2배 보상제와 관련하여 홈플러스 칠곡점의 비교대상 가격을 인근 지역의 특정 점포의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이의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08. 10. 27.)

24.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 케미컬즈 주식취득('06.11.6)

(가) 기업결합 내용

- 피싱인 동양은 원 에퀴티 파트너스 투 케이맨(One Equity Partners II, L.P.(Cayman))과 66.75 : 33.25의 비율로 지주회사인 콜럼비안 케미컬즈 홀딩 엘엘씨(Columbian Chemicals Holding LLC)를 설립하고 그 완전 자회사로 피싱인 CCAL을 설립
 - 피싱인 CCAL은 2006. 3. 16. CCC의 주식 100%를 취득

(나) 시장획정

상품시장의 획정

- 본 건 기업결합에 있어 경쟁제한이 우려되는 “일정한 거래분야” 중 상품시장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간 상호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과 “특수용 카본블랙 시장”으로 나누어 획정

구 분		용 도	비중 ¹⁾	가격(톤당) ²⁾
고 무 용	타이어용	자동차, 항공기 등의 타이어 제조용	65.4% (59.9%)	719천원
	산업고무 용	자동차 부품, 호스 등 산업용 고무 제조용	26.7% (25.6%)	752천원
	특수용	페인트, 잉크, 플라스틱 착색용 및 건전지 전선 등의 전도성 소재	7.9% (14.5%)	1,441천원

1) 비중은 2005년 국내 카본블랙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 ()는 매출액 기준

2) 2005년 국내 매출액/국내 판매량으로 산정

지리적 시장

- 국내시장으로 획정

(다) 시장집중도(시장봉쇄효과)

- 본 건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되고 결합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판매량 기준 64.2%, 매출액 기준 63.0%로서 1위에

해당하고, 1위와 2위와의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이므로 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

구 분	결합 전(%)			결합 후(%)		
	판매량	매출액	생산능력	판매량	매출액	생산능력
1위	40.1 (동양)	39.8 (동양)	41.0 (동양)	64.2 (동양+CCK)	63.0 (동양+CCK)	65.6 (동양+CCK)
2위	35.0(KCB)	36.3(KCB)	33.8(KCB)	35.0(KCB)	36.3(KCB)	33.8(KCB)
1, 2위 격차 (1위 점유율 대비)	12.7%	8.8%	17.6%	45.5%	42.4%	48.5%

(라) 시장진입, 공동행위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정도 등

- 해외경쟁 도입가능성

-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수입점유율이 0.8%수준으로 미미하고 수입 제반비용, 주변국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을 억제할 정도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기는 곤란
 - 수입품의 경우 포장비용, 관세비용, 운송비 외에도 하역시설, 저장시설, 분진제거 시설 등 관련 시설비용이 추가로 소요
 - 카본블랙은 제품특성상 부피가 크고 물류애로가 많아 대량수입이 현실적으로 곤란
 - 타이어업체가 카본블랙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수입품의 경우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대처가 곤란
 - 제품의 특성상 수입은 주로 아시아지역에 국한되나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초과수요 상태로 대량수입이 곤란한 실정
 - 일본의 경우에도 '05.1월 카본블랙 업체간 기업결합을 인정하지 않음

- 신규진입 가능성

- 수급상황, 환경규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할 때 카본블랙 시장의 신규진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시

이를 완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결합 후 경쟁제한 가능성 및 대량구매사업자의 존재여부
 -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은 공동행위 발생가능성이 큰 시장특성을 보임
 - 카본블랙은 전세계적으로 제품이 동질적이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사업자간 판매조건도 매우 유사하여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의 가격에 더욱 민감
 - 실제로 2001. 1.부터 2005. 12.까지 사이에 피심인 동양과 KCB의 고무용 카본블랙의 국내 판매가격 추이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유사
 - 제품수요의 변동이 작고 피심인 동양, CCK, KCB 등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수년간 안정적인 패턴을 보임
 - 카본블랙은 타이어, 호스 등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필수 원료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음
 - 관련시장에서 신규진입 및 수입증대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향후 생산기술의 혁신이나 급격한 수요증대도 기대하기 어려워 공동행위가 한번 이루어 지면 참여회사로서는 이탈 유인이 적음
 - 본 건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사업자수가 3개→2개로 감소하여 사업자간 합의의 성립 및 이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기업결합 전에 비해 더욱 용이
 - 본 건 결합 후의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KCB의 공급능력이 제약(2005년도 가동률은 90%)되어 있어 공동행위를 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결합회사의 단독 가격인상 가능성에 존재
 - 결합회사와 결합 후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KCB와의 생산능력 격차가 커지고 KCB의 생산능력이 제약되어 있어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시 KCB가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큼
 - 인근 국가로부터의 해외경쟁도입 및 신규진입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KCB가 생산시설을 증설하는 것도 현재의 초과공급상황, 투자비용, 증설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가능성이 희박

- 미국 수평결합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이 35% 이상인 경우 가격인상에 의한 이윤 증대가 매출손실로 인한 이윤감소를 압도할 수 있어 가격인상 및 생산량 감축을 통해 이윤을 증대시킬 우려

- 대량구매사업자의 존재 여부

- 본 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합 후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KCB의 공급능력이 제약되어 있고, 해외경쟁도입 및 신규진입 가능성이 낮으므로 대량구매사업자라도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을 억제하기가 곤란
- 본 건의 경우 국내 타이어 시장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 3사의 과점 체제로서 이들은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바, 결합 후 고무용 카본블랙의 가격인상 시 타이어 업체가 이를 타이어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타이어가격을 인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
- 본 건의 경우 고무용 카본블랙 수요의 약 28.5%(2005년 기준)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인 소량 구매사업자(비타이어업체)는 결합회사의 가격인상에 대항 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으므로 결합회사가 대량 구매사업자인 타이어업체와 소량구매사업자인 비타이어업체간에 가격차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마) 예외인정 가능성[법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 동시행령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 효율성 증대효과 발생여부 해당여부[법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1호]
 - 본 건 결합 후 관련시장에서 공동행위로 10%만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도 이로 인한 경쟁제한적 폐해는 269억원에 달하는 바, 이는 본 건 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효율성 증대효과를 이 사건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사유로 받아들이기 곤란
-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해당여부[법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 제2호]
 - CCK는 2004년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를 실현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므로 회생불가회사로 볼 수 없음

(바) 시정조치내용

- 피심인들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피심인들의 계열회사인 콜럼비안 인터내셔널 케미컬즈 코퍼레이션(Columbian International Chemicals Corporation)으로 하여금 동사가 이 시정명령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콜럼비안 케미컬즈 코리아 주식회사의 지분 전량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매도
- 피심인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는 전항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항 공장 또는 광양 공장 중 한 곳의 카본블랙 설비 일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3자에게 매도하고, 동 설비를 매수한 제3자가 카본블랙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크레오소트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본블랙을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여야 함
- 위 1항 또는 2항 중 하나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시정명령의 효력은 소멸

25.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06.1.24)

(가) 기업결합 내용

- 하이트맥주(주)는 2005.8.4 (주)진로의 주식 52.1%를 취득함

(나) 시장획정

□ 상품시장의 획정

- 소주와 맥주는 상품특성, 소비패턴, 가격변경이 기업이윤에 미치는 범위등에 따른 계량분석, 국내외 심결사례등을 종합하여 서로 다른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
- 상품특성 측면에서 소주는 고도주인 반면, 맥주는 저도주로 원료, 맛, 도수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양 상품간에 연령, 성별, 계절별 소비양태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
- 계량적 시장획정 도구인 임계매출감소분석 결과에서도 소주와 맥주는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EU, 미국, 영국 등 외국 경쟁당국도 일반적으로 두수의 차이에 따라 개별 주류를 별개의 상품시장으로 획정

□ 지리적 시장

- 소주의 지리적 시장은 부산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시장

(다) 시장집중도(시장봉쇄효과)

- 부산 등 5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소주시자의 '04년 업체별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진로	두산	금복주	대선	무학	보해	선양	하이트 주조	한라산	충북 소주	합계
판매량	549,023	54,749	92	0	1,493	4,723	30,976	16,580	24	8,820	666,480
시장점유율	82.4	8.2	-	-	0.2	0.7	4.6	2.5	-	1.4	100.0

(라)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 등

○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주류도매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상 매출채권, 매출기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주류 유통망에 대항 영향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끼워팔기 등을 통한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될 우려가 존재

⇒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될 경우 가격과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증대

○ 진입장벽 증대 가능성

- 결합 당사회사의 주류도매상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강해져서 신규진입업체는 주류도매상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추가적인 장애요소를 극복해야 하므로 신규진입이 어려움

○ 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

- 하이트맥주(주)가 대규모회사이고, (주)진로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임
- 하이트맥주가 소주시장의 가격선도업체인 (주)진로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데 일정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점
- 하이트맥주(주)는 소주시장에서 (주)진로의 경쟁업체 등의 주류사업부문과 비교하여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월등히 큼

○ 가격인상 가능성

- 하이트맥주(주)와 (주)진로는 각각의 시장에 가격선도업체로 가격 결정시 상대방이 속한 시장의 가격인상을 등을 고려하나 당해 결합으로 상호간에 미치던 가격인상 억지력이 사라지게 되어 가격인상이 보다 용이해 질것으로 예상
- 하이트맥주(주)의 (주)진로 인수에 따른 재무상황 악화로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맥주와 소주의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큼

(마) 예외인정가능성[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외인정 요건
(법제7조1항 단서규정)]

○ 효율성 증대효과 발생여부

- 하이트맥주(주)가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중 인정가능한 금액은 연간 229.4 억원에 불과하여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크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예외인정사유로 보기 곤란

○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 여부

- (주)진로가 '04년 12월기준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재무구조가 호전되고 있으며, 하이트맥주(주)외에 (주)진로 인수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많아 회생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음

(바) 시정조치내용

○ 시정명령이후 5년간 하이트맥주(주)가 생산·판매하는 모든 맥주 상품과 (주)진로가 생산·판매하는 모든 소주 상품의 각각의 출고원가(제세 제외)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여서는 아니되며, 환율 또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이상으로 인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와 협의할 것

* 가격인상한도=2005년 6월의 출고원가×(가격인상 직전에 확인가능한 최근 월의 소비자물가지수÷2005년 6월의 소비자물가지수)

○ 하이트맥주(주)와 (주)진로는 향후 주류도매상과 거래함에 있어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강제하거나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승인을 받을 것

○ 하이트맥주(주)와 (주)진로는 생산·판매하는 맥주상품과 소주상품의 종합주류도매상에 대한 월별 주문대비 출고내역을 5년간 반기별로 보고 할 것

26. 삼익악기 등의 영창악기제조 주식취득('04.9.24)

(가) 기업결합 내용

- 삼익악기는 '04.3.12. 영창악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48.58%를 취득하고 04.3.26. 기업결합 신고

(나) 시장획정

- 피아노시장은 그랜드피아노, 업라이트피아노와 디지털피아노가 각각 그 기능 및 가격 등이 달라 수요대체성이 없으므로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

(다) 경쟁제한성 판단

-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은 그랜드피아노 64.6%, 업라이트피아노 92.0%, 디지털피아노 63.4%가 되어 기업결합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게 됨
- 동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은 사실상 독점화시켜 경쟁구조를 훼손
 - 단독적 가격설정을 통한 독과점이윤추구, 비용상승시 비용최소화 유인의 부재, 유통 및 판매에서의 해외경쟁사업자 배제 등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반경쟁적 행위의 가능성 상존
- 해외경쟁의 도입수준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절대판매수량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고 신규 유통망확보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의 명백한 해외경쟁도입여부는 불확실함
- 현재 양사와 같은 생산시설 가정시 약 500억원의 신규진입자금이 소요되며, 원자재조달의 어려움 등 신규진입가능성도 낮음

(라) 예외인정 여부

- 회생불가항변: 영창악기제조(주)의 재무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정리계획추진시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이 가능하며 본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음

- 효율성 증대효과: 피심인이 주장하는 효율성증대효과의 대부분은 전략적 제휴, 개별설비매각, 해외공장의 설립 등 결합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하며, 가까운 시일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성 폐해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

(마) 시정조치

- 피심인 (주)삼익악기는 영창악기제조(주)로부터 매입한 기계설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창악기제조(주)에 양도하여야 한다.
- 피심인 (주)삼익악기는 계열회사인 (주)프랫리드, PT SAMICK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동사가 영창악기제조(주)로부터 매입한 기계설비를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창악기제조(주)에 양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심인 (주)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주)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시정명령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영창악기제조(주)의 주식 전부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피심인 (주)삼익악기 및 삼송공업(주)는 위 1. 내지 3.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27. LG화학 등 및 호남석유화학의 현대석유화학 주식취득('03.9.4)

(가) 기업결합 내용

- (주)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03.1.30. 채권단(주채권은행: 우리은행)과 현대석유화학(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03.6.26. 현대석유화학(주)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한 후 기업결합 신고 ('03.7.11)

(나) 시장획정

- 피취득회사의 석유화학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SM」와 유도제품(2차 생산물)인 「LDPE」, 「LLDPE」, 「HDPE」, 「PP」, 「BR」, 「SBR」, 「NBR」, 「EG」 시장으로 획정

(다) 시장집중도

- 시장점유율 기준, 에틸렌 등 기초유분(원료)는 대부분 석유화학 유도제품(2차 생산물) 생산원료로 자가소비된 것으로서, 경쟁제한성 요건(1사 50% 이상 또는 3사 70%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 유도제품의 경우 대부분 시장집중도측면에서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 그러나, LDPE, HDPE, PP제품은 시장점유율이 경쟁제한성 요건(3사 70% 이상)에 해당

* HDPE : 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결합후 매출액 기준 1위 상위3사 79.4%, 판매량 기준 1위 상위 3사 80.5%, 1-2위간 격차 25/100이상)

* LDPE, PP : 심사기준상의 경쟁제한가능성 요건에 해당
(LDPE : 결합 후 매출액 기준 1위, 상위 3사 87.1%, 판매량 기준 2위, 상위 3사 91.5%, 1-2위간 격차 99/100)
(PP : 결합 후 1위, 상위 3사 70% 수준<매출액 69.9%, 판매량 69.7%>)

(라) 시장진입,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정도 등

- LDPE, HDPE, PP시장은 설비투자비용이 비교적 큰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신규 진입시 대규모자금이(효과적 설비규모: 30-40만톤, 최소 필요비용: 1,500-2,000억원) 소요되는 점,
- 생산설비는 국내 수요량에 비해 과잉설비상태[LDPE: 생산능력대비 과잉률 76% (511/901천톤), HDPE: 생산능력 대비 과잉률 88%(972/1,828천톤), PP: 생산능력 대비 과잉률 106%(1,222/2,515천톤)]이고 국내판매량의 65.2%'02년)를 수출하고 있는 등 잠재적 진입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
- 석유화학유도제품(2차생산물)인 LDPE제품은 기초원료로 생산된 에틸렌을 토대로 제조된 제품이므로 일괄생산체계와 전후방 사업간 결합도가 높은 콤비나트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단기간내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점등을 볼 때 신규진입이 어려움

* 미국 합병가이드라인 4.111의 진입저지가격제한이론(theory of limit pricing)에 의하면, 잉여시설은 기존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생산량을 확대하여 시장에서의 가격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신규진입시 매몰비용(sunk cost)의 발생 유발을 통한 진입저지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

- 본건 결합으로 공급업체의 경쟁사업자 감소(LDPE : 4사→3사, HDPE : 7사→6사, PP : 8사→7사)와 공급과잉하에서 수익성 제고가 필요한 시장상황을 감안시 공동행위 가능성의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LG화학 및 호남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을 공동인수하여 한 사업장에서 공동경영(생산·관리 등)한다는 점에서 공동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예외인정 가능성[법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 동시행령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 부실기업과의 기업결합 해당여부[법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
 - 현대석유화학(주)가 과다채무로 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를 받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재무상태를 보면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 보다 항상 초과상태로서 자본잠식상태가 아니며, '98년부터 경상이익이 적자상태를 보이다가 '02년부터는 이익 실현 중이고, 영업이익도 '01년까지는 지급이자가 많아 적자를 기록하다가 '02년부터는 이익실현 중으로 회생불가기업과의 기업결합으로 보기 곤란

< () 5 (, %)>

구 분	'98	'99	'00	'01	'02	'03.1/4
자산총액	43,987	40,716	33,539	31,395	30,313	31,051
부 채	32,205	29,842	26,458	24,260	21,998	22,264
납입자본금	5,314	5,314	5,314	2,166	2,166	2,166
자본총계	11,782	10,874	7,081	7,135	8,314	8,787
매 출 액	10,953	16,306	22,156	18,939	19,618	5,965
영업이익	1,288	2,330	1,083	91	2,032	990
지급이자	2,815	3,503	2,876	2,383	1,665	374
경상이익	△290	△348	△2,329	△2,774	954	381
순 이 익	△349	△483	△3,784	△2,112	1,010	473
부채비율	273.3	274.4	373.6	340.0	264.6	253.4

- 효율성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기업결합 여부[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1호]

- 본건 결합으로 규모의 경제실현 등으로 일부 제품의 경우 생산설비 라인의 전문화를 통한 생산비용과 물류비용 절감 등에서 일부 효율성 증대효과(계량화측면에서 양사가 주장하는 1,803억원중 560억원 정도만 인정 가능)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양사 및 현대석유화학의 총자산규모(8조원), 매출액(8조원) 및 기초소재산업으로서 관련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시 경쟁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결코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양사가 주장하는 효율성 증대효과중 상당부분이 당해 기업결합이 아닌 방법으로도 실현가능한 것으로 당해 기업결합특유의 효과(merger-specific efficiency)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바) 시정조치내용

- 피심인 (주)LG화학과 피심인 호남석유화학(주)는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현대석유화학(주)”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6개월내에 현대석유화학(주)의 LDPE, HDPE, PP부분에 관한 설비·영업·관리 등 관련사업 일체를 각각 분할하되, 현대석유화학(주) 대산공장의 제1라인(1공장) 관련 LDPE, HDPE, PP사업은 피심인 (주)LG화학이, 제2라인(2공장) 관련 LDPE, HDPE, PP사업은 피심인 호남석유화학(주)가 각각 인수·경영하거나, 또는

현대석유화학(주) 대산공장 제1라인(1공장) 관련 LDPE, HDPE, PP사업은 피심인 호남석유화학(주)가, 제2라인(2공장) 관련 LDPE, HDPE, PP사업은 피심인 (주)LG화학이 각각 인수·경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분의 영업에 관한 사항은 현대석유화학(주)의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실질적으로 분리·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피심인 (주)LG화학과 피심인 호남석유화학(주)는 위의 단서의 영업의 실질적 분리·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위의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시정조치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변화로 인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피심인 용산화학(주) 및 피심인 코리아피티지(주)(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은 MA(Maleic Anhydride)를 생산·판매·구매·사용함에 있어서 상호간에 배타적 거래를 하거나 쌍방 경쟁사업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거래물량을 배정하는 행위, 부당하게 거래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거래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심인들은 위의 시정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의 MA 생산·판매·구매·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내 MA 생산·판매자, 수요자, 독립적 거래감시인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하고 동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협의회의 구성 및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8.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03.1.28)

(가) 기업결합 내용

- (주)무학과 특수관계인 최재호는 '02.6.4~6.28일간 공개매수 및 실물매입을 통해 대선주조(주)의 주식 33.77%를 취득하고 기업결합을 신고("02.6.29)

(나) 시장획정

- 관련상품시장은 본건 결합으로 경쟁구조에 영향을 받는 희석식 소주시장으로 획정<중류식 소주(안동소주, 이강주, 문배주 등)는 제조방식, 가격, 소비자 인식차이 등을 감안 희석식소주와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곤란>
- 관련지리적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산 및 경남지역 등 2개의 독립된 지역시장으로 분리함이 타당
 - 관련시장을 전국시장으로 획정하여 본 결합전이 승인될 경우 부산 및 경남 지역은 시장집중도가 더욱 높아져 헌법재판소가 우려한 지역독점이 더욱더 고착화될 우려
 - 본건 결합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시장은 당사회사들이 실제공급하고 있는 지역 중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산 및 경남지역 시장임
 - 수요대체 측면에서 최종소비자가 소주가격이 인상된다고 해도 해당지역을 벗어나 구매하기는 어려움
 - 공급대체 측면에서 부산 및 경남지역의 점유율 추이 및 사실상의 진입장벽을 감안시 타지역의 경쟁업체가 진입하기는 용이하지 않음
 - Elzinga-Hogarty test에 의할 경우 부산 및 경남지역이 각각 독립된 지역시장으로 판단됨

* Elzinga-Hogarty test : LIFO(little in from outside : 역내생산/역내수요)와 LOFI(little out from inside : 역내수요/역내생산)라는 두가지 척도가 높은 비율을 나타낼 때 즉 역내소비의 대부분이 역내에서 생산되고 역내생산의 대부분이 역내에서 소비될 경우 당해역내를 관련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미국 판례에서 자주 활용

- * '90.4월 U.S v. Rocford Memorial Corporation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LIFO 0.81%, LOFI 0.87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 지역을 관련시장으로 획정

구 분	EH		비 고
	부산	경남	
LIFO (역내생산/ 역내수요)	0.84	0.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소주소비자의 84%가 각각 역내업체인 대선, 무학 소주를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 역외업체의 역내로의 소주유입은 부산, 경남지역 각각 16%에 불과
LOFI (역내수요/ 역내생산)	0.85	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경남지역 각각의 역내업체인 대선, 무학이 생산하는 소주의 85%와 91%가 역내소비자에 의해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 역내업체의 외부로의 소주유출은 부산, 경남지역 각각 15%, 9%에 불과

(다) 시장집중도<수평적 측면>

<부산 소주시장>

- 본건 결합으로 무학이 업계1위(91.5%)가 되고 상위3사 합계 99.9%이며 2위 와의 점유율 차이(84.3%p)도 상당하여 법 제7조제4항제1호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

	결합 전(%)	⇒	결합 후(%)
· 상위 1사 점유율	84.4(대선)		91.5(무학+대선)
· 상위 3사 점유율	98.7		99.9
· 무학/대선의 점유율	7.1/84.4		91.5

<경남 소주시장>

- 본건 결합으로 무학이 업계1위(97.2%)가 되고 상위3사 합계 99.9%이며 2위 와의 점유율 차이(94.5%p)도 상당하여 법 제7조제4항제1호의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

	결합 전(%)	⇒	결합 후(%)
· 상위 1사 점유율	84.3(무학)		97.2(무학+대선)
· 상위 3사 점유율	99.9		99.9(상위 2사)
· 무학/대선의 점유율	84.3/12.9		97.2

(라) 시장진입, 공동행위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정도 등

- '93.3월 희석식소주 제조면허가 개방되어 소주제조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으면 되므로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은 거의 없으나,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기존의 유통조직은 이미 대선 및 무학과 오랜 거래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 소주시장은 상표의 소비자 인지도 형성에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소비재시장으로서 신규진입시 경쟁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점등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존재
- 부산·경남지역에서 소주에 대한 수요변동이 크지 않고 2개의 경쟁업체가 수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해 왔고 상품의 생산·판매조건의 유사성 등을 감안시 공동행위 발생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본건 결합으로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대선 및 무학이 각각 가격인상 등을 하더라도 타 경쟁업체는 당장의 유통망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격인상 등 묵시적·동조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희석식 소주의 수입실적은 19백만원('01년)으로 미미하고, '98년 투자개방으로 외국업체가 국내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나 국내 소비자의 기호 등의 여건으로 투자가 곤란한 점으로 볼 때 해외경쟁도입가능성이 적음

(마) 예외인정 가능성[법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 동시행령 제12조의4(희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 부실기업과의 기업결합 해당여부[법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
 - 대선은 최근수년간 자본잠식상태이나, 동기간중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를 초과 ('00년은 비슷)하고 있으며, '01년에는 무려 859억원의 경상이익을 달성하였고, 영업이익규모는 '01년 동종업계 2위를 기록하고 매출액영업이익율도 최근3년간 연속1위를 기록하는 등 재무상황이 호전되고 있음

<

4

>

(단위 : 억원)

구 분	대 선			
	'98	'99	'00	'01
자본금	139	139	139	139
자본총계	△1,917	△917	△1,497	△636
영업이익	244	302	200	231
지급이자	94	155	203	87
경상이익	287	49	△139	859

* '01년 경상이익 : 채무면제이익 등 영업외수익이 급증한데 기인

- 대선은 부산지역 소주시장의 84.4%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화의절차를 진행중이며 영업이익의 지속적 흑자상황을 감안할 때 당해시장에서 퇴출할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무학은 본건 주식취득사유로 대기업 및 외국계기업에 의한 대선인수 방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당해기업결합보다 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기 곤란
- 효율성증대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큰 기업결합 여부[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1호]
- 대선주조의 부산공장을 별도 가동하여야 하므로 양공장을 전문화된 단일 생산체제로 통합할 수 없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 구입물량의 증가에 따른 협상력 증가로 원재료비가 감소하게 된다면 이는 소득재분배에 불과하고 효율성 증대효과로 보기 어려운 점, 기업결합당사회사의 소주수출이 미미하여 결합후 가까운 시일내에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점, 생산설비의 통합으로 인한 다양한 주류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비용의 최소화도 효율성 효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본건 기업결합의 예외인정사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됨

(바) 시정조치내용

- 피심인 (주)무학 및 최재호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 시정명령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대선주조주식회사 [이하 “대선주조(주)”라 한다]의 주식전부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피심인 (주)무학 및 최재호는 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15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행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IV. 기업결합 규제 관련 법령 등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기업결합 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전부개정]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p>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 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 따른 분할에 따른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p>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p>② 법 제9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p>
<p>제15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없는 경우: 기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해당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한 기간 동안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p>③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 	<p>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p> <p>2.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p> <p>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으로 한다.</p> <p>③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p>
<p>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p>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법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p>을 통하여 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p> <p>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p> <p>나. 해당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p> <p>④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의 경우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p>	<p>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p> <p>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로 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이나 그 밖의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이전되는 날로 한다.</p> <p>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p> <p>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감자(減資), 주식의 소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p> <p>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겸임의 경우: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p> <p>3.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p> <p>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의 경우: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지나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p> <p>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p>
--	--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이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와 같은 항에 따른 상대회사(이하 “상대회사”라 한다)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 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으로 한다.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 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로 한다.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는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 한다.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2.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 및 자산총액
②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피취득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1항제5호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사업 내용과 해당 기업결합의 내용
1.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당사회사가 자신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급 또는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4. 관련시장 현황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업결합 신고에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

<p>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p> <p>2. 소규모피취득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12. 28.></p> <p>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p> <p>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 또는 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p> <p>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p>	<p>요되는 기간(보완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p> <p>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 원을 말한다.</p> <p>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2.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활용해 왔을 것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의 신고에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①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제17조에 따</p>
--	--

<p>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p> <p>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p> <p>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p> <p>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p> <p>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p> <p>④ 제1항 및 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미리 해당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의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은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p>	<p>른 기업결합일로 한다.</p> <p>②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그 매매의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유상증자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3.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의 소각이나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일 이후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③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주식을 취득·소유하기로 계약·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된 날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합병 계약 또는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
--	---

<p>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하나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기업결합</p> <p>2.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p> <p>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 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⑨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그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p> <p>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를 기업결합신고 대리인으로 지정</p>	<p>3.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p> <p>④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 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p>
--	---

제21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p> <p>⑫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p>	
<p>제12조(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①</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변경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방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같은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2.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려고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p>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로 본다.</p> <p>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p>	

<p>류를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p>	
<p>제13조(탈법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행위의 중지 	<p>제2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표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p> <p>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처분인 경우: 주권교부일 2. 임원의 사임인 경우: 해당 사실의 등기일 3. 영업의 양도인 경우: 관련부동산 등

<p>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p> <p>3. 임원의 사임</p> <p>4. 영업의 양도</p> <p>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p> <p>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p> <p>7.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 제9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④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p>	<p>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이전 등록일</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매분기 또는 매 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부과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p> <p>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p> <p>1.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p>
---	--

	<p>확정하여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p> <p>2.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 통지를 한 날 부터 30일</p> <p>⑦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 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 을 징수할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이행강제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후 그 정한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 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 결합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제2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 하는 경우 해당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행강 제금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표 명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 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 지의 기간에 대해 부과한다.

<p>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p> <p>2. 제9조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p> <p>3. 제9조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 영업양수금액</p> <p>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정수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1. 주식처분인 경우: 주권교부일</p> <p>2. 임원의 사임인 경우: 해당 사실의 등기일</p> <p>3. 영업의 양도인 경우: 관련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이전등록일</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시정조치(매분기 또는 매 사업연도 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부과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p> <p>④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해당 불이행기간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p>
--	--

	<p>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 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2.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p>⑦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p> <p>제25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p>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p>제77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①</p> <p>법 제8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p>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회의의 결정으로 보고 또는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p>

	<p>이 부과·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③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④ 법 제8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경우 소회의의 제출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 제출 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p>
--	---

2. 기업결합 심사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5호, 2021. 12. 30., 일부개정]

I. 목 적

이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정 의

이 심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심사대상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을 말한다.
2. "일반심사대상기업결합"이라 함은 간이심사대상기업결합이외의기업결합을 말한다.
3. "취득회사등"이라 함은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각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동조 제3호에 규정된 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자기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대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게 하는 대규모회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법제9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설립에의 참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출자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 소유하거나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를 말한다.
5. "피취득회사"라 함은 주식취득소유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을 자기의 임원으로 선임한 회

사,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도회사를 말한다.

6.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기업결합" 또는 "경쟁제한적기업결합"이라 함은 당해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이나 혁신, 소비자선택가능성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기업결합을 말하고, "경쟁제한성" 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함은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함을 말한다.
7. "수평형기업결합"이라 함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말한다.
8. "수직형기업결합"이라 함은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라 한다)간의 결합을 말한다.
9. "혼합형기업결합"이라 함은 수평형 또는 수직형기업결합이외의기업결합을 말한다.
10.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공급된 상품의 총금액 중에서 당해 회사가 공급한 상품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신고 당시의 직전사업년도 1년간의 판매액(직전사업년도 종료직후로서 직전사업연도의 판매액을 알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전사업연도 1년간의 판매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 능력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또는 미만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11. "정보자산"이라 함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되어 통합적으로 관리, 분석,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을 말한다.

III. 간이심사대상기업결합

간이심사대상기업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업결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하여 적법한 신고서류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1. 기업결합당사회사(이 기준 II. 4. 및 II. 5.에 규정된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출자한 취득회사 모두가 당사회사이다. 이하 같다.)가 서로 영제14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동 조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에 한하며,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기업결합으로 이 기준 IV.에 규정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1) 영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자가 대규모 회사가 아닌 자와 혼합형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2)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 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 (3)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기업결합한 경우
 -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동법제4조의 업무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을 투자·운용하기 위해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5. 취득회사가 법제11조제9항에 따라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법제9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다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IV. 지배관계 형성여부 판단기준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당해 행위로 지배관계가 형성되나, 주식취득, 임원겸임 또는 회사신설의 경우에는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에 대해서 다음 1 내지 3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배관계 형성여부를 판단한다.

1.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이하 "주식소유"라 한다)의 경우

가.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취득회사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10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된다.

- (1)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분산도, 주주 상호간의 관계
- (2)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 (3)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관계
- (4)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관계, 자금관계, 제휴관계 등의 유무

나. 취득회사 등에 의해 단독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피취득회사의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자 또는 기존 주주)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 (2) 임원의 지명권 보유여부
- (3) 예산, 사업계획, 투자계획 및 기타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여부
- (4)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여부
-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여부

2. 임원의 겸임의 경우

- 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득회사등이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 (1) 취득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하 "겸임자"라 한다)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2)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 나. 이외에도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 가.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의 경우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나. 기업결합당사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지배관계 형성여부는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V.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

일정한 거래분야는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분야를 말하며,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1. 거래대상(상품시장)

-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거래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동 상품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말한다.
- 나.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2)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3)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4)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5) 통계법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7) 거래상대방

다. 결합당사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결합당사회사 중 한 쪽 이상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근접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이하, 혁신시장)를 별도로 확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확정할 수 있다.

2. 거래지역(지역시장)

- 가. 일정한 거래분야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당해 상품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한다.

나.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 (2)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 (3)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 (4) 시간적, 경제적, 법제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VI.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등과 피취득회사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기업결합, 혼합형기업결합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시장의 집중상황

가. 시장집중도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VI. 2. 내지 4. 및 VII.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1) 수평형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법제9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나)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미만인 경우

(다)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경우

(2) 수직형 또는 혼합형기업결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한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다.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

혁신시장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혁신시장에서는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 특허출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여 시장집중도를 산정할 수 있다.

2. 수평형기업결합

수평형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단독효과

(1) 기업결합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

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나)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 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다)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3) 위 판단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시장의 특성도 함께 감안하여야 한다. 예컨대, 차별적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결합 당사회사간 직접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 보다는 결합당사회사 제품 간 유사성, 구매전환 비율 등을 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나. 협조효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가격수량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사업자 간의 협조가 용이해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경쟁사업자간 협조의 용이성

(가)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시장내 상품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다) 가격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지 여부

- (라) 관련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마)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 (가) 공급자와 수요자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다)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 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당해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이러한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는 위 "가". 및 "나."의 기준을 준용한다.

라. 혁신저해 효과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결합당사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 (2) 과거 및 현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 (3) 기업결합이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한지 여부

- (4)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혁신역량의 격차
- (5) 결합당사회사 한 쪽이 혁신활동을 통하여 다른 쪽의 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인지 여부

3. 수직형기업결합

수직형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시장의 봉쇄효과

수직형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2)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등을 포함한다)의 시장점유율
- (3) 기업결합의 목적
- (4)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 (5)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 (6)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등 사업계획
- (7)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 (8) 당해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 (9) 수직형기업결합이 대기업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

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나. 협조효과

수직형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 (2) 결합당사회사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 (3)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4. 혼합형기업결합

혼합형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가. 잠재적 경쟁의 저해

혼합형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 (2) 당사회사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 (가)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나)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3)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4)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나. 경쟁사업자의 배제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

다. 진입장벽의 증대

당해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5. 정보자산을 수반하는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사항

기업결합후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유지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기업결합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요건을 고려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곤란한지 여부

나. 해당 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이 증가하는지 여부

다. 결합 이후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발

생활 것이 예상되는지 여부

- 라.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의 수집·관리·분석·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VII.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2)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3)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현황
(4)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5)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6)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 증감 추이
(7) 기타 각종 비관세장벽

-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2. 신규진입의 가능성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법적제도적인 진입장벽의 유무

(2)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3)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4) 입지조건

(5) 원재료조달조건

(6)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7) 제품차별화의 정도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2)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하거나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한다.

3.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4.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기업결합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VIII. 효율성 증대효과 및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1.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기준

- 가. 법제9조제2항제1호규정의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 (라)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마)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 (바)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 (2) 국민경제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마)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가)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 (나)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한다.

2. 회생이 불가한 회사의 판단기준

가. 법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의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상당기간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2)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4)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IX.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X. 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제2021-25호, 2021.12.30.>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3.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4호, 2021. 12. 30., 일부개정]

I. 목적

이 고시는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

1. 신고대상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
 - 가. 기업결합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 나. <삭제 '07.12.14>
 - 다.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기업 결합하는 경우
 - 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기업결합 유형별 신고서에「별표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다만, 간이신고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III.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나.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포함한다.
- 다.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 무발생기준일은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다.
- 라.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 무발생기준일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 마. 영제17조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에 의한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
- 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

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일한 경우 또는 동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소위 'PEF'를 말한다.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을 소재지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신고시 기존 투자 현황(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 업종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의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산은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미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그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에 임원겸임(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인 회사가 임원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법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의한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아.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주식소유"란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아닌자는 기업결합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신고 시에는 전체기업결합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1)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기업결합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 (2)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 자.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된 거래행위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개요에는 거래의 전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 신고

- 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3호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은 법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라. 상법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3. 회사의 합병신고

-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다만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존속 예정인 회사(흡수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결합 당사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나. 상법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위 가.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 가. 회사가 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4」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나. 법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

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법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 라. 법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양수회사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 바.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함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등 연속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신고 시에는 전체기업결합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

-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 비율을 불문하고 「별표5」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나. 회사설립 후의 주식소유비율이나 임월겸임내용이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에 의한 회사설립참여 신고내용과 동일하거나 동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대로 이루어진 경우(상대회사도 포함한다)에는 다시 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주식취득 또는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다.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와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간에 영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법제1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같다.
 - 라.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중 최다출자자(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다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을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위 라.에 따른다.
- 바. 영제18조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사설립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 회사이거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영제1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8항에서 "주식인수행위"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아. 최다출자자가 법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기업결합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IV. 기업결합당사자 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제18조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기업결합당사회사 각각기업결합일 전부터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 가. 법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또는 계약 특성상 대한민국에 대해 최종 매출이 이루어질 것임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에 포함된다.
 - 라.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그 상대회사 및 그 상대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 만을 합산한다.
2.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는 피취득회사의 자국 관련법상의 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법제9조제5항의 계열회사는 법제2조(정의)제11호 및 제12호, 영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 납입자본금, 자본총계는 당해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 당기순이익은 직전사업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V. 소규모피취득회사를기업결합하는 경우

1.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제1호에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 또는 출자하는 가치의 총액"(이하 "거래금액"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가. 법제9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2)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피취득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 (4) 인수하는 채무는 피취득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 중에서 취득회사가기업결합후 보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취득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제외한다.
 - 나. 법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1) 흡수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주식액면금액에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는 채무는 피합병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 (2) 신설합병의 경우 주식의 가액은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을, 인수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회사의 계약체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계를 말한다.
 - (3)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은 주식의 가액에 포함한다.
 - (4)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합병회사(신설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 다. 법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계약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라. 법제9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합작계약상 출자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법제11조제2항제2호 및 영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내활동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라 함은 게임·웹툰·웹소설·영화·드라마 등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월간 순이용자 혹은 순방문자가 100만명을 넘은 적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취득기업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VI. 기업결합의 임의적 사전심사요청

1. 법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에 의한기업결합의 사전심사요청은 본고시 III.(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의 관련기업결합유형의 신고서양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후 본 신고를 할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 당시 제출한 자료는 다시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가 종료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I.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및 변경신청

법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제11항 및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업 결합신고대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은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표7」의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받은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VIII. 대규모회사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예외

법 시행령제20조제2항제4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 가. 공개매수

나. 유증(遺贈)

다. 해당기업결합이 타 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사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담보물권의 실행

마.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IX.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1-24호, 2021.12.30.>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 즉시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한다.

「별표1」¹⁰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신고서						신고 유형 ⁽¹⁾	□ 일반신고 □ 간이신고	
(2) 신 고 인	회사명 (또는 성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재무상황 ⁽⁴⁾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국내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⁵⁾	()				
	주요사업							
상 대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재무상황 ⁽⁴⁾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⁵⁾	()			
				국내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⁵⁾	()			
		주요사업						
	소규모 피취득 회사 ⁽⁶⁾	거래금액 ⁽⁷⁾						
		국내활동수준 ⁽⁸⁾	<input type="checkbox"/>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 인력을 보유·활용해 왔고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계								
주식 취득 내용	주 주		주식 소유비율 (%)		총취득금액	취득일(계약일) ⁽¹¹⁾		
	신고인 관련	취득 전		취득 후				
		당해신고인						
		특수	계열회사 ⁽⁹⁾					
		관계인	회사 외의 자 ⁽¹⁰⁾					
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¹²⁾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 신고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 *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 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붙임 : 기업결합 신고 첨부서류 각 1부



-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 (2) 신고인 :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고인별로 별지에 기재. 신고인이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란만 명기
- (3) 사업자번호 :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 (4) 재무상황 : 영 제15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 (5)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신고인(또는 상대 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 신고인(또는 상대회사)과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 (6) 소규모피취득회사 : 상대회사가 신고대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7) 거래금액 :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에 기준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산하고, 피취득회사의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 중 취득회사가 소유·취득하는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채무인수액도 합산
- (8) 국내활동 수준 : 해당란에 표시
- (9) 계열회사 : 영 제4조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 (10) 회사외의 자 :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함
- (11) 취득일(계약일) : 영 제17조제1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기재.
- (12)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1. 일반신고의 경우

가. 신고회사의 주주현황(신고일 현재 기준)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
구 分	성명 또는 명칭		
신고인관련	동일인		
	특수	계열회사	
	관계인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100.00

주 1)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주 2)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나. 상대회사의 주주현황(신고일 현재 기준)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	
구 分	성명 또는 명칭		취득전	취득후
신고인관련	동일인			
	특수	계열회사		
	관계인	회사외의자		
		계		
상대회사관련	동일인			
	특수	계열회사		
	관계인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100.00	100.00

주 1)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주 2)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다.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 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되,
외국 소재 계열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 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
합계									

-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 주3)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 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 주4)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 주5)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라. 관련시장 현황(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별로 각각 작성하되 주요품목이 중복되는 경우
에는 중복 작성 불필요)

- (1) 주요품목의 수급 등 시장상황 :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첨부
- (2) 주요품목의 주요 특성, 기능 및 용도
- (3) 주요품목 관련 경쟁상황 : 회사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작성

마. 기업결합의 개요서(신고인의 의견 또는 입장을 기재할 것)

- (1) 기업결합의 내용 및 기업결합의 사유
- (2) 기업결합심사기준상 간이심사 대상 여부 및 그 사유
- (3) 기업결합에 따른 지배관계 형성 여부 및 그 사유
- (4)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확정 및 그 사유
- (5)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견해
- (6) 기업결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효과

바.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사. 임원겸임계획서 : 신고인 및 신고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취득 또는 소유 회사에 대하여
여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명, 신고인관련 계열회사에서의 직위, 주식
취득 또는 소유회사에서의 직위, 신고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 내용 등을 기재
아.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당사회사가 전자정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감사보고서 : 상장회사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외국회사는 외국법률에 의한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제출하여야 함)

자. (삭제)

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주식취득시 추가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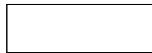
- (1) 당해 PEF가 이미 출자한 회사(피투자회사)의 영위 업종, 피투자회사에 대한 당해 PEF의 출자비율(주식소유비율 등) 및 지배관계 형성 여부(출자비율, 임원겸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설명)
- (2) 당해 PEF에 대한 사원(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사원의 영위 업종
- (3) 당해 PEF에 대한 사원들의 지배관계 및 무한책임사원의 계열회사 현황(영위 업종 기재 포함)

2. 간이신고의 경우

- 가. 주식취득 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 나. 별표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제출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회사명							
품목명 ⁽¹⁾			당 해 제 품 매출액 ⁽²⁾	(국내) (수출)	표준산업분류번호 (5단위기준)		
주요 경쟁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³⁾							
기업결합당시의 2년전 현황			기업결합당시의 직전년도 현황				
사업자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사업자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1) (2) (3) · (수입) 계			(1) (2) (3) · (수입) 계				
국내 및 해외 진입장벽 여부							
국내·외 진입장벽 ⁽⁴⁾	수입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여부 : ○ 지역제한 여부 : ○ 최근 5년간 진입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제한여부 : ○ 최근 5년간 수입비중 : ○ 실행관세율⁽⁵⁾ : (관세명 :) 						
관련자료·통계의 출처 ⁽⁶⁾							



- (1) 품목명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매출액기준(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 기준으로 함) 상위 3개품목별로 각각 작성하되, 3개품목에 대한 제조공정, 특성, 용도, 가격등 제품설명을 기재(다만,「기업결합 심사기준」Ⅱ. 9.의"혼합형 기업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상위 1개 품목만 작성하되, 그 밖의 생산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명과 전년도 매출액만 기재). 다만, 신고인과 상대회사가 동일한 품목(용역포함)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매출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포함
- (2) 당해제품 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국내 및 수출 구분없이 당해제품의 전체 매출액을 기재
- (3) 주요경쟁사업자 및 시장점유율 : 국내시장점유율이 5%이상인 사업자는 모두 기재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기타로 기재하되 업체수를 표시, 시장점유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다만 당해 상품의 지리적 시장이 국내보다 더 넓다고 본 경우에는 확장된 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text{시장점유율} = \frac{\text{당해회사의 당해상품의 국내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text{당해상품의 국내 총판매액(수입판매액 포함)}}$$

- (4) 국내.외 진입장벽 :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지역제한 등 진입장벽과 관련있는 관계법령 및 관계 규정, 최근 5년간 시장진입 사례가 있을 경우 생산규모와 소요비용.기간효과적인 생산규모와 소요비용.기간, 기타 시장진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 등을 기재
- (5) 실행관세율 : 짐정, 덤핑방지, 할당관세등 실제 적용되고 있는 관세율 및 관세명칭을 기재
- (6) 관련자료.통계의 출처 : 인용한 자료.서적명, 출판사 및 발표날자 등을 기재. 다만, 국내에 근거할 자료가 없는 경우 회사 내부조사 자료도 사용 가능
- (7) 기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작성
- (가) 신고회사의 자국 및 세계 시장 매출액, 점유율, 가격 및 생산능력
- (나) 신고회사그룹의 국제적 영업활동 내역
- (다) 기업결합 완료후 예상되는 소유 및 지배구조, 재무구조
- (라) 기업결합 주요단계에 대한 설명, 기업결합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내역
- (마) 관련시장에서의 원재료 의존관계등의 수직적 결합정도(당사자, 경쟁자)
- (바) 신고대리하는 경우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의 이름, 직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상기 양식에 의한 작성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적절히 수정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

「별표 2」[☞]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 참조

임원의 겸임 신고서				신고유형 ⁽¹⁾		<input type="checkbox"/> 일반신고 <input type="checkbox"/> 간이신고		
신고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소					상장일		
	사업자번호 ⁽²⁾					담당자 : 전화 : 팩스 :		
	재무상황 ⁽³⁾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 ⁽⁴⁾		()	
	주요사업							
	상대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소					상장일	
사업자번호 ⁽²⁾						담당자 : 전화 : 팩스 :		
재무현황 ⁽³⁾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국내매출액 (기업집단전체) ⁽⁴⁾		()	
주요사업								
임원겸임 내용		겸임자 성명	신고회사에서의 직위	상대회사에서의 직위	임원겸임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⁵⁾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신고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붙임 : 기업결합 신고 첨부서류 각 1부



-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 (2) 사업자번호 :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 (3) 재무상황 : 영 제15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 (4)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신고회사(또는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 신고회사(또는 상대회사)와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 (5)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1. 일반신고의 경우

가. 주주현황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별지에 기재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당해회사 관련	동일인 계열회사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 1)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주 2)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나. 임원현황 : 아래양식으로 회사별로 별지에 기재

임원성명	직위	임원겸임 당사회사와의 임원 또는 종업원겸임내용			임원겸임당사회사의 동일인과의 관계
		회사명	직위	겸임일	

다.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되, 외국 소재 계열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 자본금	자본 총계	자산 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 순이익	주요주주 (%)
합계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주6)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라. 관련시장 현황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마. 기업결합의 개요서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바.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1부

사.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임원겸임시 추가서류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2. 간이신고의 경우

가. 별표 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나.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1부

「별표3」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합병 신고서			신고유형 ⁽¹⁾			<input type="checkbox"/> 일반신고 <input type="checkbox"/> 간이신고		
甲 회사 (2) 합 병 당 사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 소			연락처	담당자 : 전화 : 팩스 :			
	사업자번호 ⁽³⁾ 재무상황 ⁽⁴⁾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주요사업							
乙 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재무상황 ⁽⁴⁾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주요사업							
소규모 피취득 회사 ⁽⁶⁾	거래금액 ⁽⁷⁾							
	국내활동수준 ⁽⁸⁾	<input type="checkbox"/>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 인력을 보유·활용해 왔고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합병후존 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 일자			
	주 소			연락처 (대리인)	전화 : 팩스 :			
	재무상황 ⁽⁴⁾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주요사업							
합병계약일			합병등기일			합병금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 ⁽⁹⁾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 신고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 *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붙임 : 기업결합 신고 첨부서류 각 1부



-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 (2) 합병당사회사 : 흡수합병의 경우 "甲"에 합병주도회사(존속회사 또는 존속예정인 회사), "乙"에 피합병회사를 기재하고, 신설합병의 경우 "갑", "을"에 합병회사명을 각각 기재. 다만, 신고회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회사별로 별지에 기재
- (3) 사업자번호 :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생년월 일을 기재
- (4) 재무상황 : 영 제15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 (5)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합병당사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 합병당사회사와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 (6) 소규모피취득회사 : 상대회사가 신고대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7) 거래금액 : 피합병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과 인수채무의 합계액.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 합산
- (8) 국내활동수준 : 해당란에 표시
- (9)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1. 일반신고의 경우

가. 주주현황 : 甲·乙회사 및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별로 아래 양식에 의하여 별지에 기재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당해회사 관련	동일인 계열회사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 1)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주 2)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나. 임원현황 : 아래 양식에 의하여 회사별로 별지에 기재

임원성명	직위	합병당사회사와의 임원 또는 종업원겸임내용			합병당사회사의 동일인과의 관계
		회사명	직위	겸임일	

다.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되, 외국 소재 계열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 자본금	자본 총계	자산 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 순이익	주요주주 (%)
합계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주6)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라. 관련시장 현황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마. 기업결합의 개요서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바. 합병계약서, 합병 후 존속회사(신설회사 포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합병당사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2. 간이신고의 경우

가. 별표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나. 합병계약서 및 합병 후 존속회사(신설회사 포함)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별표 4」[☞]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영업양수 신고서				신고유형 ⁽¹⁾		<input type="checkbox"/> 일반신고 <input type="checkbox"/> 간이신고		
양 수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사업자번호 ⁽²⁾							
재무상황 ⁽³⁾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국내매출액 ⁽⁴⁾ (기업집단전체)			()		
주요사업								
양 도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 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재무상황 ⁽³⁾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주요사업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소규모 파워드 회사 ⁽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매출액					
		국내활동수준 ⁽⁷⁾	<input type="checkbox"/>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 인력을 보유·활용해 왔고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영업양수내용	형태 ⁽⁸⁾	양 수 대 상	양 수 금 액	영업양수계약일	대금지급완료일			
	영업의 양수임차							
	영업용 고정 자산의 양수							
	경영의수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 ⁽⁹⁾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 신고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 *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붙임 : 기업결합 신고 첨부서류 각 1부

--

-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 (2) 사업자번호 :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 (3) 재무상황 : 영 제15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 (4)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양수회사의 국내매출액과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 (5) 소규모피취득회사 : 상대회사가 신고대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6) 거래금액 :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금액을 합산
- (7) 국내활동수준 : 해당란에 표시
- (8) 형태 : 해당되는 곳에 표시
- (9)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1. 일반신고의 경우

가. 주주현황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별지에 각각 작성

주 주		소유주식수	주식소유비율(%)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당해회사 관련	동일인 계열회사 회사외의자		
	계		
기 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 1)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주 2)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나.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되, 외국 소재 계열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 자본금	자본 총계	자산 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 순이익	주요주주 (%)
합계									

주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를 각각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주6)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다. 신고회사가 기업집단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 사업내역을 별지 작성

라. 관련시장 현황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마. 기업결합의 개요서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바. 영업양수 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영업양수 대금 지불증빙서 등) 1부

사. 신고회사와 상대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2. 간이신고의 경우

가. 별표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나.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영업양수 대금지불 증빙서 등) 1부

「별표5」[☞] 기자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신고유형 ⁽¹⁾	<input type="checkbox"/> 일반신고 <input type="checkbox"/> 간이신고	
(2) 신 고 인	회사명 (또는성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	상장일		
재무상황 ⁽⁴⁾ (단위: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전체)	()	매출액 (기업집단전체)	()			
			국내매출액 ⁽⁵⁾ (기업집단전체)	()			
주요사업							
상 대 회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소			상장일			
	사업자번호 ⁽³⁾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 전화 : 팩스 :			
	재무상황 ⁽⁴⁾ (단위 :백만원)	신고인 부문과 동일					
주요사업							
사 (6)	거래금액 ⁽⁸⁾						
	소규모 피취득 회사 ⁽⁷⁾	국내활동수준 ⁽⁹⁾	<input type="checkbox"/>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 인력을 보유·활용해 왔고 국내 연구시설, 연구인력 또는 국내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주 주	예정주식 소유비율 (%)	총 취득금액	회사설립 참여의결일	주식대금 납입기일	
		신고인 관련	당해 신고인 특수 관계인	계열회사 ⁽¹⁰⁾ 회사외의자 ⁽¹¹⁾			
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 ⁽¹²⁾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 * 신고관련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 *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0조(과태료)에 의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붙임 : 기업결합 신고 첨부서류 각 1부

--

- (1) 신고유형 : 해당란에 표시
- (2) 신고인 :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고인별로 별지에 기재. 신고인이 회사외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란만 명기
- (3) 사업자번호 :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 (4) 재무상황 : 영 제15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 (5) 국내매출액 :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의 국내매출액과 계열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 (6) 상대회사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각 회사(신고인 제외)들을 해당 항목별로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 (7) 소규모피취득회사 : 상대회사가 신고대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8) 거래금액 : 합작계약상의 출자금액을 기재
- (9) 국내활동수준 : 해당란에 표시
- (10) 계열회사 : 영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함
- (11) 회사 외의 자 :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함
- (12)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1. 일반신고의 경우

가.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현황

주 주		예정소유주식수	소유주식비율(%)
구분	성명또는명칭		
신고인 관련	당해신고인		
	특수 관계인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계			
기타	법인		
	개인		
	계		
합 계			

주 1)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법인, 개인 등이 다수인 경우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주 2)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나.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상기 양식), 기업집단 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 사업내역을 별지 작성

다.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아래양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되, 외국 소재 계열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회사명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 자본금	자본 총계	자산 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당기 순이익	주요주주 (%)
합계									

주1) 신고회사를 포함하여 기재

주2)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납입자본금등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4)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주5)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작성

주6)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라. 관련시장 현황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마. 기업결합의 개요서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바. 회사설립관련 입증자료(의사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사. 새로 설립된 또는 설립예정인 회사의 개요 : 회사명, 대표자, 주소, 재무현황(납입자본금, 자산총액, 자본총계), 영위할 업종 및 주력제품

아. 임원겸임계획서 : 신고인 및 신고인의 특수관계인이 신설회사에 대하여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원성명, 신고인관련 계열회사에서의 직위, 신설회사에서의 직위, 신고인과의 특수관계인 해당내용 등을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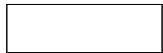
- 자. 신고회사와 상대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각 1부(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 차. 신설회사의 사업계획서 1부
- 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다른 회사설립 참여시 추가서류 : 앞의 주식취득의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참조

2. 간이신고의 경우

- 가. 별표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 나. 회사설립 관련 입증자료(의사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1부

「별표 6」 기재요령은 뒷면참조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간이신고사유 ⁽¹⁾								
기업결합사유 ⁽²⁾								
신고회사 주주현황 ⁽³⁾				상대회사 주주현황 ⁽³⁾				
주 주 명		주식소유비율(%)		주 주 명		주식소유비율(%)		
신 고 인 관 련	동 일 인			상 대 회 사 관 련	동 일 인			
	계열회사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회사외의 자			
기타		기타						
계열회사 현황 ⁽⁴⁾								
회사명	설립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 자본금	자본 총계	자산 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주요주주(%)	
신고회사 주요 품목 ⁽⁵⁾								
품 목		품 목		품 목				
품목명	매출액 ⁽⁶⁾	품목명	매출액	품목명		매출액		
상대회사 주요 품목								
품 목		품 목		품 목				
품목명	매출액	품목명	매출액	품목명		매출액		
관련자료나 통계의 출처 ⁽⁷⁾								
상대회사 임원 현황 ⁽⁸⁾								
임원성명	직위	임원 또는 종업원겸임내용						
		회사명	직위	겸임일				



- (1) 간이신고사유 : 본 고시 Ⅱ.(신고대상기업결합의 분류)를 참고하여 사유를 기재
- (2) 기업결합사유 : 필요 시 별지에 기재
- (3)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회사설립의 경우는 그 설립에 참여하는 다른회사를 의미).
이하 동일) 주주현황 :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기타가 다수인 경우에는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① 계열회사라 함은 영 제4조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 회사를 말함
 - ② 회사외의 자라 함은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함
 - ③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 (4) 계열회사 현황 :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각각 작성하되, 외국 소재 계열회사는
국내 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업종만 기재
- ① 신고회사를 포함하여 기재
 - ② 직전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 ③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 ④ 금융·보험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하고,
영업수익을 매출액으로 기재
 - ⑤ 국내매출품목 및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경우에만 기재
 - ⑥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 (5) 주요품목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기준(외국회사의 경우 국내 매출액기준으로 함)
상위 3개품목을 기준으로 작성. 다만, 상대회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용역
포함)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당해품목의 매출액이 작더라도 반드시 포함
- (6) 매출액 : 직전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필요한 경우 물량기준으로 작성가능)
- (7) 관련자료나 통계의 출처 : 인용한 자료·서적명, 출판사 및 발표날짜 등을 기재
- (8) 상대회사 임원 현황: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1/3 미만의 임원을 겸임하여 간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작성

「별표 7」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					
신고 대리인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주소			연락처	(전화) (팩스)
	재무상황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 출 액		
신고대리 대상회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	대표자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고대리인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4.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6호, 2021. 12. 30., 일부개정]

I. 목 적

이 고시는 법제9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기업결합에 대하여 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함에 있어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기업결합의 효율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시정조치 부과에 필요한 일반원칙, 부과기준, 조치유형 및 이행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의 정의

1. "결합당사회사"란 해당기업결합의 취득회사, 피취득회사, 취득·피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 포괄승계인 및 임직원 등을 모두 말한다.
2.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자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3. "구조적 조치"라 함은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식재산권 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4. "금지조치"란 해당기업결합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상황을기업결합전의 상태로 만드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5. "자산매각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6. "매각대상자산"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는 모든 유무형의 자산(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매각상대방"이란 자산매각조치를 통하여 결합당사회사로부터 매각대상자산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8. "지식재산권조치"란 결합당사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9.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권리로서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말한다.
10. "행태적 조치"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영업방식·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말한다.

III. 일반원칙

1.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의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빠른 시일 내에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시정조치는 해당기업결합이 야기하는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상황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로 부과되어야 한다.
3. 시정조치는 그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의 부과 및 집행에 있어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합당사회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소비자, 공급자,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IV. 시정조치 부과기준 및 유형

1. 고려사항

- 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며,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병과(竝科)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 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인한 시장의 왜곡 또는 비효

율성, 시정조치의 집행 및 감시비용, 기업결합의 효율성 감소 등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 비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2. 구조적 조치

가. 금지조치

기업결합전체를 금지하거나 또는 원상회복 시키지 않고는 해당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분리매각을 할 수 없거나 분리매각시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지조치를 부과한다.

나. 자산매각조치

기업결합의 전부를 금지하지 않고 결합당사회사의 특정자산만을 매각하더라도 경쟁제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한다.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각대상자산, 매각기한, 부대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 매각대상자산

-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관련시장에서 이용하여 기업결합이전 수준의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매각대상자산을 선정하여야 한다.
- (나) 매각대상자산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해당기업결합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서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① 매각의 대상이 되는 사업단위는 물리적 자산, 인력, 지식재산권 및 관련 상품의 효율적 생산과 판매를 위한 조직 등 현재의 사업 운영에 필요하거나 그 사업단위의 생존가능성 및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범위의 자산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과거에 하나의 사업단위로 운영된 적이 없는 자산들을 결합하여 이를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련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고 경쟁할 능력이 입증된 사업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의 매각은 그 자산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 상대방이 해당 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자산을 시장에서 즉시 확보할 수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다) 관련시장의 사업부문 매각만으로는 해당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없애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부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자산을 매각대상자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동일한 자산에서 관련시장의 제품 외에 다른 제품도 생산되고 해당 자산을 더 이상 분리하기 어려운지 여부

② 관련시장의 제품이 다른 제품과 함께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지 여부

③ 관련시장 제품의 경쟁에 있어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가 중요한지 여부

④ 해당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의 정도에 비해 지나친 조치인지 여부

(라) 매각대상자산은 물리적 자산 뿐만 아니라 유통망, 핵심근로자, 상품 거래계약, 원자재 공급계약, 경영인프라 및 무형자산 등 관련 상품의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자산을 최대한 포함하여야 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할 경우 매각대상에 포함되는 자산과 제외되는 자산을 가능한 한 상세히 열거하여야 한다.

(2) 매각상대방

(가) 매각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결합당사회사가 선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상대방 선임 시 그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나) 결합당사회사의 매각상대방 선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① 매각상대방이 관련 시장에서 결합 전 수준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능력 및 유인이 있는지 여부

- ② 매각상대방이 결합당사회사와 재정적 측면 또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해 관계가 없는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 ③ 매각상대방에 대한 자산매각이 새로운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지 여부

(3) 매각계약

-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결합당사회사로 하여금 매각계약의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매각계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 ①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매각대상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② 시정조치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③ 관련시장에서의 효과적 경쟁을 회복하려는 시정조치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附合)하는지 여부
- ④ 매각가격이 구매자의 효과적 경쟁을 위한 유인이나 능력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여부

(4) 자산매각조치의 이행

자산매각조치의 이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매각대상자산의 규모범위 및 복잡성, 경제 전반의 상황, 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결합당사회사의 신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 등 객관적으로 매각시한까지 매각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지 여부

- (나) 결합당사회사와 매각상대방간 구속적 인수의향서 체결 등 매각에 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절차가 끝날 것인지 여부
- (다)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매각에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매각시한까지 새로운 매각상대방에게 매각 할 수 없는지 여부
- (라) 매각시한 연장을 통하여 성공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5) 부대의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매각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매각대상자산의 생존가능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매각상대방이 매각대상자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결합당사회사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가)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매각대상자산을 분리하거나 독립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 (나) 해당 자산이 매각된 후에도 핵심 근로자들이 계속 해당 자산의 운영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협조의무
- (다) 매각완료 전에 자산매각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또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

다. 지식재산권조치

- (1)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우려가 주로 지식재산권의 집중 또는 중첩 등으로부터 생기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한다.
- (2) 지식재산권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 (가)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 (나) 결합당사회사의 사용권을 유보한 가운데 하나의 구매자에게만 배타적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 (다)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원하는 구매자 누구에게나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하는 방식

(라) 지식재산권을 공개하여 누구라도 대가없이 실시하도록 하는 방식

(3) 지식재산권조치를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가) 지식재산권의 실시기간이 실시의 상대방이 해당 기술 등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인지 여부

(나) 실시료나 양도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및 향후 불합리한 조건에 의해 취소될 수 없는지 여부

(다) 적정한 양수인이나 실시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산매각조치에 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행태적 조치

가.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조적 조치와 병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수 있다.

(1) 해당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치유하기에 적절한 구조적 조치가 없거나,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2) 구조적 조치를 이행할 경우 해당기업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 등 친경쟁적 효과의 상당부분이 없어지는 경우

나.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여 경쟁적 시장구조의 유지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조적 조치에 상당하는 조치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행태적 조치만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행태적 조치로써 효과적인 경쟁상황을 회복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2) 해당 행태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해당 행태적 조치가 가격·생산량·시장점유율 등 영업의 본질적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서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라. 행태적 조치의 주요한 유형은 별표와 같다.

V. 시정조치의 이행감독

1.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그 이행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합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합당사회사에 대해 자료열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VI.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VII.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제2021-26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5.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7호, 2021. 12. 30., 일부개정]

I.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용어정의

1. 이 고시에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인이 시정조치 일 당시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2. 이 고시에서 발행주식총수 및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III. 이행강제금부과 기준금액(법제16조제1항)

1. 주식취득, 합작회사 설립의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 (1)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2) 신규취득 주식이라 함은 기업결합신고일을 기준으로 본 최종 재무상태표 (이하 "최종 재무상태표"라 한다)의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주식을 말하며, 신규 취득주식의 장부가액은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취득주식수에 주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 (3)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은 최종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 (4) 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작계약상의 출자금액을 말하며, 이는 출자 주식수에 주당발행가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인수하는 채무

- (1) 피취득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부채총계에 발행주식총수중에서 시정조치일 당시 취득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2)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 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취득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2. 합병의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

- (1) 흡수합병의 경우는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주식액면금액에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2) 신설합병의 경우는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에 따라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을 말한다.
- (3)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은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나. 인수하는 채무

- (1) 흡수합병의 경우에 인수하는 채무는 피합병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계를 말한다.
- (2) 신설합병의 경우에 인수하는 채무는 소멸하는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3)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안 등에 명시되어 채권단이 면제하도록 하거나 구주 주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 등 합병회사(신설회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채는 인수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3. 영업양수의 경우(법 제16조제1항제3호)

"영업양수금액"이란 영업양수계약에서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인수하기로 한 부채총계를 말한다.

IV. 법위반 기간의 계산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기

1. 불이행기간의 산정기준

가. 영 제23조제1항의 경우

- (1) 영 제23조제1항에 의해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법위반 기간은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2) 시정조치가 여러 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세부조치 중 어느 하나가 위반된 경우에도 이를 법 위반기간으로 본다.

<예시>

- 시정조치가 주식매각과 영업양도의 2개의 세부조치로 이루어지고 주식매각은 1년, 영업양도는 2년의 이행기간을 정한 경우, 법위반기간은 각각 1년 또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고 각각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 시정조치가 주식매각과 영업양도의 2개의 세부조치로 이루어지고, 그 이행기간이 모두 동일하게 1년인 경우로서, 주식매각 불이행기간은 10일, 영업양도불이행기간은 20일인 경우 동건의 불이행기간은 20일로 함

나. 영 제23조제2항의 경우

- (1) 영 제23조제2항의 해당 불이행 기간이라 함은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기간(년, 분기, 반기, 월 등)으로서 불이행 기간 전체를 말한다.

<예시>

- 분기별 점유율 제한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점유율 제한 명령을 위반한 분기
- 연평균 가격을 일정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가격이 동 수준 이상으로 유지된 1년간 등

(2) 다만, 가격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의 불이행기간은 시정조치 불이행 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불이행 상태가 해소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시>

- 시정조치 : 3년간 시정조치일 기준으로 국내 판매가격 인상을 수출가격 인상을 이하로 유지
- 시정조치 위반 예 : 시정조치 이행기간중 특정시점에서 국내가격을 인상해 되, 국내가격 인상을 수출가격 인상을 초과한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 국내가격 인상을 수출가격 인상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법위반이 아닌 수준까지 국내 가격이 인하되는 시점 또는 수출가격이 인상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2. 이행강제금 부과시기(영 제23조)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하되, 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경우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한다.

(1) 영 제23조제3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이행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

(2) 시정조치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된 날을 포함)은 영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30일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

다. 이행강제금 부과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한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V.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및 부과금액 기준(영제23조)

1. 주식취득·영업양수·합병·합작회사 신설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행강제금 부과비율 >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율	산정방법(1일 기준)
· 1000억원이하	2/10,000	기업결합금액 × 2/10,000
·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2/15,000	20백만원 + 1000억원초과분 × 2/15,000
· 1조원초과	2/20,000	140백만원 + 1조원초과분 × 2/20,000

주기업결합금액이란법 제16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임원겸임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	단계별 부과금액(1일 기준)
· 1000억원이하	100만원
· 1,000억원초과 1조원이하	120만원
· 1조원초과	140만원

VI. 가중·감경(영 제23조제4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의해 계산된 이행강제금을 50/100범위 이내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예시> : 주식취득 등의 경우 가중·감경

(천만원)

기준금액	이행강제금	가중경감액	최종이행강제금
· 1000억원	2	1	1~3
· 1조원	14	7	7~21

<참고> : 임원겸임의 경우 가중·감경 예시(1일 기준)

(만원)

기준금액	이행강제금	가중·경감액	최종이행강제금
· 1000억원	100	50	50 ~ 150
· 1,000억원 초과 1조원이하	120	60	60 ~ 180
· 1조원 초과	140	70	70 ~ 200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받은 자가 이행기간 동안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

<예시>

- 점유율 제한을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한 경우로서 마케팅 축소 등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주식·부동산 등의 매각을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한 경우 매각대상물건 등에 관한 매각의 공고 또는 중개기관에 대한 의뢰 등 매각을 위한 기본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 가격 또는 시장점유율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에 있어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가격 또는 시장점유율 등이 시정조치 당시 보다 더 상승하는 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가.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시>

- 수차례에 걸쳐 합리적 조건으로 매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된 경우
- 매각을 위해 인수가능성이 있는 회사와의 협상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 주식매각명령을 내린 경우에 일부는 매각을 이행하였으나, 일부는 매각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나. 여러가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그중 일부만을 불이행한 경우

<예시> : 주식매각명령과 영업양도명령을 내렸으나, 주식매각명령만 이행한 경우

- 다. 다른 시정조치에 비해 중요성이 크지 않은 시정조치가 불이행된 경우
 - 라. 불이행 기간이 극히 짧은 경우
4.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시정조치를 받은 회사의 해산·청산·회사정리절차 개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 기준과 다른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VII. 이행강제금의 금액 기준

최종적으로 산출된 이행강제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이행강제금 금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이행 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다.

VIII.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제2021-2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6.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28호, 2021. 12. 30., 일부개정]

I. 목적

이 기준은 법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영제94조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용어의 정의

1. 기본금액

"기본금액"은 기업결합신고회사와 상대회사 각각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신고기한 도과기간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각각 일정한 범위의 금액을 기본금액에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임의적 조정금액"은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결과, 위반사업자의 재무상황, 신고 경험 유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에加重하거나 기준금액에서 감경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과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최종적으로 위반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말한다.

5. 신고의무 위반

"신고의무 위반"이란 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업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한 자가 같은 조 제6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를 말한다.

6. 사후신고

"사후신고"는 법제11조제6항 본문에 의하여 영제17조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신고를 말한다.

7. 사전신고

"사전신고"는 법제11조제6항 단서에 의하여 영제20조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기업결합신고를 말한다.

III. <삭 제>

IV.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금액

가.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구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400만원	48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480만원	600만원
	2조원 이상	800만원	1,000만원

비고: ① 상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총액 대신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

나.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구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1,500만원	2,0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000만원	2,400만원
	2조원 이상	3,000만원	3,600만원

다. 법제11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제11조제8항의 이행 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나.에서 정한 금액

라. 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업결합신고 시 계열회사 현황, 매출액·시장점유율 등 관련시장의 경쟁상황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한 기본금액은 7,000만원으로 한다.

2.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다음 가. 및 나.에 의한 금액을 더하여 산출한다. 다만, 1.다. 및 라.의 경우는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가.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금액

기업결합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매 1일마다 상기 1.가.나.에 따른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가산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

(1) 당해기업결합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최근 5개년 간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상법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일반원칙

임의적 조정금액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기준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중되는 임의적 조정금액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 (1) 공정거래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반한 경우 30% 이내
- (2)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당해 사업자의 지역 신고 이외의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20% 이내
- (3) 당해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 심사결과 위법한기업결합으로 결정된 경우 30% 이내
- (4) 기타 위 (1) 내지 (3)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 (1) 당해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II.2.에서 정한 간이신고대상이거나 「기업결합심사기준」 III.에서 정한 간이심사대상인기업결합인 경우 20% 이내
- (2)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법제11조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한기업

결합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 20% 이내

- (3) 신고회사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한 비율.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산총액(억원)	감경비율(%)
1,000 미만 ~ 600 이상	10
600 미만 ~ 200 이상	20
200 미만	30

- (4) 위반 사업자가 최근 5개년 간기업결합신고경험이 없는 경우 20% 이내. 다만 당해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최근 5개년 간기업결합신고 경험이 있는 경우 10% 이내

- (5) 동일한기업결합에 신고위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상호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이내

- (6) 기타 위 (1) 내지 (5)의 사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이내

4. 부과 과태료

부과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다만, 이렇게 결정된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금액의 50%까지 감액하여 부과과태료를 결정할 수 있다.

V.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21-28호, 2021.12.30.>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기 업 결 합 신 고 가 이 드 북



공정거래위원회